

【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

결 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세 입 세 출 결 산 】

일 반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 기 금 결 산 】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기 금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 예 비 비 지 출 승 인 의 건 】

일 반 회 계

2025.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결산 개요	1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1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5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5
나. 일반회계	7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7
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8
3. 기금결산	19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9
나. 고용보험기금	23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6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9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2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5
II. 결산 검토의견	38
1. 세입 결산	38
(1) 과태료(일반회계, 54-563)	38
<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 >	39
2. 세출 결산	34

가. 국제협력관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42
< 사전 준비 미흡과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 등으로 재정과 행정력을 소모시킨 ODA 사업 >	43
< 집행지침을 위반한 예산 집행의 문제 등 >	51
<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집행된 예산, 편성 예산 규모보다 초과된 집행, 공동개최자인 월드뱅크의 역할 문제 >	58
< 유사한 의제의 반복, 동일한 프로그램과 참석 범위의 문제 >	65
(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0-308)	67
< 부적정한 일반수용비 집행 >	68

나. 고용정책실

(1) 고용영향평가사업(일반회계, 1045-301)	74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청 과제 비율 제고 필요 >	76
(2)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80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83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88
<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의 지특회계 편성 부적정 >	89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 중 사업비 비중 제고 필요 >	96
(4) 고용보험기금 총괄	100
<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달성 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필요>	103

다. 통합고용정책국·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113
<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에 현금성 시상품 비용 포함 부적절 >	115
< 사실상 동일한 행사운영 용역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부적절 >	119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122
<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자 포함 부적절 >	123
(3)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051-304)	127
<K-Move스쿨 : 출연금 교부 후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129
(4)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133
< 미이행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등 >	134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일반회계, 1339-301)	14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적기 지급 노력 필요>	144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147
<적극적인 기금사업 발굴 노력 필요>	148
(7) 장애인고용관리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2-306)	151
< 근로지원인 양성 및 서비스 질 제고 노력 필요 >	152
(8) 장애인고용연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9-324)	159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	160

라.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63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164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수준의 목표 설정 필요 >	169
< 포상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173
(2)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일반회계, 1134-307)	177
<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178
<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 필요 >	182
< 운영주체의 폐쇄적이고 부실한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개선 필요 >	189

(3)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보험기금, 1151-352)	196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	197
(4)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보험기금, 1154-356)	204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불용액 과다 부적정 >	205

마. 노동정책실

(1)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일반회계, 1342-350)	209
< 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결과의 환류 방안 마련 필요 >	211
(2)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217
< 지자체 보조 사업의 집행부진 및 효과적인 집행방안 마련 필요 >	218
(3) 고용상 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223
< 차질없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25
< 현물성 지원 외 다양한 일터지원 방안 강구 필요 >	231
(4)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34
<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고려 필요 >	236
(5) 체불청산지원 용자(용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240
< 체불사업주 용자 활성화 필요 및 용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243
(6) 생활안정자금(용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246
< 대위변제 규모를 고려한 내실있는 용자 집행 필요 >	248
(7)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251
<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53

바. 산업안전보건본부

(1) 진폐근로자지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4)	256
< 연례적인 내역변경 해결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257
(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261

< 사업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설비 선정 필요 >	262
(3)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268
< 지역 균형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270
(4) 근로자건강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3)	278
<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물의 연말 집중 구매의 문제>	279
(5) 산재예방시설건립(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283
<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체험교육장 건축 필요 >	284

I. 결산 개요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의 5개 기금으로 구성됨.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고용보험기금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 촉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기금	채불임금 대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진흥	근로복지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수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 대비 총 4,480억 7,600만원(1.4%)이 증가한 31조 7,422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3,059억 3,700만원(4.3%)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액(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액 (B)	총수입 결산액(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344,649	342,259	212,561	△129,698	△132,088
기 금	30,091,696	30,951,947	31,529,721	577,774	1,438,025
합계(총수입)	30,436,345	31,294,206	31,742,282	448,076	1,305,937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6,780억 800만원 (1.9%)이 감소한 34조 5,468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873억 4,700만원(2.6%)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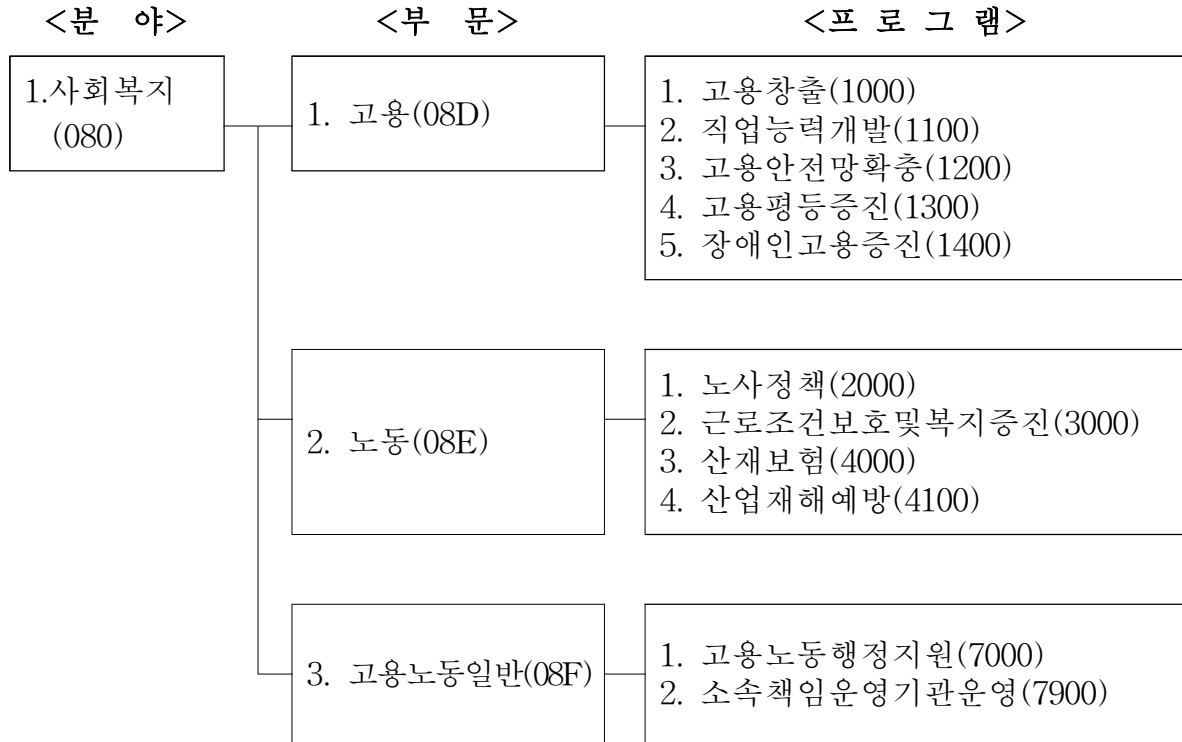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결산액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액(B)	결산액 (C)	예산액 대비 (C-B)	
예 산	5,787,760	5,815,148	5,712,100	△103,048	△75,660
기 금	27,871,753	29,409,720	28,834,760	△574,960	963,007
합계(총지출)	33,659,513	35,224,868	34,546,860	△678,008	887,347

고용노동부 예산은 사회복지(080)분야에 속한 고용(08D), 노동(08E), 고용노동일반(08F) 부문에 해당되며, 고용창출(1000)프로그램 등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1 분야, 3 부문, 11 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고용노동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4,000억원이 전출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213억,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백만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2,000억원, 예수이자 1,620억원을 상환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 수입 53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조 3,000억원을 예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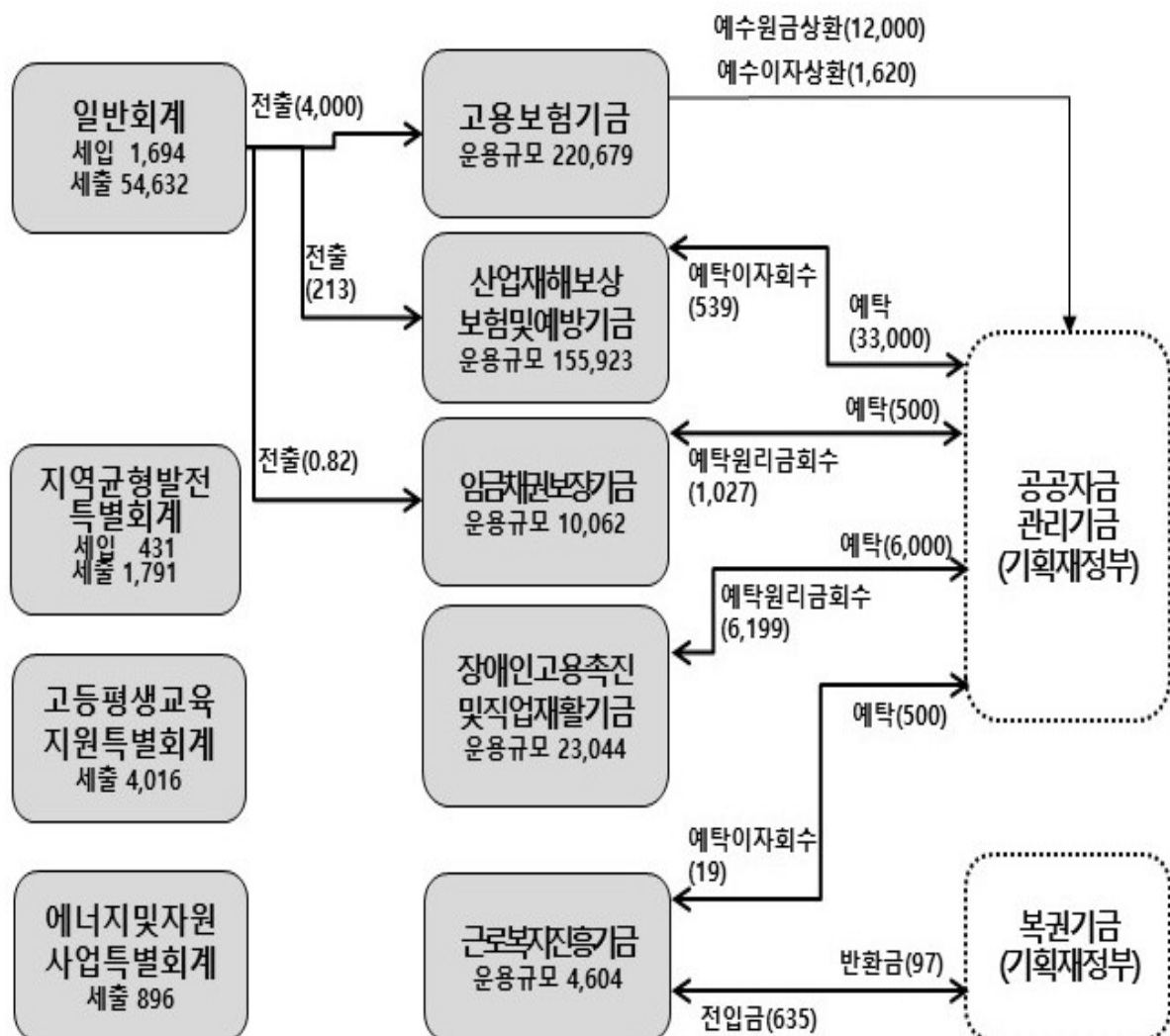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수입 27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수입 19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수입 1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35억원을 전입받았고, 집행잔액 등 97억원을 반환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 총괄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3,423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98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126억원임.

미수납액은 2,050억원, 불납결손액은 23억원이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0.6%로 전년 대비 16.3%p 하락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423	4,198	2,126	23	2,050	50.6
	(2,504)	(5,149)	(3,446)	(25)	(1,678)	(66.9)
일반회계	3,235	3,582	1,694	23	1,866	47.3
	(2,339)	(4,699)	(3,158)	(25)	(1,517)	(67.2)
특별회계	187	616	432	0	184	70.1
	(165)	(450)	(289)	(0)	(161)	(64.2)

주: 괄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

(2) 세출결산 총괄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조 2,365억원이고, 예비비 1,01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3,550억원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6조 1,3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원으로 전년보다 145억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2,189억원으로 전년보다 6,530억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62,365	171	1,014	63,550	61,335	26	2,189	96.5
	(69,942)	(26)	(0)	(69,968)	(61,078)	(171)	(8,719)	(87.3)
일반회계	55,520	171	1,014	56,705	54,632	26	2,047	96.3
	(62,394)	(26)	(0)	(62,420)	(53,587)	(171)	(8,662)	(85.8)
예특회계	896	0	0	896	896	0	0	100.0
	(891)	(0)	(0)	(891)	(891)	(0)	(0)	(100.0)
지특회계	1,839	0	0	1,839	1,791	0	47	97.4
	(3,002)	(0)	(0)	(3,002)	(2,985)	(0)	(17)	(99.4)
고특회계	4,111	0	0	4,111	4,016	0	94	97.7
	(3,654)	(0)	(0)	(3,654)	(3,615)	(0)	(39)	(98.9)

*괄 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계 기준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235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82억 2,100만원임. 이 중 47.3%인 1,693억 6,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2억 8,900만원, 미수납액은 1,865억 6,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23,517 (233,946)	358,221 (469,927)	169,369 (315,754)	2,289 (2,491)	186,564 (151,682)	47.3 (67.2)
○ 재산수입	1,866 (1,217)	5,313 (8,403)	4,548 (7,864)	1 (0)	765 (538)	85.6 (96.6)
- 관유물 대여료	0 (0)	2 (2)	0 (0)	0 (0)	2 (2)	0.0 (0.0)
- 기타재산이자수입	1,866 (1,217)	5,312 (8,401)	4,548 (7,864)	1 (0)	763 (537)	85.6 (93.6)
○ 경상이전수입	321,501 (232,580)	352,674 (461,490)	164,594 (307,857)	2,288 (2,491)	185,792 (151,142)	46.7 (66.7)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49,948 (44,666)	171,922 (133,814)	49,087 (51,008)	1,800 (1,929)	121,035 (80,877)	28.6 (38.1)
- 변상금및위약금	10 (10)	58 (128)	1 (71)	0 (0)	57 (57)	1.3 (55.6)
- 가산금	264 (264)	7,631 (7,184)	350 (241)	342 (311)	6,939 (6,632)	4.6 (3.4)
- 기타경상이전수입	271,279 (187,640)	173,062 (320,364)	115,157 (256,537)	146 (250)	57,759 (63,577)	66.5 (80.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50 (149)	234 (30)	227 (29)	0 (0)	7 (1)	97.1 (97.3)

주: 괄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3,582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7억 600만원(23.8%) 감소하였고, 2024회계연도 수납액은 1,69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3억 8,500만원(46.4%)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47.3%로 전년 대비 19.9%p 하락하였음.

미수납액 주요내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578억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721억원 등임.

[연도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0년	85,961	265,714	129,371	150.5	48.7	133,359
2021년	85,961	470,681	339,545	395.0	72.1	128,572
2022년	131,061	644,753	501,529	382.7	77.8	141,392
2023년	233,946	469,927	315,754	135.0	67.2	151,682
2024년	323,517	358,221	169,369	52.4	47.3	186,564

(2) 세출결산

(가) 총괄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6,874억원(11.0%) 감소한 5조 5,520억원이며, 예비비 1,01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6,705억원임.¹⁾

지출액은 5조 4,6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를 지출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에 35.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에 24.8%를 각각 집행함.

[2024회계연도 주요지출 내역]

주요 지출 항목	지출액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창출(24.8%)	1조 3,568억원
-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16.8%)	9,171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확충(35.1%)	1조 9,164억원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등 고용평등증진(1.5%)	833억원
- 상생협력 확산지원 등 노사정책(1.1%)	603억원
- ILO분담금 등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1.1%)	606억원
-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등 산업재해예방(0.04%)	23억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인건비 등 고용노동행정지원(11.3%)	6,178억원
- 고객상담센터운영 등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0.5%)	273억원
- 고용보험기금 전출 등 회계기금간거래(7.7%)	4,214억원

1)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원으로 전년대비 145억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2,047억원으로 전년대비 6,615억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합 계	55,520	171	1,014	±54	±151	56,705	54,632	26	2,047	96.3
	(62,394)	(26)	(0)	(0)	(±122)	(62,420)	(53,587)	(171)	(8,662)	(85.8)
고용창출	15,316	93	0	△51	±54	15,358	13,568	25	1,765	88.3
	(19,520)	(1)	(0)	(0)	(±47)	(19,521)	(16,567)	(93)	(2,860)	(84.9)
직업능력 개발	9,324	64	0	0	0	9,388	9,171	0	217	97.7
	(8,421)	(2)	(0)	(0)	(0)	(8,423)	(7,826)	(64)	(533)	(92.9)
고용안전 망확충	18,162	0	1,014	0	±41	19,176	19,164	0	13	99.9
	(23,426)	(2)	(0)	(0)	(0)	(23,427)	(18,250)	(0)	(5,177)	(77.9)
고용평등 증진	835	0	0	0	0	835	833	0	2	99.8
	(403)	(0)	(0)	(0)	(0)	(403)	(402)	(0)	(2)	(99.8)
노사정책	608	1	0	0	±1	609	603	0	6	99.0
	(531)	(0)	(0)	(0)	(±4)	(531)	(493)	(1)	(37)	(92.8)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623	1	0	0	±12	624	606	0	18	97.1
	(632)	(1)	(0)	(0)	(±23)	(633)	(626)	(1)	(6)	(98.9)
산업재해 예방	23	0	0	0	0	23	23	0	0	100.0
	(46)	(0)	(0)	(0)	(±1)	(46)	(44)	(0)	(2)	(95.7)
고용노동 행정지원	6,139	11	0	54	±38	6,204	6,178	1	26	99.6
	(5,932)	(20)	(0)	(0)	(±40)	(5,952)	(5,902)	(11)	(39)	(99.2)
소속책임 운영기관 운영	275	0	0	△2	±5	273	273	0	0	100.0
	(283)	(0)	(0)	(0)	(±7)	(283)	(277)	(0)	(5)	(97.9)
전출금등	4,214	0	0	0	0	4,214	4,214	0	0	100.0
	(3,201)	(0)	(0)	(0)	(0)	(3,201)	(3,201)	(0)	(0)	(100.0)

주1: 괄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

(나) 이용 내역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53억 6,500백만원임. 주요 이용내역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 53억 6,500백만원을 이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용액	주요 이용내역
합 계	△5,365	
고용창출	△5,149	○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을 위한 이용
고용노동행정지원	5,365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	△215	

(다) 전용 내역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150억 7,600만원임.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43억 3,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족분 충당을 위해 33억원 등을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합 계	15,076		
고용창출	5,420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청년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전산용역비 집행을 위한 전용	3,340
		○ (공정채용문화확산) 공정채용전산시스템 전산 개발 용역비 집행을 위한 전용	1,608
고용안전망확충	4,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참여자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부족액 전용	3,300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인증기관, 가사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액 전용	80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	1,163	○ (근로조건개선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지도·감독 출장여비 부족액 전용 등	1,163
인건비 등	4,393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각 지방관서 및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액 자체전용	4,393

(라)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26억 2,300만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4억 9,800만원, 직업안정기관운영 9억 8,9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합 계	2,623		
고용창출	2,511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1,498
		직업안정기관운영	989
		취약계층취업촉진	24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40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	16
		근로감독역량강화	15
		근로조건개선지원	9
고용노동행정지원	72	정책연구개발	20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20
		노동위원회기본경비(비충액)	18
		최저임금위원회전산경비(비충액)	13

(마) 불용액 내역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2,047억 2,400만원임. 주요 불용내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1,200억 7,1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444억 5,000만원 등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204,724		
고용창출	176,48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집행잔액	120,071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집행잔액	44,45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집행잔액 등	11,961
직업능력개발	21,663	내일배움카드(일반) 집행잔액	13,431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집행잔액	8,232
고용안전망확충	1,264	실업크레딧지원(일반) 집행잔액	704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집행잔액 등	561
고용평등증진	223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집행잔액 등	223
노사정책	595	상생협력 확산지원 집행잔액	595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1,836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ODA) 집행 잔액	798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집행잔액	400
		근로감독역량강화 집행잔액 등	638
산업재해예방	41	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집행잔액	41
고용노동일반	2,620	고용노동행정 혁신역량강화 집행잔액 등	2,620

(바) 예비비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배정액은 1,013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3억 8,8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01,388	101,388	0	0
국민취업지원제도	60,836	60,836	0	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40,552	40,552	0	0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억 8,600만원임. 이 중 8,3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7.1%이며, 미수납액은 4억 300만원으로, 대부분 진폐위로금 등 부당이득 미회수 금액임.

[2024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486	83	0	403	17.1
기타재산이자수입	-	2	2	0	0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	484	81	0	403	16.7

(2)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5억 6,600만원으로, 이 중 895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4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 전용등					
합 계	89,566	0	0	0	89,566	89,565	0	1	100.0
진폐위로금	86,828	0	0	41	86,869	86,869	0	0	100.0
진폐건강진단	1,510	0	0	173	1,683	1,683	0	0	100.0
진폐근로자지원	1,228	0	0	△214	1,014	1,014	0	0	100.0

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 세입결산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611억 2,700만원임. 이 중 431억 7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70.5%이며, 미수납액은 180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금액임.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합 계	18,742	61,127	43,107	0	18,020	70.5
지역지원계정	17,904	56,232	38,212	0	18,020	68.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38	4,896	4,896	0	0	100.0

(2)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38억 8,700만원으로, 이 중 1,791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47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183,887	183,887	179,138	0	4,749	97.4
지역지원계정	166,611	166,611	161,862	0	4,749	97.1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276	17,276	17,276	0	0	100.0

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 세출결산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10억 5,700만원으로, 이 중 4,016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94억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411,057	411,057	401,619	0	9,438	97.7
한국폴리텍대학출연	354,746	354,746	345,364	0	9,382	97.4
한국기술교육대학교출연	56,311	56,311	56,254	0	57	99.9

3. 기금결산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1) 수입결산 총괄

2024년 기금 수입계획현액은 고용보험기금 23조 4,136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0조 2,95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9,728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4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011억원 등 총 47조 1,87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조 2,216억원(7.3%)이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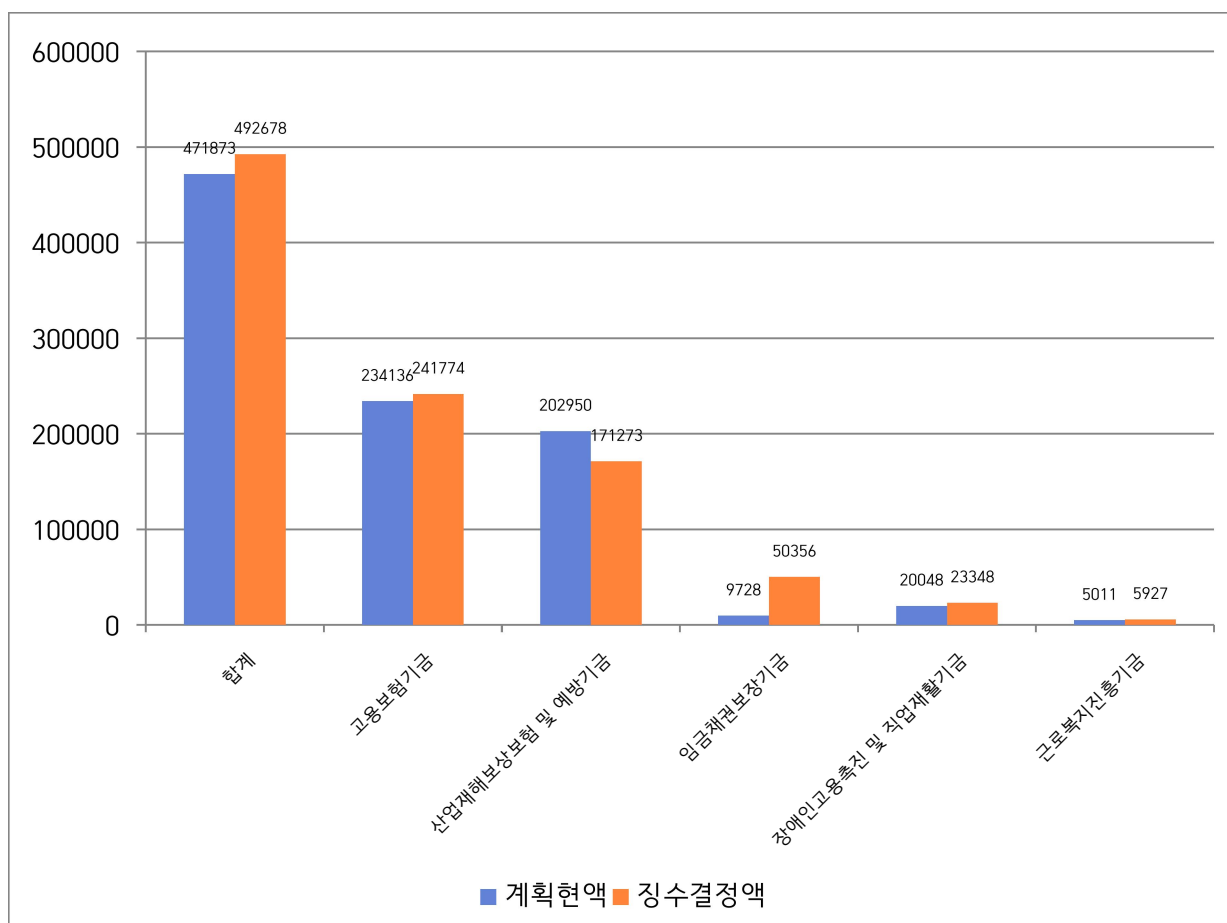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71,873	471,873	492,678	414,311	3,765	74,602	84.1
	(439,657)	(439,657)	(468,884)	(393,780)	(3,844)	(71,260)	(84.0)
고용보험기금	234,136	234,136	241,774	220,679	680	20,415	91.3
	(216,800)	(216,800)	(230,214)	(209,133)	(725)	(20,356)	(90.8)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202,950	202,950	171,273	155,923	991	14,359	91.0
	(190,562)	(190,562)	(165,826)	(149,678)	(1,066)	(15,083)	(90.3)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9,728	9,728	50,356	10,062	1,992	38,302	20.0
	(9,169)	(9,169)	(46,121)	(9,752)	(1,952)	(34,417)	(21.1)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20,048	20,048	23,348	23,044	27	278	98.7
	(19,005)	(19,005)	(21,279)	(20,960)	(30)	(289)	(98.5)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011	5,011	5,927	4,604	76	1,247	77.7
	(4,121)	(4,121)	(5,444)	(4,257)	(71)	(1,115)	(78.2)

주: 괄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수납액 기준으로는 고용보험기금 22조 679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5조 5,92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조 62억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조 3,044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4,604억원 등 총 41조 4,311억원이고, 수납률은 84.1%임.

[기금별 계획현액 및 징수결정액 비교]

(단위: 억원)



각 기금별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고용보험기금은 3.3%, 임금채권보장기금은 417.6%,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16.5%가, 근로복지진흥기금은 18.3%가 많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5.6% 적음.

한편, 기금별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고용보험 기금은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9.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기금은 9.2%, 임금채권보장기금은 38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기금은 1.2%, 근로복지진흥기금은 27.1%로 나타나고 있음.

(2) 지출결산 총괄(사업비)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27조 8,674억원, 계획현액은 29조 4,099억원으로 1조 5,425억원(계획액 대비 5.5%) 증가함.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27조 8,674억원 보다 3.5%(9,674억원)가 많은 28조 8,348억원(계획현액 대비 98.0%)을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총괄]

(단위: 억 원)

구 분	계 획 액	계 획 현 액 (A)	지 출 액(B)	이 월 액	불 용 액	집 행 률 (B/A)
합 계	278,674	294,099	288,348	0	5,751	98.0
	(282,764)	(290,971)	(278,718)	(2)	(12,251)	(95.8)
고용보험기금	164,058	175,908	172,837	0	3,072	98.3
	(169,107)	(175,098)	(168,871)	(1)	(6,226)	(96.4)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98,222	98,232	95,668	0	2,564	97.4
	(96,406)	(96,414)	(90,753)	(1)	(5,659)	(94.1)
임금채권 보장기금	5,431	8,351	8,348	0	3	100.0
	(6,357)	(8,026)	(7,923)	(0)	(103)	(98.7)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기금	9,053	9,380	9,358	0	22	99.8
	(8,478)	(8,748)	(8,660)	(0)	(88)	(99.0)
근로복지 진흥기금	1,908	2,227	2,137	0	90	96.0
	(2,417)	(2,685)	(2,511)	(0)	(175)	(93.5)

주: 1. 괄호는 2023회계연도 결산현황

2. 사업비 지출 결산[여유자금운용, 기금·계정간 거래 미포함]

나. 고용보험기금

(1) 수입결산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4조 1,774억원 대비 91.3%인 22조 679억원이 수납되었고, 2조 415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80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34,136	241,774	220,679	680	20,415	91.3
○ 사회보장기여금	177,482	200,951	182,619	568	17,765	90.9
- 고용주 부담금	107,640	122,139	111,164	330	10,644	91.0
- 피고용자 부담금	69,842	78,813	71,454	238	7,121	90.7
○ 재산수입	3,395	2,635	2,633	0	2	99.9
- 관유물대여료	1	4	4	0	0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394	2,631	2,629	0	2	99.9
○ 경상이전수입	2,324	4,635	1,876	112	2,647	40.5
- 과징금	0	16	0	0	16	0.0
- 가산금	49	97	39	7	52	40.2
- 기타경상이전수입	2,275	4,522	1,837	105	2,580	40.6
○ 잡수입	1	1	0	0	0	0.0
○ 융자원금회수	1,043	1,088	1,088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5,891	28,463	28,463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 회수	1,000	776	776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4,891	27,688	27,688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000	4,000	4,000	0	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4,000	4,000	4,000	0	0	100.0

(2) 지출결산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17조 5,908억원 중 98.3%인 17조 2,837억원이 지출되었고, 3,072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기금 간 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4조 7,843억원이 지출되었음.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①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고용창출’, ②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등의 ‘직업능력개발’, ③실업급여 등의 ‘고용안전망확충’, ④일·가정양립지원 등의 ‘고용평등증진’, ⑤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고용안전망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7조 2,837억원 중 71.4%인 12조 3,358억원을 집행함. 그 외 ‘고용평등증진’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7.9%인 3조 982억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8.4%인 1조 4,451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4년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6조 4,058억원)의 약 7.2% 규모의 금액인 1조 1,850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① ‘고용안전망확충’에서 실업급여 9,683억원, ② ‘고용평등증진’에서 일·가정양립지원 1,865억원, ③ ‘직업능력개발’에서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129억원 등 총 1조 1,979억원을 증액하고, ‘직업능력개발’에서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129억원을 감액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 획 액	전년 이월	계 획 변경액	계 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4,136	1	0	234,137	220,679	0	3,093
【 사업비 + 운영비 】	164,058	0	11,850	175,908	172,837	0	3,072
○ 고용창출	3,266	0	122	3,388	2,887	0	501
- 고용유지지원금	714	0	0	714	701	0	12
- 고용창출장려금	653	0	71	724	490	0	234
- 직업정보지원	48	0	0	48	48	0	0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74	0	0	374	374	0	0
- 지역고용촉진지원	95	0	52	147	130	0	17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767	0	0	767	539	0	228
- 고용보험징수관리	615	0	0	615	605	0	10
○ 직업능력개발	16,284	0	0	16,284	14,451	0	1,833
-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7,342	0	△129	7,214	5,710	0	1,504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3,568	0	129	3,697	3,680	0	17
-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1,250	0	0	1,250	1,248	0	2
-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사업지원	3,116	0	0	3,116	3,015	0	101
-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552	0	0	552	547	0	5
- 능력개발용자지원(용자)	455	0	0	455	251	0	204
○ 고용안전망확충	114,294	0	9,710	124,004	123,358	0	646
- 실업급여	113,782	0	9,683	123,465	122,848	0	617
- 자영업자실업급여	175	0	27	202	188	0	14
- 실업크레딧지원	337	0	0	337	322	0	15
○ 고용평등증진	29,049	0	2,018	31,067	30,982	0	85
- 일·가정양립지원	28,428	0	1,865	30,293	30,209	0	83
- 고령자고용촉진지원	621	0	153	774	773	0	1
○ 고용노동행정지원	1,165	1	0	1,166	1,158	0	7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70,078	0	△11,850	58,229	47,843	0	2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 수입결산

2024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7조 1,273억원 대비 91.0%인 15조 5,923억원이 수납되었고, 1조 4,359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991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B/A)
합 계	202,950	171,273	155,923	991	14,359	91.0
○ 사회보장기여금	94,185	103,604	91,613	784	11,207	88.4
- 고용주부담금	91,347	101,359	89,573	783	11,004	88.4
- 피고용자분담금	2,838	2,244	2,040	1	203	90.9
○ 재산수입	9,929	13,611	13,611	0	0	100.0
- 관유물대여료	8	8	8	0	0	100.0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9,921	13,603	13,603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1,236	4,494	1,135	207	3,152	25.3
- 과징금	0	2	2	0	0	100.0
- 가산금	73	191	77	12	102	40.3
- 기타경상이전수입	1,163	4,301	1,056	194	3,050	24.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3	120	120	0	0	100.0
○ 융자원금회수	1,899	1,809	1,809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78,895	46,884	46,884	0	0	100.0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239	340	340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78,655	46,544	46,544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675	752	752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213	213	213	0	0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15,501	0	0	0	0	0.0
- 기금예탁이자수입	961	539	539	0	0	100.0

(2) 지출결산

2024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9조 8,232억원 중 97.4%인 9조 5,668억원이 지출되었고, 2,56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예탁금 3조 3,000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2조 7,255억원이 지출되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은 ①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등의 ‘산재보험’, ②안전보건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③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9조 5,668억원 중 82.1%인 7조 8,57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에 ‘산업재해예방’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3.3%인 1조 2,728억원을,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4.6%인 4,362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9조 8,222억원)의 약 0.0% 규모의 금액인 9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산재보험’에서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억원을 증액하였음.

[2024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 원)

구 분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2,950	1	0	202,951	155,923	0	2,564
【 사업비 + 운영비 】	98,222	1	9	98,232	95,668	0	2,564
○ 산재보험	80,998	0	9	81,007	78,578	0	2,429
- 산재보험급여	78,761	0	0	78,761	76,333	0	2,428
- 산재근로자재활복지	911	0	0	911	911	0	0
-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98	0	9	106	106	0	0
- 산재의료사업지원	328	0	0	328	327	0	0
- 산재보험시설	70	0	0	70	70	0	0
-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01	0	0	201	201	0	0
- 산재보험료징수관리	486	0	0	486	486	0	0
- 산재근로자복지(융자)	143	0	0	143	143	0	0
○ 산업재해예방	12,855	1	0	12,856	12,728	0	128
- 안전보건재정지원	9,304	0	0	9,304	9,303	0	1
- 안전보건기술지원	2,906	1	0	2,907	2,788	0	119
- 안전보건문화확산	385	0	0	385	379	0	6
- 안전보건기반조성	260	0	0	260	258	0	3
○ 고용노동행정지원	4,369	0	0	4,369	4,362	0	7
【 기금간거래 】 공자기금 예탁금	33,000	0	0	33,000	33,000	0	0
【 여유자금운용 】	71,728	0	△9	71,719	27,255	0	0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1) 수입결산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조 356억원 대비 20.0%인 1조 62억원이 수납되었고, 3조 8,302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992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728	50,356	10,062	1,992	38,302	20.0
○ 재산수입	324	553	519	0	34	93.9
- 기타민간이자수입	30	26	15	0	10	57.7
- 기타재산이자수입	205	64	41	0	23	64.1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90	464	464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6,209	45,516	5,812	1,983	37,721	12.8
- 가산금	2	3	1	0	2	33.3
- 법정부담금	4,219	4,636	4,184	23	429	90.3
- 기타경상이전수입	1,988	40,877	1,626	1,960	37,291	4.0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45	828	272	8	547	32.9
-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345	828	272	8	547	32.9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815	2,431	2,431	0	0	100.0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49	36	36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766	2,395	2,395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036	1,028	1,028	0	0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	1	1	0	0	100.0
- 기금예탁원금회수	1,000	1,000	1,000	0	0	100.0
- 기금예탁이자수입	35	27	27	0	0	100.0

(2) 지출결산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8,351억원 중 100.0%인 8,348억원이 지출되었고, 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그 외 공자기금예탁금 500억원 및 여유자금 운용으로 1,214억원이 지출되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은 ①대지급금 지급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및 ②‘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8,348억원 중 98.0%인 8,18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2.0%인 168억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4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5,431억원)의 약 53.8% 규모의 금액인 2,920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대지급금 지급 2,525억원, 체불청산 지원 용자 37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4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 원)

구 분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변 경 액	계 획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합 계	9,728	0	0	9,728	10,062	503
【사업비 + 운영비】	5,431	0	2,920	8,351	8,348	3
○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5,264	0	2,919	8,183	8,180	3
- 대지급금 지급	4,747	0	2,525	7,272	7,272	0
- 체불근로자조력지원	115	0	24	139	139	0
- 체불청산 지원 용자	402	0	370	772	769	3
○ 고용노동 행정지원	167	0	1	168	168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1,000	0	0	1,000	500	500
【여유자금운용】	3,297	0	△2,920	377	1,214	0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 수입결산

2024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3,348억원 대비 98.7%인 2조 3,044억원이 수납되었고, 278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7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0,048	23,348	23,044	27	278	98.7
○ 재산수입 등	229	920	920	0	0	100.0
○ 경상이전수입	8,574	9,459	9,155	27	278	96.8
- 가산금	11	14	10	0	4	71.4
- 법정부담금	8,437	9,168	8,954	15	200	97.7
- 기타경상이전수입	126	277	192	12	74	69.3
○ 용자금회수	49	62	62	0	0	100.0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17	6,707	6,707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79	6,199	6,199	0	0	100.0

(2) 지출결산

2024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현액 9,380억원 중 99.8%인 9,358억원이 지출되었고, 2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으로 7,686억원, 공자기금 예탁금 등으로 6,000억원이 지출되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①장애인고용지원 등의 ‘장애인고용증진’ 및 ②‘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장애인고용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9,358억원 중 91.0%인 8,51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 사업은 9.0%인 841억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 (9,053억원)의 약 3.6% 규모의 금액인 326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장애인고용증진’에서 장애인고용지원 316억원, 장애인직업능력제고 10억원을 증액하였음.

[2024회계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 획 변경액	계 획 현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20,048	0	0	20,048	23,044	22
【사업비 + 운영비】	9,053	0	326	9,380	9,358	22
○ 장애인고용증진	8,213	0	326	8,539	8,517	22
- 장애인고용지원	6,404	0	316	6,720	6,720	0
-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725	0	0	725	725	0
- 장애인직업능력제고	931	0	10	941	919	22
-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96	0	0	96	96	0
- 장애인고용증진응자(응자)	6	0	0	6	6	0
- 장애인고용정보화	51	0	0	51	51	0
○ 고용노동행정지원	841	0	0	841	841	0
【기금간거래】 공자기금 예탁금 등	6,000	0	0	6,000	6,000	0
【여유자금운용】	4,994	0	△326	4,668	7,686	0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1) 수입결산

2024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927억원 대비 77.7%인 4,604억원이 수납되었고, 1,247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7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억 원, %)

구 분	계 획 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011	5,927	4,604	76	1,247	77.7
○ 재산수입	69	70	66	0	3	94.3
○ 경상이전수입	109	1,407	93	75	1,240	6.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1	103	103	0	0	100.0
○ 관유물매각대	1	1	1	0	0	100.0
○ 융자원금회수	1,854	1,794	1,790	1	2	99.8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338	1,043	1,043	0	0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09	1,509	1,507	0	2	99.9

(2) 지출결산

2024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2,227억원 중 96.0%인 2,137억원이 지출되었고, 9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으로 1,516억원, 기금 간 거래 등으로 951억원이 지출되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은 ①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과 ②‘고용노동행정지원 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사업은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2,137억원 중 92.5%인 1,97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노동행정지원’은 7.5%인 160억원을 집행하였음.

한편, 20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908억원)의 약 16.7% 규모의 금액인 319억원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300억원, 근로자복지지원 19억원을 증액하였음.

[2024회계연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 원)

구 분	계획액	계획 변경 등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011	0	5,011	4,604	0	90
【사업비 + 운영비】	1,908	319	2,227	2,137	0	90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1,744	319	2,064	1,977	0	87
- 근로자복지지원	533	19	553	493	0	60
- 근로자생활안정자금(용자)	885	300	1,185	1,182	0	2
- 신용보증대위변제	302	0	302	302	0	0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4	0	24	0	0	24
○고용노동행정지원 등	164	0	164	160	0	3
【기금, 계정간거래】	951	0	951	951	0	0
【여유자금운용】	2,152	△319	1,833	1,516	0	0

II. 결산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1) 과태료(일반회계, 54-56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과태료’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수입임.

과태료의 2024년 예산현액은 474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05억 2,100만원이었으며, 이 중 466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720억 7,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17억 7,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47,482	47,482	47,482	120,521	46,677	72,070	1,774	50,243

* 자료: 고용노동부

과태료 항목으로 수납되는 세입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7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② 「근로기준법」 제33

조²⁾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구분됨.

〈 이행강제금 수납실적 제고 필요 〉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과태료 세입항목의 징수결정액 1,205억 2,100만원 중 474억 4,100만원은 이행강제금 항목임.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474억 4,100만원 중 17.4%인 82억 7,200만원만을 수납한바 수납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조한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0년 43.7%에서 2024년 17.4%로 하락한바, 특히 2022년 44.9%, 2023년 26.5%, 2024년 17.4%로 최근 3년간의 수납률 하락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2020년	18,583	8,122	10,461	2,572	43.7%
2021년	21,270	8,886	12,383	1,316	41.8%
2022년	21,945	9,858	12,087	1,057	44.9%
2023년	27,025	7,149	19,875	1,057	26.5%
2024년	47,411	8,272	39,138	923	17.4%

주 :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누적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³⁾)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강제하는 강제 집행의 수단으로서 일정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⁵⁾

부당해고등으로 인해 연간 1,500건 이상의 사건이 부당해고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매년 800건 이상이 구제명령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 3)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4)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5)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인정건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15,384	14,008	14,898	18,167	21,181
	인정	1,642	1,712	1,596	1,763	1,727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871	895	833	731	858
	부과액	10,634	13,104	10,631	17,061	30,038

주1)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인정 건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청·인정 건수의 합임.

주2)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해당 연도에 부과한 액수임.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권리 구제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제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이행강제금의 저조한 수납실적은 구제명령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구제라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임.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⁶⁾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수납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6)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세출 결산

가. 국제협력관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일반회계, 3050-30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2012년 ~, 직접·출연)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분야 정책발전경험을 공유·전수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공공고용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하고, 우리나라와 밀접한 지역협력체인 ASEAN과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용노동정책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1억 7,500만원으로, 93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아프리카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잔금 1,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스리랑카 고용서비스(PES) 전산망 구축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7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10,175	10,175	-	-	-	10,175	9,361 [10,777]	16	798	10,325
▪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강화	5,671	5,671	-	-	-	5,671	4,857 [6,273]	-	-	3,803
▪ 다자금융기구 및 지역협업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	293	293	-	-	-	293	293 [293]	-	-	243
▪ 한·ILO 협력사업	4,211	4,211	-	-	-	4,211	4,211 [4,211]	-	-	6,279

* 자료: 고용노동부

〈 사전 준비 미흡과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관리 등으로 재정과 행정력을 소모시킨 ODA 사업 〉

동 세부사업 중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정책역량 강화’ 내역사업(예산액 76억 1,500만원)은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산업안전·고용서비스 등 고용노동분야의 정책과 시스템을 공유·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에 대해 고용노동분야 법·제도 등 정책 자문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직업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이하 “SQ-net”) 구축’은 2019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해외진출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가 MOU를 체결한 후 2021년부터 4년간 다음과 같이 총 40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격검정 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우리나라의 자격정보시스템(Q-net)을 벤치마킹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이월한 출연금 21억 8,9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SQ-net 구축 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1차년도('21)	2차년도('22)	3차년도('23)	4차년도('24)
기반구축 DSD(직업기술국) 홈페이지·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도입 사업비: 18억 5,300만원	시스템 구축 자격검정시스템 및 SQ-net 포털 구축 사업비: 10억 5,300만원	시스템 안정화 모바일 서비스 및 CBT 검정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 7,300만원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운영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및 자문 사업비: 9억 6,000만원

동 사업은 1차년도 사업 중 직업기술국(DSD) 홈페이지 구축과 문제은행 시스템 개발까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을 뿐⁷⁾ 현재까지 원조사업의 실질적인 시행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수원국의 사업 승인이나 이행협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기자재 도입단계부터는 사업이

7) 현재 홈페이지나 시스템이 오픈되지 않고 현지 특성에 맞도록 현지 조정작업이 미이행된 상태로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음

진행되지 않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⁸⁾

그런데, 2019년 11월 체결된 MOU의 유효기간 3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⁹⁾ 올해 초 수원국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당 사업 MOU를 체결하였던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MOLISA)가 통폐합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상대방인 직업훈련총국(DVET)이 교육훈련부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교육훈련부는 베트남 정부가 SQ-net 구축 이후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없고,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올해 4월 교육훈련부 직업훈련평생교육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수원국의 사업중단 의사를 밝혔으며,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수원국의 사업중단 요청 공문을 접수하여¹⁰⁾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시행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다음과 같이 통역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을 집행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8) '24년 종료→'26년 종료

9) ARTICLE IV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sides and will be continued for the period of three (3) years under the signature of officials representing the two sides.

10) 「베트남 SQ-Net 구축 지원사업 중단요청 공한 송부, (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4623)」

[연도별 출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집행액	세부내역
2021	865	1단계 사업 선금 820, 회의 통역비 18, 1단계 사업비 등 조달수수료 12, 기타사업비 15
2022	106	1단계 사업 잔금 75, 자료번역료 21, 기타사업비 10
2023	125	2단계 사업비 100, 회의 통역비 16, 기타사업비 9
2024	14	2단계 사업비 조달수수료 8, 한-베 회의 통역료 등 기타사업비 6

이러한 ODA사업의 실질적인 미이행은 시행주체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의 발굴·기획단계부터 사업 시행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행정절차 등 수원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화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하며, 수원국의 비협조 등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고,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을 위한 절차 진행과 재원 확보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을 투입하는 등 사업 시행 이전 단계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점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형성단계에서 수원국의 ODA 체계에 대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는¹¹⁾ 제언사항에서도 나타남.

특히 정보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ISP) 수립과정

¹¹⁾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중간평가 요약 중 제언사항,
odakorea.go.kr > oda 평가 > 시행기관 자체 평가

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예측치나 베트남 현지 사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희망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¹²⁾ 기대효과가 부풀려져 산출된 측면이 있고, 사업시행의 전제 요건으로서 수원국 국민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나 호응도가 낮은 상황을 개선할 제도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지 않아¹³⁾ 사업의 시행 및 정착에 필요한 수원국의 이행 및 지속가능 모멘텀과 과제 순위 등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여 ISP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관리한 점 또한 적절하지 않는 사업관리로 생각되는바,

①시행 첫 해부터 교부된 출연금 18억 5,300만원의 53%가 넘는 9억 8,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②2022년에도 전년도에 이월된 출연금이 있음에도 사업비 10억 5,3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결국 출연금 20억 4,100만원 중 6억 9,400만원이 불용되고 12억 4,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③2023년 또한 이월된 출연금에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7,3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23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은 거의 추진

12) 정량적 기대효과에서 응시자 증가 추세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 증가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누적수수료를 베트남 현지 물가가 아닌 한국의 자격검정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나 자본투자수익률의 예측치를 과도하게 산출되도록 하였음

13) 해당 ISP 보고서에는 수원국 국민의 자격증 취득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할 수원국 정부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체결된 MOU에도 언급되지 않았음

되지 않아 21억 8,9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집행부진을 누적시켜 실집행율이 사업 첫 해의 46.7%에서 2024년도에는 0.6%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도록 하였음.

[SQ-net 구축 사업 출연금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집행율 [C/(A+B)]
	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2021	1,853	1,853	-	1,853	865	988	-	46.7%
2022	1,053	1,053	988	2,041	106	1,241	694	5.2%
2023	1,073	1,073	1,241	2,314	125	2,189	-	5.7%
2024	-	-	2,189	2,189	14	2,175	-	0.6%
2025 ¹⁴⁾	-	-	2,175	2,175	6	-	-	-
계	3,979	3,979			1,116		694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사업 시행 3년차인 2023년에는 전년도 불용액 6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유로 연초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2단계 사업 용역 선금인 1억원만 집행함으로써 국회로 하여금 2024년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러한 사업추진은 고용노동부가 출연사업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국고관리를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14) 8월 기준

수원국 정부의 비협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진행 여부나 진행 방향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원국의 의사에 종속되어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였고, 향후 사업 시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음.

①2021년 수원국이 IT관련 ODA 사업의 승인요건으로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추가하면서 적합성 컨설팅을 사업내용이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이를 2단계 사업에 포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②사업지연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2022년 4/4분기에 실시된 자체평가에서조차¹⁵⁾ 지속가능성이나 사업일관성에 대한 평가가 최고값으로 측정되는 등¹⁶⁾ 성과 점검이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없이 형식적인 절차 이행으로 진행되었으며, ③이미 수원국의 사업 시행의지 부재가 감지되어¹⁷⁾ 이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에서¹⁸⁾ 사업승인 전 수행해야 하는 사전절차(Binding Condition¹⁹⁾) 까지 지연되었던 2023년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장담하며 사업 중단 사태를 지난하게 이어옴으로써 집행된 사업비와 사업의 정상적

15)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odakorea.go.kr>oda 평가>시행기관 자체 평가

16)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평가 연구 P. 63- 66

17) 2023년 10월 26일 실시된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MOLISA) 유관부서 “종합회의”에서 수원국 측은 시스템 구축 이후의 운영인력 및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우려 등을 표하며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MOU의 갱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원조국의 직접 지원이 아닌 비용만을 수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수원국이 해당 비용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미 정상적인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18) 2024년 5월 실시된 2023년도 결산 예비검토(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에서 해당 의견이 제시됨

19) 사업승인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묶어서 표현한 용어로 시스템 운영인력(업무역할, 자격요건 등)과 시스템 운영예산(사업종료 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상비용) 등이 포함됨

인 진행을 위하여 추가 투입된 자금과 인력이²⁰⁾ 매몰되어 재정과 행정력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국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판단과 미흡한 준비,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 등으로 이 사업은 장기간 시행 시작단계에서 머무르며 국가의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ODA 사업 추진에 있어 수원국 제도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여 원조국과 수원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 [사업 선정 이후 2024년까지 관련 해외 출장 내역]

연도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자	여비(원)
'22	5.10.~5.18.	사업승인 및 이행협약 체결 추구를 위한 업무협의	산업인력공단 2인	5,102,360
	10.11.~10.14.	사업 진행상황 확인 및 관계기관 면담	고용노동부 1인, 산업인력공단 1인	3,134,302
'23	3.13.~3.16.	사업승인 촉구 및 기자재 적합성 평가 논의	고용노동부 3인(과장 등), 산업인력공단 1인	6,449,024
	10.24.~10.27.	노동보훈사회부, 직업훈련총국장 면담 등을 통한 사업진행 촉구 등	고용노동부 3인(과장 등), 산업인력공단 1인	6,470,073
'24	5.7.~5.9.	진행사항 확인 및 조속한 사업진행 촉구 등	고용노동부 1인, 산업인력공단 1인	2,985,099

< 집행지침을 위반한 예산 집행의 문제 등 >

또 다른 내역사업인 ‘다자금융 및 지역협의체를 통한 고용노동정책 교류’는 지역협의체인 ASEAN 국가의 정책담당자들과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숍(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을 개최하고, 아세안 국가와 한국·중국·일본이 직업능력 개발분야 정책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다자금융기구인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개최하는 ASEAN+3 HRD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ASEAN 국가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은 2021년부터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고,²¹⁾ 2023년부터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 개최 개요]

	일시	장소	의 제	집행예산(원)	비고
1차	‘21. 3. 25. - 3. 26	웨 스 턴 조 선호텔	코로나19 및 이후 고용노동 정책	60,000,000	대 면 / 비대면
2차	‘21. 12. 1. - 1. 2	JW매리어 트서울호텔		60,000,000	
3차	‘22. 12. 1. - 12. 2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활성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60,000,000	
4차	‘23.11.30.- 12. 1	더 플 라 자 호텔 서울	Digital 시대 ASEAN 일자리 전망과 직업능력개발동향	60,000,000	대면
5차	‘24. 9. 30 - 10. 1	더엠버서더 풀만 서울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의 세계	243,000,000	대면

21)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정된 1차워크숍이 개최되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2021년 3월에 개최하였음.

2024년에 집행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워크숍 개최에 투입된 인건비, 참석자 항공임 및 숙박비, 식음 및 행사 장소 대관비, 기타 워크숍 운영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워크숍 성과 홍보 간행물 출간비와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신규로 추가된 것이 주된 요인임.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 주요 지출 내역 연도별 비교]

(단위: 원)

지출 내역	2023년	2024년
인건비	2,320,000	28,944,136
참석자 항공임	12,000,000	39,710,000
참석자 숙박비	9,000,000	33,264,000
오만찬, 다과 및 행사 장소 대관비	12,060,000	48,060,800
기타 워크숍 운영비 및 기념품 등 제작물 비용	23,986,000	64,706,821
워크숍 성과홍보 간행물 출간비	-	9,900,000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용역비	-	20,000,000

*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지출 내역 중 참석자 항공임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 참석자 28명과 주 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2명 등 다음과 같이 총 37명의 항공임을 지원하였음.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 항공임 지원 세부 내역²²⁾]

(단위: 원)

연번	국적	소속	직위	항공임 ²³⁾
1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Director	1,045,000
2			Director	1,045,000
3			Deputy Director	1,045,000
4	러시아	World Bank	Senior Economist	1,045,000
5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1,045,000
6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1,045,000
7			Senior Assistant Secretary	1,045,000
8	미얀마	노동부	Director	1,045,000
9			Instructor Officer	1,045,000
10			Director General	1,045,000
11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Deputy director	1,045,000
12		국제협력부	Official	1,045,000
13		노동보훈사회부	Official	1,045,000
14	브루나이	국무부	Senior Statistics Officer	1,045,000
15			Senior Statistics Officer	1,045,000
16			Assistant Commissioner	1,045,000
17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Manager	1,045,000
18			Manager	1,045,000
1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처	Researcher	1,045,000
20	시아	인적자원부	Junior Public Analyst	1,045,000

22) 음영표시 된 사람이 의제 발표자 또는 저개발국가 초청인사임

21			Staff	1,045,000
22			Staff	1,045,000
23			Planner	1,045,000
24			Chief	1,045,000
25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Director	1,045,000
26			Deputy Director General	1,045,000
27			Labour Specialist	1,045,000
28	태국	노동부	Foreign Affairs officer	1,045,000
29		타마셋 대학	Professor	1,045,000
30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부	Senior Officer	1,045,000
31		산 토마스 대학	Professor	1,045,000
32	필리핀		Chief	1,045,000
33		노동고용부	Director	1,045,000
34			Chief	1,045,000
35		World Bank	Senior Social Protection Specialist	1,045,000
36			Senior Economist	1,045,000
37	대한민국	주 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Minister	1,045,000
38			Labor Attache	1,045,000
계				39,710,000

* 자료: 고용노동부

23) 실제 지급된 참석자 항공비(실비)는 51,163,857원이나 노사발전재단은 PCO와의 계약서에 따라 약 39,000,000만원만 지급함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재부집행지침’이라 함) 중 국제회의 개최 시 외빈초청관련 경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국고가 지원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외빈을 기조연설, 의제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과 UN 통계 기준의 저개발국가 초청인사(Least Developed Countries)로 한정하고 있음.²⁴⁾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²⁵⁾ 모든 해외 참석자에게 항공임을 지원하였음.

특히 1인당 GDP가 각각 9만 달러와 3만 5천 달러를 상회하여 세계 경제 순위 4위와 31위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²⁶⁾ 참석자에게 항공임을 지원한 것은 이 사업이 ODA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숍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위탁사업자인 노사발전재단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는 2024년 제4차 워크숍 참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 인터뷰에서 ODA 수원국이 아닌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참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²⁷⁾

24)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76

25) UN 통계 기준의 저개발국은 총 44개국이고 이중 아시아에 속한 저개발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예멘의 총 8개국임.
(출처 <https://unctad.org/topic/least-developed-countries/list>). 따라서 항공임 및 숙박비를 지원한 참가자 중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되는 초청인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참가자만 해당됨

26)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올해 4월에 발표한 1인당 명목 GDP(GDP per capita, current price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92,932달러로 세계 4위이고, 브루나이는 34,970달러로 세계 31위임. 참고로 대한민국은 34,642달러로 브루나이보다 낮은 세계 32위임.

(출처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27)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p40

노사발전재단은 워크숍을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하면서 초청 인사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모든 참석자 85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모든 식사를 최대 15만원을 상회하는 호텔 오·만찬 행사로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총 4,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 오만찬 관련 비용]

(단위: 원)

	단 가	인 원	횟 수	계
오 찬	100,000	85	2	17,000,000
만 찬	150,314	85	1	12,778,985
다 과	15,000	85	5	6,375,000
행사장 대관	10,850,000		1	10,850,000
총 금액				47,003,985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①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 교육기관, 훈련기관 등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여 “허례허식이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²⁸⁾ ②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외빈초청여비 중 식비 지급단가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²⁹⁾ ③유사한 행사인 ASEAN+3 HRD 포럼에서도 오·만찬의 단가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집행을 점³⁰⁾ 등을 고려한다면

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76

2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70

고가의 호텔 연회장을 워크숍 장소로 임차하여 워크숍 기간 내내 모든 참석자에게 고가의 호텔 오만찬으로 식사를 제공한 점은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향후 행사 관련 예산을 기재부집행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거나 방만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30) 표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세부 내역 참조]

〈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집행된 예산, 편성 예산 규모보다 초과된 집행, 공동개최자인 월드뱅크의 역할 문제 〉

ASEAN+3 HRD 포럼은 2012년 5월 ASEAN+3 고용노동 장관회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ASEAN+3 회원국과의 직업능력개발 분야 정책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상호발전 방향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 포럼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질적인 개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최근 5년간 ASEAN+3 HRD 포럼 개요]

일시	장소	의 제	집행예산(원)	비고
'20. 11. 17. - 11. 18.	서울 웨라톤 디 큐브시티 호텔	코로나19 시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혁신과 기술	50,000,000	대면/ 비대면
'21. 11. 4. - 11. 5.	서울드래곤 시티 호텔	지속가능하며 친환경, 포괄적인 성장: 직업능 력개발 및 고용을 통한 더 나은 미래 건설	50,000,000	
'22. 11. 10. - 11. 11	웨스틴조선 서울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을 통한 지 속가능하며 친환경, 포괄적인 성장	50,000,000	대면
'23. 11. 2. - 11. 3	롯데호텔 서울	혁신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디지 털 대전환	45,000,000	대면
'24. 11. 7. - 11. 8.	메이필드호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 력 역량 강화	50,000,000	대면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도에는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세부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ASEAN+3 HRD 포럼 예산 세부 집행 내역]

구 분	세부 내역	계
행사장 임차	17,925,000원*1식	17,925,000원
참가자 숙박	12,369,000원*1식	12,369,000원
오찬(1일차)	50,000원*85명	4,250,000원
만찬(1일차)	50,000원*85명	4,250,000원
오찬(2일차)	40,000원*60명	2,400,000원
다과 및 음료	15,000원*85명*2회	2,550,000원
결과보고서 인쇄	30,000원*10부	300,000원
결과보고서 번역	5,956,000원*1식	5,956,000원
총 계		50,000,000

* 자료: 고용노동부

이 포럼은 다른 세부사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출연금)의 내역사업인 국제교류협력에서도 9,81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PCO(전문회의기획자)와 계약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자 항공임과 숙박비, 동시통역, 회의장 조성 비용 등 약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2024년
ASEAN+3 HRD 포럼 예산 세부 내역]

구 분		소요 예산	세부 내역
인건비		15,873,547	용역업체 PM, 사무국 운영 직원
행사경비	참가자 교통비	35,700,000	해외 참가자 항공임 지원 29,200,000원 공항 영접, 영송 차량비 100,000원*40회=4,000,000원 행사장↔인근 역 수송 차량비 500,000원*3일=1,500,000원 산업시찰용 대형버스비 1,000,000원*1일=1,000,000원
	통역 관련비	6,900,000	동시통역사 2인 2,000,000원 통역 부스, 휴대용 송수신 장비 및 음향시설 임차료
	운영비	10,150,000	사회자(영어 가능), 영상 장비 기사, 포럼 진행요원 등 인건비 및 행사보험
	인쇄 제작비	5,100,000	프로그램 북, 결과보고서 인쇄 포토월, 대형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제작
기타		20,834,275	일반관리비, 4,423,413원 이윤 7,814,696원 부가가치세8,596,166원
총계		94,557,000	(천원 미만 절사 = -822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하나의 행사를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누어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는 관행은 포럼 개최 첫 해인 2015년부터 다음과 같이 지속되어 왔음.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별·통제하고 성과관리를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구조임. 따라서 신산업, 신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직업능력개발’과³¹⁾ 취약근로자 권

익보호 및 근로자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근로조건보호 및 복리증진’이라는³²⁾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각각의 세부사업에서 이 포럼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하나의 행사에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예산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음.

[ASEAN+3 HRD 포럼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연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3050-302)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134-307)
2015	49,500,000원	120,421,160원
2016	49,500,000원	93,720,800원
2017	49,500,000원	107,267,450원
2018	49,500,000원	118,151,860원
2019	49,500,000원	123,901,000원
2020	50,000,000원	91,220,000원
2021	50,000,000원	94,293,000원
2022	50,000,000원	106,819,600원
2023	50,000,000원	100,997,420원
2024	50,000,000원	98,130,000원

* 자료: 고용노동부

31)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7
명칭	직업능력개발	한국산업인력공단출연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32)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50	302
명칭	근로조건보호및복지증진	국제고용노동협력	개도국고용노동분야개발협력

특히 국회에서 확정된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이 포럼의 2024년도 예산은 5,000만원이었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9,81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초과 집행은 방만한 출연금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됨.

이 포럼에서도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과 같이 해외에서 참여자 24명의 항공임 총 2,900여 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에는 싱가포르 인적자원부 참석자 1인 항공임 1,319,800원과³³⁾ 세계은행이 초청한 몽골 참석자 2인의 항공임 총 1,605,800원이 포함되어 있음. 선진국인 싱가포르 참석자 항공임 지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몽골 참석자 항공임 지원은 포럼 회원국이 아닌 공동 개최자인 세계은행의 초청에 의한 것임에도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 집행인 것으로 판단됨.

[ASEAN+3 HRD 포럼 항공임 지원 세부 내역]

(단위: 원)

연번	참석국	소속	직위	항공임
1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Bureau Chief	872,900
2			Chief of Legal office	948,700
3			Deputy Director	951,000
4	중국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Deputy Director	381,200

33) 싱가포르 참석자 중 1인은 지정토론자임

5			Officer	381,200
6	피지	교육부	Acting Manager	2,116,900
7	인도네시아	아세안 사무국	Assistant Director	1,079,700
8		BPVP Padang	Head of VTC Padang	875,400
9		인적자원부	Human Resource Analyst	1,313,900
10		교육문화조사기술부	Analyst of Technical Policy	1,364,800
11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기술개발원	Deputy-Director General	1,290,100
12		교육체육부, 기술직업교육국	Deputy Director General	1,290,100
13	몽골	교육부	Director General	802,900
14		고등학습균등촉진프로젝트	Project Coordinator	802,900
15	미얀마	노동부	Officer	1,330,400
16			Assistant Director	1,120,400
17	필리핀	노동고용부	Assistant Regional Director	346,600
18		기술교육숙련기술개발원 (TESDA)	Regional Director	633,400
19		노동고용부	Assistant Regional Director	932,800
20	싱가포르	난양 이공대학교	Assistant Director	1,010,100
21		인적자원부	Manager	1,319,800
22	태국	노동부, 국제협력국	Director of ASEAN Unit	851,500
23		기술개발국	Director	863,100
24	-	World Bank	Economist	5,198,700

* 자료: 고용노동부

더욱이 세계은행은 이 포럼의 공동개최자로서 매년 포럼 개최에 1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고 하나 자체 집행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포럼의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2024년에는 지원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강연자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항공임 520여 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등 향후 포럼 운영에 있어 공동개최자로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산을 포럼의 취지에 부합하는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예산 규모나 사업 성과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회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며, 편성된 예산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 공동개최자인 월드뱅크와의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한 개선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의제의 반복, 동일한 프로그램과 참석 범위의 문제 〉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과 ASEAN+3 HRD 포럼은 다음과 같이 ‘기술발전(4차 산업혁명, DIgital 시대)에 따른 고용(노동시장, 일자리)의 변화와 직업능력개발(인적자원개발, 노동인력 역량 강화)’과 유사한 내용의 의제를 반복하여 선정하는 경향이 있고, 참석대상은 대부분 ASEAN 국가 정부의 고용노동분야 공무원들이며, 강연이나 의제발표를 하는 전문가들역시 모두 국내·ASEAN 국가·세계은행 소속 전문가이고 1박 2일동안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하고 한국의 산업이나 고용노동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과 ASEAN+3 HRD 포럼 비교]

		한-ASEAN 정책공유워크숍	ASEAN+3 HRD 포럼
개최 시기		공공행정 ODA 협력강화	ASEAN+3 고용노동 장관회의 후속 조치
프로 그램		토론과 발표, 스터디투어	토론과 발표, 산업시찰
의 제	2020	코로나19 및 이후 고용노동정책	코로나19 시대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2021	코로나19 및 이후 고용노동정책	지속가능하며 친환경, 포괄적인 성장: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을 통한 더 나은 미래 건설
	2022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활성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을 통한 지속가능하며 친환경, 포괄적인 성장
	2023	DIgital 시대 ASEAN 일자리 전망과 직업능력개발동향	혁신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2024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의 세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
참석국		ASEAN 회원국	ASEAN 회원국, 중국
발표자		국내, ASEAN 회원국, 월드뱅크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는 ASEAN+3 HRD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국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수원국 현지 여건 및 신규 수요를 분석하여 사업 발굴에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한-ASEAN 정책 공유워크숍이라는 별도의 행사를 2020년부터 개최하였으나, 의제개발이나 프로그램 편성 등의 측면에서 ASEAN+3 HRD 포럼과 실질적인 차별화를 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즉, 고용노동부는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의제로 아세안 국가 정부정책 담당자와 전문가, 월드뱅크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를 하고 토론하며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국내 관련 시설을 홍보하는 유사한 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을 고려하여 행사 통·폐합 등 현행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일반회계, 3050-30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은 지방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
면서도 내국인의 일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를 적정 규
모로 도입·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관리하며,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및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9억 5,400만원으로, 이 중 75억 5,400만원
(95%)이 집행되고, 4억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7,934	7,934	20	-	-	7,954	7,554 [7,362]	0	400	9,195
▪ 외국인취업자관리	4,163	4,163	20	-	-	4,183	3,783 [3,783]	0	400	5,073
▪ 외국인력상담센터	1,971	1,971	-	-	-	1,971	1,971 [1,888]	0	0	2,022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1,800	1,800	-	-	-	1,800	1,800 [1,691]	0	0	1,800
▪ 외국인근로자 공공주거시설지원	-	-	-	-	-	-	-	0	0	300

* 자료: 고용노동부

〈 부적정한 일반수용비 집행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취업자관리(2004년 ~, 직접)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을 안내·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을 공고하거나 안내책자나 취업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사업임.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은 총 41억 6,300만원이고, 이 중 일반수용비가 20억 9,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데, 2023년도 예산안 편성자료에 따르면 지방관서 고용센터 통역원 사례비, 외국인력제도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등 각종 정책 공고, 관련 회의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³⁴⁾

해당 수용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 등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약 8,700만원이 집행되었음. 그런데 일반수용비의 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홍보물 구매에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관련 공공기관·대사관 직원 등 회의 참석자에게 주는 선물을 구매하거나 세부사업에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³⁵⁾ 진행하면서 초청 대상자들에게 증정하기 위

3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p.958 참고

한 선물을 구매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수용비 중 선물구매 지출 내역]

(단위: 원)

연번	물품	증정 행사	증정 대상	단위가격	수량	지출액
1	홍삼 세트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산업자원부·산림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고용허가제 담당 공무원, 2024년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관련 협·단체	45,870	100	4,587,000
2	명함볼펜 세트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정책 세미나'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35,100	100	3,510,000
3	홍삼 세트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중앙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산업자원부·산림청)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고용허가제 담당 공무원	33,055	100	3,305,500
총 액						11,402,500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해당 수용비에서 집행된 홍보물품 대부분이 외국인력상담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사용자)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35)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정책 세미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출연금) 예산에서 집행되었음에도 이 행사 선물만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3050-301)에서 집행되었고, 해당 행사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음

당사자이자 안내·홍보대상으로서 특정되지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한 생필품이나 작업에 필요한 물품임에³⁶⁾ 반하여, 위와 같이 회의에 참석한 정책담당자나 행사 초청 대상자에게 증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가로 구매된 선물은 참석자 또는 송출국가 간 교류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구매 목적이나 대상 등에서 홍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정책 세미나’는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물을 제외한 모든 경비가 다른 사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134-307, 출연금) 예산에서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물을 구매·제작함에 있어 그 목적과 증정 대상, 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

36) [참 고] 뒷장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집행 내역 참조

참고

일반수용비 중 홍보물 집행 내역

(단위: 원)

품 목	단위가격	총 금액	지급대상
홍삼	45,870	4587000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제1차 중앙지방협의회)
부채	682	3410000	주말상담 방문 외국인근로자
명함볼펜세트	35,100	3510000	고용허가제 20주년 행사 참석자
삼푸	4,620	4620000	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상담센터 방문)
양말	5,263	5000000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센터 방문)
홍삼	33,055	2644000	지자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제2차 중앙지방협의회)
섬유향수	20,000	200000	외국인고용허가사업장
양치세트	3,300	990000	고용노동정책설명회 참여기업
장우산	8,212	410000	산업안전보건 교육지원, 현장컨설팅 참여기업
바디핸드세트	8,600	602000	찾아가는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참여기업
휴대용양치세트	1,213	40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온냉텀블러	4,740	5654000	농업지역 외국인근로자
여행용6종세트	8,300	997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외국인근로자, 현장 컨설팅참여기업 등
넥클러	7,840	799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쿨토시	6,226	1033000	농축산업 사업주
장갑	2,500	1000000	농축산업 사업주
장갑	1,660	730000	농축산업 사업주
삼푸, 가습기	8,752	1734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머그컵	7,038	704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치약	4,440	888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물티슈	1,199	689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세면도구 등	10,100	150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용량햇팩	486	374000	외국인근로자
L홀더(고용허가안내)	1,000	1320000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칫솔(6입)	19,010	1140000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세면타올	6,520	246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탁상용달력	5,860	1758000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선크림 에코백	10,000 8,000	250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관계자, 외국인
디퓨저 치약칫솔세트	10,000 8,000	200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관계자, 외국인
햇팩	800	150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관계자, 외국인
목걸이형 선풍기 탁상용선풍기 양우산 핸드워시 각티슈	28,000 21,000 12,000 5,500 3,460	3844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목 마사지기 핸드크림+립밤세트	25,900 9,000	18065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휴대용 치약 칫솔 세트 핸드크림·풋크림세트	7,500 15,500	1525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양말 섬유탄취제	5,400 7,200	126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보조배터리 귀마개	13,400 2,200	1670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바디워시,샴푸세트	23,790	1784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핸드크림키트	28,500	769000	고용허가 관련 내방민원인
탁상달력(제도설명)	6,500	715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물티슈	600	198000	고용센터 방문민원인
우산	12,700	989450	현장컨설팅 사업장 등
달력 물티슈 치약칫솔세트	1,770 570 3,150	1207250	사업장/방문민원인
가습기 치약칫솔세트 미니선풍기	14,300 835 25,300	3927550	화성시 세계인의 축제 상담부스 운영 (상담 온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관계자)
칫솔살균기 햇팩	14,100 470	2244000	고용허가제 상담 온 방문 사업장 등
타올	7,000	2310000	설명회 참석자
소화기 삼각대	23,100 6,700	1967000	유관기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 인근로자
벽시계	23,700	2607000	유관기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 근로자

핸드크림	4,215	800000	경주시 주최 제25회 지구촌축제한마당 행사 참가 외국인근로자, 유관기관
핸드워시타올셋트 가그린	11,880 856	1509000	외국인문화축제 참가자 등
주방세제	9,500	902000	외국인 농업분야 주거환경 개선 논의 참석자
주방 선물세트	25,000	625000	사업장변경소위원회 참석자 등
휴대용 칫솔살균기	16,000	640000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노하우 공유 간담회 참석자
드라이백	14,600	584000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 위원 등

* 자료: 고용노동부

나. 고용정책실

(1) 고용영향평가사업(일반회계, 1045-3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영향평가사업’(2011년~, 법정민간대행)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업,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억 3,900만원이 모두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영향평가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039	-	-	1,039	1,039	-	-	1,339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³⁷⁾에 따른 것으로, 고용

37)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책 고용영향평가로 나뉘어짐.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 법정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8건의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수행하였고, 2025년에는 10건의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2021~2025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수 추이]

(단위 : 개)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과제수	20	24	24	8	10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청 과제 비율 제고 필요 〉

「고용정책 기본법」은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으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④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수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과제 수 대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과제 수의 비율이 10~2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1~2025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과제 수 추이]

(단위 : 개,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과제수(A)	20	24	24	8	10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신청과제(B)	5	4	2	1	2
비율(B/A)	25.0	16.7	8.3	12.5	20.0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과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11건이었던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은 수의 과제만을 신청하고 있는바, 정책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높지 않다고 보임.

[2021~2025년 정책 고용영향평가 신청 건수 대비 선정 건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신청 건수			선정 건수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계	중앙부처	지자체
2021년	8	8	-	5	5	-
2022년	5	4	1	4	3	1
2023년	3	2	1	2	2	-
2024년	11	4	7	1	1	-
2025년	3	-	3	2	-	2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책 고용영향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³⁸⁾, 정책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은 해당 정책을 수립·

38)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이 하는 구조임.

이와 같은 제도 설계 하에서 정책의 수립·시행 주체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여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중 첫 번째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과제를 고용노동부 및 고용영향평가센터가 주체가 되어 발굴한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바, 「고용정책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청 과제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가용데이터의 한계 등으로 대상과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과제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가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전체 과제 중 신청과제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청과제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제도

의 홍보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24년의 경우 11건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과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건만이 선정되어 그 결과 전체 8건의 과제 중 1건만이 신청과제로 수행된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청된 과제가 선정요건에 부합하도록 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2)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1년~, 직접/출연)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3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조 28억 9,9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4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국민취업 지원제도	942,515	942,515	40		60,836	1,003,391	1,002,889	-	492	845,709
▪ I 유형	762,373	762,373	-	19,585	60,836	842,794	842,767	-	27	714,087
▪ II 유형	103,193	103,193	-	△15,109	-	88,084	87,808	-	276	130,657
▪ 일경험 프로그램	75,984	75,984	40	△4,476	-	71,548	71,360	-	188	-
▪ 전산망 강화	965	965	-	-	-	965	965	-	-	965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결합된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I 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5~34세 청년은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고, 취업경험의 여부·정도에 따라 세부유형이 요건심사형, 비경험선발형, 청년특례선발형으로 나뉨. I 유형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함.

II 유형은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³⁹⁾,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⁴⁰⁾을 제공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요건 비교]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39)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장,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40) 취업활동비용은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②훈련참여지원수당, ③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됨. ①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5~25만원이 지급되고, ②훈련참여지원수당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씩 월 최대 284,000원이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되며, ③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수급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차원에서 월 1회 2만원을 최대 3회에 한하여 지급됨.

구직촉진수당	선 발 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II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특정계층		15~69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청년층		15~34세	소득요건 없음	재산요건 없음	무관
	중장년층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유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I 유형 참여자 및 II 유형 중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 한편, I 유형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종 수당의 비교]

	부양가족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대 상	I 유형 사업 참여자	I·II유형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II유형 중 특정계층참여자	I 유형 및 II유형(조건부수급자만 해당)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지 급 요 건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다음의 ①소득요건과 ②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소득요건: 신청 당시의 가구 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II유형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 사업자 등록 + 사업영위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매출 발생 등 (노무제공자)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다음의 ①조기취업요건 및 ②취업·창업의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조기취업요건 (I 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구직촉진수당 4회차 지정일까지 취업·창업한 자 (II유형 조건부수급자)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3개월 이내 취업·창업한 자 ②근로조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단,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자에게도 지급) (창업)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특고·프리랜서 등)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지 급 수 준	최대 6개월간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년 근속 시 100만원 지급	(I 유형)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 (II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원을 1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여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4년 동안 I 유형의 비경활 선발형과 II 유형의 특정계층의 취업률이 다른 유형의 취업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II 유형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취업률이 4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유형		참여자수 ¹⁾		종료자수 ²⁾	취업자수 ³⁾	취업률 ⁴⁾	6개월 고용 유지율 ⁵⁾	1년 고용 유지율
			목표	실제					
2021	I 유형	요건심사형	230,000	144,037	69,940	46,735	66.8	63.7	47.6
		선발형(비경활)	70,000	61,762	25,538	10,194	39.9	59.9	43.8
		선발형(청년특례)	150,000	131,681	45,959	38,122	82.9	64.8	50.0
		소계	450,000	337,480	141,437	95,051	67.2	63.8	48.2
	II 유형	특정계층	40,000	32,922	12,882	7,710	59.9	63.5	48.0
		청년층	130,000	37,885	16,208	13,269	81.9	65.1	50.4
		중장년층	20,000	9,956	3,669	2,508	68.4	55.9	41.8
		소계	190,000	80,763	32,759	23,487	71.7	63.6	48.8
	합계		640,000	418,243	174,196	118,538	68.0	63.7	48.3
2022	I 유형	요건심사형	250,000	86,233	110,854	61,961	55.9	65.8	51.2
		선발형(비경활)	80,000	30,242	45,945	12,915	28.1	61.2	46.1
		선발형(청년특례)	170,000	100,495	114,163	68,740	60.2	67.0	53.7
		소계	500,000	216,970	270,962	143,616	53.0	66.0	52.0
	II 유형	특정계층	10,000	12,983	23,576	9,494	40.3	63.2	48.5
		청년층	80,000	37,801	34,108	25,169	73.8	67.9	55.4
		중장년층	10,000	14,046	10,911	6,656	61.0	61.2	45.7
		소계	100,000	64,830	68,595	41,319	60.2	65.8	52.3
	합계		600,000	281,800	339,557	184,935	54.5	65.9	52.0
2023	I 유형	요건심사형	200,000	83,595	80,263	48,215	60.1	67.0	52.6
		선발형(비경활)	60,000	28,697	28,407	9,613	33.8	63.6	49.4
		선발형(청년특례)	140,000	114,454	97,031	62,276	64.2	69.7	55.9
		소계	400,000	226,746	205,701	120,104	58.4	68.1	54.1
	II 유형	특정계층	20,000	15,029	13,756	5,363	39.0	62.8	46.9

		청년층	40,000	39,709	36,269	25,893	71.4	69.9	56.9
		중장년층	10,000	14,565	13,849	8,254	59.6	62.5	47.7
		소계	70,000	69,303	63,874	39,510	61.9	67.4	53.7
		합계	470,000	296,049	269,575	159,614	59.2	68.0	54.0
2024	I유형	요건심사형	88,100	88,431	83,526	51,056	61.1	67.1	53.3
		선발형(비경활)	20,000	26,690	26,850	9,323	34.7	64.0	49.7
		선발형(청년특례)	140,000	134,543	118,227	76,494	64.7	70.5	58.8
		소계	248,100	249,664	228,603	136,873	59.9	68.8	56.3
	II유형	특정계층	9,870	12,535	14,233	5,409	38.0	63.8	50.8
		청년층	40,000	40,259	39,319	26,977	68.6	70.6	58.8
		중장년층	9,810	12,767	13,804	7,980	57.8	62.8	49.7
		소계	59,680	65,561	67,356	40,366	59.9	68.2	56.1
	합계		307,780	315,225	295,959	177,239	59.9	68.6	56.2

- * 주 1) 참여자 수: 해당 연도에 사업에 참여한 사람 수
2) 종료자 수: 해당 연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람 수
3) 취업자 수: 해당 연도 종료자 중 취업한 사람 수
4) 취업률: 해당 연도 종료자 중 취업자의 비율
5) 고용유지율: 해당 연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 자료: 고용노동부

먼저 I 유형의 비경활 선발형과 II유형의 특정계층의 취업률은 2024년 기준 각각 34.7%와 38%로 I 유형 요건심사형이 61.1%, I 유형 청년특례 선발형이 64.7%, II유형 청년층이 68.6%, II유형 중장년층이 57.8%인 것에 비해 20%p 이상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I 유형 비경활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달리 취업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고, II유형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즉, 두 세부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구직경험과 취업경험이 부족하여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취업의욕 고취·취업기술 향상을 위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집단·취업특강 미참여자는 취업설명회, 과제부여 등 고용센터 내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는 입장이나,⁴¹⁾ 근본적으로 비경활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 세부 대상자 유형별로 차별화·맞춤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다층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II유형 중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2021~2024년 동안 각각 81.9% → 73.8% → 71.4% → 68.6%, 68.4% → 61.0% → 59.6% → 57.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이는 2021~2024년 동안 실업률이 3.7%에서 2.8%로 하락 추세인 것과 대비되는 현상임.

[2021~2024년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전 체	3.7	2.9	2.7	2.8
15 ~ 19세	8.7	6.5	5.5	7.2
20 ~ 29세	7.7	6.4	5.9	5.8
30 ~ 39세	3.3	2.7	2.6	2.7
40 ~ 49세	2.4	2.0	1.9	1.9
50 ~ 59세	2.6	1.7	1.7	1.8
60세 이상	3.8	2.8	2.6	2.9

*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

41)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4) 고용노동부 참고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취업률 하락은 단순히 대외 경제 여건에 기인한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I 유형 비경활 선발형과 II유형 특정계층 참여자의 취업 진입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II유형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들이 취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6-31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2006년~, 직접 및 보조·출연)은 자치단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 시스템 등 지역고용인프라를 구축·운영하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4회계년도 예산현액 1,062억 9,200만원 중 1,057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4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06,292	106,292	-	-	106,292	105,796	-	496	107,864
▪ 자치단체지원	94,767	94,767	-	-	94,767	94,321	-	446	98,034
▪ 지역고용 인프라확충	90	90	-	-	90	90	-	0	90
▪ 산업인자위지원	11,040	11,040	-	-	11,040	11,040	-	0	9,345
▪ 운영비	395	395	-	-	395	346	-	49	395

* 자료: 고용노동부

〈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의 지특회계 편성 부적정 〉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동법은 지특회계의 목적을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음.⁴²⁾

한편,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으로 구성된바⁴³⁾, 동 사업은 이 중 지역지원계정 사업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지원계정의 세출항목에 대해 16가지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일자리창출, 지역인적자원 개발, 지역 과학기술 진흥,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지역 문화·관광자원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사업으로 지출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음.

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4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제2항)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주민지원사업, 토지등의 매수,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그러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 중 ‘산업인자위(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지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2024년 ‘산업인자위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총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106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음.

[2024년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ISC명	대표기관	산업범위 (소분류 개수)*	2024년 지원액
1	정보기술·사업관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10개	628
2	경영·회계·사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650
3	상담·보육·평생교육	전국고용서비스협회	5개	378
4	디자인·문화콘텐츠	한국디자인진흥원	5개	542
5	관광·레저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6개	477
6	음식서비스·식품가공	한국외식업중앙회	7개	415
7	건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0개	585
8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3개	577
9	기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2개	515
10	뿌리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7개	426
11	재료	한국철강협회	7개	385
12	화학·바이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7개	740
13	섬유제조·패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7개	569
14	전기·에너지·자원	한국전기공사협회	21개	685
15	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2개	646
16	방송·통신기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7개	582
17	환경	한국상하수도협회	9개	552
18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5개	614
19	산업안전보건	대한산업안전협회	3개	363
20	정보보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개	350
합 계				10,679

주 :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분류(24개) → 중분류(81개) → 소분류(273개) → 세분류(1,100개)’ 순으로 구성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⁴⁴⁾에 따라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고용노동부 고시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보완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로 정의하고 있음.⁴⁵⁾

또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업으로 ①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및 실태 분석, ②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제도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및 보완, ③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업 활용·확산 컨설팅, ④일학습

4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5)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라 한다)"란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보완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병행제 프로그램 등 기업·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⑤그 밖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을 법률상 지출항목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특정된 지특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분석 및 산업·직종별 인력양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역 내 주력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어 지특회계로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 인력 양성은 동 위원회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로서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고 보임.

「국가재정법」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⁴⁶⁾하고 있는바, 특별회계는 공익적 목적에

4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따라 특정한 세출에 일정 수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주세법」에 따른 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지특회계의 세입원으로 명시⁴⁷⁾하고 있고, 동 재원의 한계 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출하도록 법률로써 명시하고 있는 것임.

이를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산업별인적자원 개발위원회를 위한 지원 사업에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특회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다른 사업에의 지원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4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 12. (생략)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 11. (생략)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국가재정법」 상의 특별회계 취지와 지역간 불균형 문
제를 개선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지특회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지특회계의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을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겠음.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비 중 사업비 비중 제고 필요 〉

산업인자위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연금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인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규칙」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비 지원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개별 위원회별 예산 배정과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칙과 지침에 따르면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각 위원회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급됨.

한편, 2024년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원금의 항목별로 편성한 계획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비 21.0%, 운영경비 20.9%, 일반관리비 1.8%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예산 중 상당부분이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위한 직접 사업비의 비중은 높지 않음.

[2024년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별 · 항목별 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ISC명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소계	성과운영비
1	정보기술·사업관리	380 (61.2)	119 (19.2)	104 (16.7)	18 (2.9)	621 (100.0)	7
2	경영·회계·사무	308 (48.0)	172 (26.8)	151 (23.5)	11 (1.7)	642 (100.0)	8
3	상담·보육·평생교육	210 (56.3)	66 (17.7)	92 (24.7)	5 (1.3)	373 (100.0)	5
4	디자인·문화콘텐츠	358 (66.1)	59 (10.9)	122 (22.5)	3 (0.6)	542 (100.0)	0
5	관광·레저	273 (58.0)	118 (25.1)	71 (15.1)	9 (1.9)	471 (100.0)	6
6	음식서비스·식품가공	236 (58.3)	100 (24.7)	68 (16.8)	1 (0.2)	405 (100.0)	10
7	건설	274 (47.4)	145 (25.1)	157 (27.2)	2 (0.3)	578 (100.0)	7
8	조선·해양	288 (49.9)	134 (23.2)	147 (25.5)	8 (1.4)	577 (100.0)	0
9	기계	311 (60.4)	118 (22.9)	86 (16.7)	0 (0.0)	515 (100.0)	0
10	뿌리	248 (58.2)	78 (18.3)	86 (20.2)	14 (3.3)	426 (100.0)	0
11	재료	269 (69.9)	54 (14.0)	58 (15.1)	4 (1.0)	385 (100.0)	0
12	화학·바이오	404 (55.3)	173 (23.7)	143 (19.6)	11 (1.5)	731 (100.0)	9
13	섬유제조·패션	390 (69.4)	66 (11.7)	86 (15.3)	20 (3.6)	562 (100.0)	7
14	전기·에너지·자원	474 (70.0)	94 (13.9)	102 (15.1)	7 (1.0)	677 (100.0)	8
15	전자	433 (68.6)	91 (14.4)	95 (15.1)	12 (1.9)	631 (100.0)	15
16	방송·통신기술	340 (59.1)	137 (23.8)	86 (15.0)	12 (2.1)	575 (100.0)	7
17	환경	366 (67.2)	80 (14.7)	89 (16.3)	10 (1.8)	545 (100.0)	7
18	자동차	184 (30.2)	163 (26.7)	235 (38.5)	28 (4.6)	610 (100.0)	4
19	산업안전보건	177 (29.0)	67 (11.0)	108 (17.7)	11 (1.8)	363 (59.5)	0
20	정보보호	38 (10.9)	172 (49.1)	133 (38.0)	7 (2.0)	350 (100.0)	0
합 계		5,961 (56.3)	2,206 (20.9)	2,219 (21.0)	193 (1.8)	10,579 (100.0)	100

주 : 괄호 안은 성과운영비를 제외한 운영비 대비 항목별 내역의 비율로, 성과운영비는 성과평가 후 사후에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비중 계산에서 제외함.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또한 이를 개별 위원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당수의 위원회가 사업비의 비중을 약 15% 정도로 지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 등 위원회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사업비를 전체 운영비 지원금의 15%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운영비 지원금 운용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별 위원회별 배정되는 예산이 크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동 사업의 근거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⁴⁸⁾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체·단체 등의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를 감안하면 동 사업 예산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업비 지원에 중심을 두고 편성·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산업별 인적자원개

4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발위원회(ISC) 운영비 지원금 운용 지침」 상의 사업비 편성 비율 관련 기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한다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 운영비 지원금 운용 지침」의 사업비 편성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상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고용보험기금 총괄

〈 고용보험기금 결산 개요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임.

기금의 주요 수입은 피보험자(사업주 및 근로자 등)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 적립금의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기금운용수익 등이고, 주요 지출은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등) 및 기금운용비임.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수입액과 지출액은 22조 679억 1,800만원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수납에 따른 자체수입이 18조 2,618억 5,500만원, 여유자금회수가 2조 8,463억 4,700만원, 정부내부수입이 4,000억원이고, 지출의 경우 사업비가 17조 1,678억 900만원, 여유자금운용이 3조 4,222억 8,300만원으로 나타남.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자체수입	18,821,572	사업비	17,167,809
부담금	18,261,855		
융자원금회수	108,818	정부내부지출	1,361,979
재산수입	263,286		
기타	187,612	기금운영비	115,847
여유자금회수	2,846,347		
정부내부수입	400,000	여유자금운용	3,422,283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보험기금은 계정을 적용대상에 따라 임금근로자 계정과 자영업자 계정으로 구분하고, 보험사업의 특성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누어 총 4개의 계정으로 운영됨.⁴⁹⁾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①실업급여	②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③실업급여	④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 계정에 포함됨

49)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실업크레딧지원 등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임.

[계정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이직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	내일배움카드(고보)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실업크레딧지원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업자 노후소득 보장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한 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교육 훈련 제도

< 실업급여 계정의 법정 적립배율 달성 방안 마련 및 일반회계전입금 확대 필요 >

실업급여 계정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계정의 경우 수입은 14조 9,105억원이고 지출은 15조 1,541억원으로, 재정수지는 2,437억원 적자이며 연말적립금은 3조 5,083억원임. 자영업자 계정의 경우 수입은 313억원이고 지출은 193억원으로, 재정수지는 121억원 흑자이며 연말적립금은 858억원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결산]

(단위: 억 원)

임금근로자 계정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A)	63,415	70,340	71,476	76,407	84,756	136,287	148,141	135,675	143,879	149,105
지출 (B)	43,978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1
재정 수지 (A-B)	8,436	11,783	8,618	△2,750	△13,802	△2,573	4,003	△5,650	573	△2,437
연말 적립금	37,600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자영업자 계정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A)	73	91	79	85	115	165	215	222	259	313
지출 (B)	38	38	37	42	44	77	104	129	173	193
재정 수지 (A-B)	35	52	42	43	71	87	110	93	86	121
연말 적립금	155	207	249	292	363	449	559	651	737	858

* 자료: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계정의 재정수지는 최근 10년간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

하고 있지만, 임금근로자 계정의 재정수지는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가며 기록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재정이 불안정한 임금근로자 계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함.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해 실업급여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의 여유자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의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하나,⁵⁰⁾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1.4배로 양호한 편이지만,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 적립배율은 0.2배로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이 2020년 0.4배에서 2024년 1.4배로 증가한 것과 달리, 실업급여 계정은 2017년 0.9배에서 2020년 0.3배로 꾸준히 하락하다 2024년에는 0.2배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한 적이 없음.

50) 「고용보험법」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최근 10년간 고용보험기금의 계정별(임금근로자) 적립배율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 (A)	43,978	58,557	62,858	79,157	98,558	138,860	144,138	141,325	143,307	151,541
	연말 적립금 (B)	37,600	49,371	57,958	55,201	41,374	38,666	42,665	36,953	37,525	35,083
	적립배율 (B/A)	0.7	0.8	0.9	0.7	0.4	0.3	0.3	0.3	0.3	0.2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계정	지출액 (C)	26,220	30,064	31,700	36,566	40,894	65,706	66,325	39,182	27,101	34,711
	연말 적립금 (D)	44,281	46,198	44,264	38,886	31,726	27,800	13,163	25,658	39,794	47,835
	적립배율 (D/C)	1.7	1.5	1.4	1.1	0.8	0.4	0.2	0.7	1.5	1.4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기금은 급증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고 함)에서 총 10조 3,049억원을 차입하였는데,⁵¹⁾ 장래 상환의무가 있는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는 경우 2024회계연도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적립금은 △4조 2,125억이고, 적립배율도 음수(△0.3)인 것으로 나타남.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한 연말적립금과 적립배율은 2021~2024년

51) 「고용보험법」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동안 매 회계연도마다 적자와 음수를 기록하고 있음.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실업급여 계정(임금근로자) 재정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결산	공자기금 차입분 제외
수입(A)	148,141	108,401	135,675	131,207	143,879	143,879	149,105	149,105
지출(B)	144,138	144,138	141,325	141,325	143,307	143,307	151,541	151,541
재정수지 C=(A-B)	4,003	△35,737	△5,650	△10,118	573	573	△2,437	△2,437
연말적립금 (D)	42,665	△30,075	36,953	△40,255	37,525	△39,683	35,083	△42,125
적립배율 (D/B)	0.3	△0.2	0.3	△0.3	0.3	△0.3	0.2	△0.3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 악화 및 법정 적립배율 미준수 문제는 재정지출 규모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⁵²⁾ 실업급

52)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로 증가하는 추세임.

[고용보험료율 변화]

연도	1998 이전	1999.1.1. 이후	2003. 1.1. 이후	2006.1.1. 이후	2011.4.1. 이후	2013.7.1. 이후	2019.10.1. 이후	2022.7.1. 이후
보험료율	0.3	0.5	0.45	0.45	0.55	0.65	0.8	0.9

* 실업급여 고용주, 피고용자 각각의 부담분

** 2022. 7.부터 예술인·노무제공자 1.4% → 1.6%(예술인·노무제공자 0.8%, 사업주 0.8%)

[고용보험 가입자수]

(단위: 천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입자수	13,864	14,112	14,550	14,899	15,200	15,365

* 가입자 수는 매년 12월말 기준임

** 자료: 고용노동부

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 중 지출액의 비중이 큰 구직급여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임.

구직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2024년 11조 7,404억 8,600만원으로 2019년 8조 917억 3,600만원 대비 3조 6,487억 5,000만원(45.1%) 증가하였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은 2024년 2조 5,737억 8,000만원으로 2019년 1조 3,500억 3,100만원 대비 1조 2,237억 4,900만원(90.6%) 증가하였음.

[2019~2024년 실업급여 계정의 주요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직급여	8,091,736	11,855,625	12,062,474	10,910,504	11,307,122	11,740,486
조기재취업수당	290,062	321,316	442,832	468,018	468,354	544,284
모성보호육아지원	1,350,031	1,561,358	1,685,010	2,077,151	2,261,495	2,573,780
실업크레딧지원	21,260	27,433	32,013	55,918	31,967	32,157
자영업자실업급여	3,884	7,227	9,948	12,399	16,784	18,833

* 자료: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경우 2020년부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2019년 1,443,605명에서 2024년 1,697,417명으로 253,812명(17.6%)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4년이 2019년에 비해 45.1% 증가하였음.

[2019~2024년 구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실업급여 지급 현황	
	수급자 수	지급액
2019	1,443,605	8,091,736
2020	1,702,725	11,855,625
2021	1,774,614	12,062,474
2022	1,631,270	10,910,504
2023	1,671,623	11,307,122
2024	1,697,417	11,740,486

* 자료: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2019년 1조 588억 5,300만원에서 2024년 2조 524억 8,700만원으로 9,936억 3,400만원 (93.8%) 증가하였음.

[2019~2024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인원	73,279	70,933	70,301	73,072	73,207	77,718
	금액	268,479	285,736	289,430	304,849	326,290	353,689
유산사산휴가 급여	인원	816	1,010	1,109	1,238	1,329	1,650
	금액	1,207	1,433	1,431	1,595	1,647	2,323
육아휴직 급여	인원	105,165	112,038	110,555	131,084	126,008	132,535
	금액	1,058,853	1,212,143	1,297,525	1,657,231	1,796,995	2,052,48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원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26,627
	금액	21,095	54,995	89,669	107,330	130,324	157,97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인원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18,241
	금액	397	7,050	6,904	6,146	6,240	7,311

*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이 2024년에 132,535명으로 2019년 105,165명 대비 27,370명(26%) 증가한 것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2024년이 2019년 대비 93.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⁵³⁾를 신설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⁵⁴⁾ 2024년 9월 국회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상한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3)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하한액은 70만원)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상한액은 다음 표와 같음.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급여의 상한액]

(단위: 백만원)

구분	부(父) 1개월	부(父) 2개월	부(父) 3개월
모(母) 1개월	<부> 200 <모> 200	<부> 200+150 <모> 200	<부> 200+150+150 <모> 200
모(母) 2개월	<부> 200 <모> 200+150	<부> 200+250 <모> 200+250	<부> 200+250+150 <모> 200+250
모(母) 3개월	<부> 200 <모> 200+150+150	<부> 200+250 <모> 200+250+150	<부> 200+250+300 <모> 200+250+300

54)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단위: 천명, 가임여자 1명당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1	230.0	238.0
합계 출산율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 자료: 국가통계포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육아지원 3법’을 의결하였음.⁵⁵⁾ 이러한 법 개정 에 따라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계획액은 전년 대비 1조 5,256억 2,400만원 증액된(61.1%) 4조 224억 5,400만원이 편성된바, 실업급여 계정의 사업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법」 제5조⁵⁶⁾에 따라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⁵⁷⁾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전입금이 편성되어 있음. 전입금은 처음 편성된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일반회계전입금은 4,000억원임.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 및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주1)}	육아휴직 급여 등 ^{주2)}		
2001	8,821	0.07	-	0.02	0.05	150	2142.9
2002	9,130	257	2.8	226	31	150	58.4
2003	11,375	441	3.9	335	106	-	-

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3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29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30호)

56) 「고용보험법」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57)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위: 억원, %)

연도	실업급여 계정지출 (A)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B)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비율 (B/A)	모성보호육아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C)	전입금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주1)}	육아휴직 급여 등 ^{주2)}		
2004	15,844	624	3.9	416	208	20	3.2
2005	19,054	743	3.9	460	282	20	2.7
2006	22,842	1,254	5.5	909	345	100	8.0
2007	27,132	1,934	7.1	1,324	610	100	5.2
2008	32,290	2,651	8.2	1,666	984	100	3.8
2009	45,294	3,182	7.0	1,785	1,397	100	3.1
2010	41,585	3,707	8.9	1,926	1,781	100	2.7
2011	41,876	5,092	12.2	2,329	2,763	100	2.0
2012	43,860	6,004	13.7	2,419	3,585	150	2.5
2013	46,057	6,569	14.3	2,351	4,218	250	3.8
2014	49,639	7,401	14.9	2,368	5,032	350	4.7
2015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	98,558	13,500	15.1	2,700	10,800	1,400	10.4
2020	138,860	15,614	11.2	2,942	12,672	1,800	11.5
2021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	143,307	22,687	15.8	3,342	19,344	3,000	13.2
2024	151,541	25,738	17.0	3,742	21,996	4,000	15.5

* 주1)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주2)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2024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액 대비 전입금의 비율은 15.5%에 불과하고, 2025년 일반회계전입금은 1,500억원 증액(37.5%)된 5,500억원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 대비 전입금 비율이 13.7%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법정 의무지출인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지출을 위한 전입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대량 실업 발생과 고용상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고용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적립배율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계획액의 증가 등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대해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계정이 법정 적립배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통합고용정책국 · 청년고용정책관

(1)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일반회계, 1032-303)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2015년~, 출연·보조)은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학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에 대해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31억 4,700만원으로, 이 중 829억 3,500만원(99.7%)이 집행되었고, 2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83,147	83,147	-	-	83,147	82,935	-	212	109,730
▪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82,801	82,801	-	-	82,801	82,773	-	28	109,334
▪ 2030자문단운영	67	67	-	-	67	27	-	40	67
▪ 운영비	279	279	-	-	279	135	-	144	279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청(년)취(업) 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청년수기공모전’을 개최하였음. 동 행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 컨설턴트를 직접 뽑고 시상하는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로 결정·직무능력 향상·취업 등을 하게 된 성공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참여자 수기공모전’으로 구성됨.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12인, 청년 수기공모전 24건)에 대해서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는 청년심사단의 현장투표를 통해, 청년 수기공모전은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하였고,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과 한국고용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되었음.

[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청년수기공모전 시상 규모]

구분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청취일타강사	장관상 (100만원 상품권)	장관상 (80만원 상품권)	장관상 (50만원 상품권)	한국고용정보원장상 (20만원 상품권)
참여자 수기공모전	장관상 (50만원 상품권)	장관상 (30만원 상품권)	장관상 (20만원 상품권)	한국고용정보원장상 (10만원 상품권)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용역비(210-14) 예산으로 수행되었으며,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은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행사지원 2,882만원,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심사·수기공모전 운영 및 수기집 제작 용역 3,000만원,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운영 대행 3,575만원으로 총 9,457만원임.

[2024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집행 내역]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계약기간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행사 지원	28,820,000원	A	'24.8.22~9.1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심사·수기공모전 운영 및 수기집 제작 용역	30,000,000원	B	'24.8.27~12.13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운영 대행	35,750,000원	A	'24.12.2~12.6
합계	94,570,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에 현금성 시상품 비용 포함 부적절 >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운영 대행 사업 용역 대금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장 대관료 1,273만원(45.1%) 및 수상자 경품 비용 1,036만원(35.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총괄 기획비, 영상편집 및 부스 제작 등 행사 진행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비용이 513만원(18.2%)으로 편성되어

있음.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수기공모전 시상식 운영 대행 산출 내역]

항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총괄 기획비		1	500,000	500,000	
영상 편집		1	800,000	800,000	
행사장 대관료		1	12,727,273	12,727,273	
수상자 경품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수상자	1	5,543,890	5,543,890	기타소득 세(20%) 원천징수 반영
	대플 청년수기공모전	1	2,405,810	2,405,810	
	대플 청년수기공모전	1	2,405,810	2,405,810	
	지도 컨설턴트				
부스 및 제작		1	3,278,000	3,278,000	
운영	운영 슈퍼바이저	1	250,000	250,000	
	진행 및 예비비	1	300,000	300,000	
계				28,210,973	
일반관리비 5%				1,410,539	
기업이윤(계+일반관리비의 10%)				2,962,132	
합계(조정 전)				32,583,454	
합계(조정 후)				32,500,000	
최종 청구 금액(부가세 포함)				35,750,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해당 사업예산으로 쓰인 일반용역비(210-14)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⁸⁾에 따르면, 기관이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인바, 수상자 경품인 상품권 구입 비용 1,036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58)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4.1.)

첫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상금 및 격려금 등은 포상금(310-03)⁵⁹⁾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 행사 수상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시장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상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수상자 경품 명목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된바, 비목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청년수기공모전 시상금(상품권) 규모]

구분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청취일타강사	100만원	80만원	50만원	20만원
참여자 수기공모전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단순히 상품권을 구입·전달하는 역할을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킨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수 있음.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행사운영경비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가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산출되게 되는바,⁶⁰⁾ 상품권 비용이 행사운영경비에 포함됨

59)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경연대회’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상금(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033-303),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2032 - 300)은 포상금(310-03) 항목으로 지급

310-03 포상금

1.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 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2. 예산절약 상여금(「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금 성격의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시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제도개선이나 성과 등을 치하하고 촉진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61) 동 행사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에도 행사 경비 합계액에 일반관리비(5%) 및 기업이윤(경비 합계액 및 일반관리비의 10%)이 반영되어 최종 청구금액이 산출되었음.

〈 사실상 동일한 행사운영 용역에 대한 분할 수의계약 부적절 〉

고용노동부는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을 개최 하면서, 경진대회 행사지원과 수상자 시상식 운영 대행 용역에 대해 A업체와 각각 2,882만원('24.8.22.)과 3,575만원('24.12.2.)으로 수의계약 하였음.

[2024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집행 내역]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계약기간	계약 유형	수의계약사유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행사 지원	28,820,000원	A	'24.8.22~9.13	수의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 (여성기업)
청취일타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수상자 시상식 운영 대행	35,750,000원	A	'24.12.2~12.6	수의	
합계	64,570,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여성이 대표인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함⁶²⁾.

62)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 가격 1억원까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그런데 각각 체결한 행사지원 용역과 시상식 대행 용역은 청취일타 강사 경진대회 및 참여자 수기공모전 개최와 이에 따른 시상식 진행으로 사실상 동일한 행사에 대한 용역으로 보여지는바, 하나의 행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것은 계약단가를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여성기업과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⁶³⁾.

그런데 동 사업은 한 건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했을 것이나, 각각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건당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2인 이상 견적 비교 없이 단일 견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국가계약법」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호가목5)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업체 간의 견적 비교를 통해 제시된 가격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영세업체에도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임에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 단가를 낮춰 견적 비교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고, 다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게 된다는 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분할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2년~, 직접)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576억 8,000만원으로, 이 중 5,376억 900만원(81.8%)이 집행되었고, 1,200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 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657,680	0	0	0	657,680	537,609	0	120,071	777,18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7,780	607,780	0	△1,500	0	606,280	487,003	0	119,277	777,181
▪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49,900	49,900	0	1,500	0	51,400	50,606	0	794	-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및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자 포함 부적절 >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고용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요 청년 채용장려금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 일괄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 활성화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2022~2024년) 시행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취업애로청년⁶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등⁶⁵⁾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⁶⁶⁾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업종	지원대상청년	지원기간	사업주지원(청년1인당)	목표인원	예산
모든 업종	취업애로청년	2년	1,200만원 = 720만원(60만원/월, 1년) + 2년차 480만원	12.5만명	6,078억원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062억 8,000만원으로, 그 중 4,870억 300만원(80.32%)이 집행되었음.

64)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

65)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66) (지원 수준)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024회계연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 액 (A+B)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607,780	607,780	-	△1,500	-	606,280	487,003	-	119,277	777,181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으로,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2022년도 사업이 시행된 이래 확대되어 왔음.

구분	취업애로청년 요건	
'22	기본 요건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타 부처 정책 및 타법에 의해 보호되는 청년	▲ 자립 지원 필요 청년(복지부)
+		
'23	타 부처 정책 및 타법에 의해 보호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통일부)
+		
'24	기본 요건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 청년 일경험 지원, 일학습병행 사업
	경기상황 변동에 따른 보호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재구성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취업지원제도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및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 청년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되었는데,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 대상 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등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함.⁶⁷⁾

그런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다양한 일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고,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재직자, 고교·대학 재학생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현장훈련 등을 제공한 뒤 국가가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참여 대상에는 재학생, 졸업생, 재직자, 구직자 등이 모두 포함되게 되는데, 이러한 청년을 모두 취업애로청년에 포함하여 기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첫째, 취업애로청년이란 상대적으로 취업에 불리한 입장의 청년으로 적극적 우대가 필요한 청년들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우대해주는 것은 미참여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청년 일경험 사업 및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한 상당 수 청년의 경우 임금보조가 없더라도 기업 본래의 필요에 의해 고용을 창출

67)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 청년 대다수가 취업애로청년 기본요건(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해당하고, 실제로 2024년 참여자 중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일 경험 또는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 청년은 9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동 사업에 따른 추가 고용 창출 효과 없이 불필요한 비용손실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셋째, 취업 지원 사업들의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이 주요 지표가 될 것인바, 동일한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과 청년 일경험 사업 및 일학습 병행 사업 참여가 함께 지원될 경우, 각각의 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성과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동 사업에 청년 일경험 사업 및 일학습 병행 사업 참여 청년을 취업애로청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 미참여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기업지원금에 의한 추가고용창출 효과가 없어 불필요한 지출이 될 우려가 있으며, 개별 사업의 성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취업애로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기업지원금 지급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보임.

(3)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051-304)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해외취업지원’ 사업(1998년~, 출연·보조)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과정(K-Move 스쿨), 해외 취업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5억 4,000만원으로, 이 중 555억 3,500만원(96.5%)이 집행되었고 20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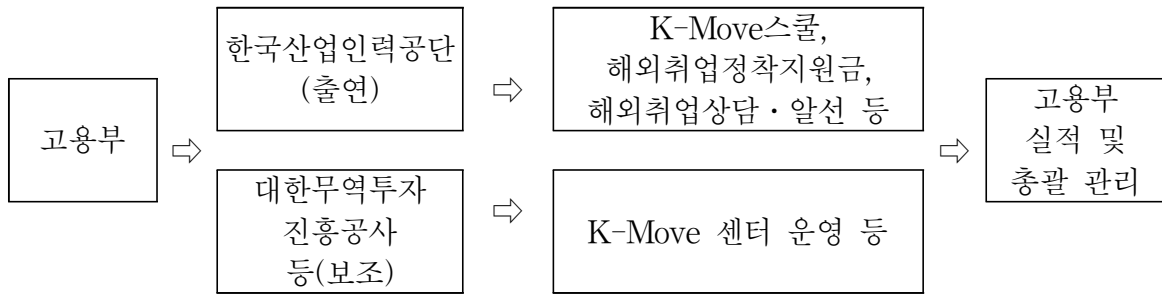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해외취업지원	57,540	57,540	-	-	57,540	55,535	-	2,005	47,116
▪ K-Move 스쿨	32,405	32,405	-	-	32,405	32,405	-	-	21,420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6,727	16,727	-	-	16,727	14,727	-	2,000	16,868
▪ 해외통합정보망	911	911	-	-	911	911	-	-	911
▪ 국내해외취업지원	1,484	1,484	-	-	1,484	1,484	-	-	994
▪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지원	4,650	4,650	-	-	4,650	4,650	-	-	4,560
▪ 운영비	1,363	1,363	-	-	1,363	1,358	-	5	1,363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K-Move스쿨 운영과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추진체계와 각 내역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해외취업지원 사업추진체계]



[2024년 해외취업지원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K-Move 스쿨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 후 해외취업 연계 - (지원액) 1인당 최대 (트랙Ⅰ) 800만원 (트랙Ⅱ) 1,350만원 (대학연합) 1,200만원 - (지원규모) 3,100명										
해외통합 정보망	○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해외통합 정보망(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www.worldjob.or.kr)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자녀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③월드잡플러스 내 사전 구직 등록한 자, ④ 연봉 1,700만원 이상 취업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규모) 3,800명 (단위: 만원) <table><tr><th></th><th>1차</th><th>2차</th><th>3차</th><th>계</th></tr><tr><td>지원액</td><td>250</td><td>100</td><td>150</td><td>500</td></tr></table>		1차	2차	3차	계	지원액	250	100	150	500
	1차	2차	3차	계							
지원액	250	100	150	500							
국내해외취업지원 (서울, 부산 운영)	○ 온·오프라인 상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국가별 현지 트렌드 및 유망 직종 등을 반영한 해외취업 컨설팅 실시										
해외취업촉진 인프라 지원	○ 코트라 무역관 등에 설치된 해외 K-Move센터를 활용하고 취업유망지역의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해외취업 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K-Move스쿨 : 출연금 교부 후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K-Move스쿨’ 사업은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4억 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K-Move스쿨 사업 결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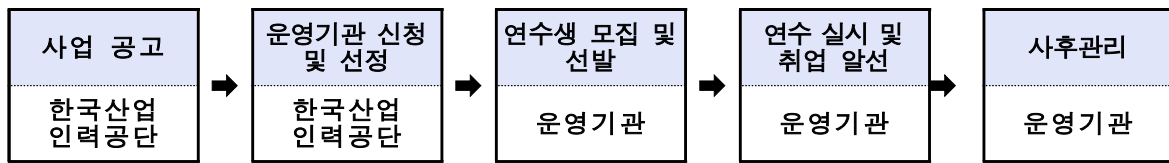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K-Move스쿨	32,405	32,405	-	-	32,405	32,405	-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사업으로 공단이 연수과정별(일자리 맞춤형, 자격취득 또는 훈련과정 이수형)로 운영기관을 선정·약정을 체결하면, 운영기관이 연수생을 모집·선발하여 연수 실시 및 취업을 알선하고, 연수종료 후 18개월 시점까지 연수생 연락처 관리, 고용유지 파악, 정보제공 등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이루어짐.

[K-Move스쿨 사업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유형은 연수시간 및 1인당 지원금액에 따라 트랙I, 트랙II, 대학연합 유형으로 나뉘는데, 연수기관과 약정 체결 후 정부지원금(인당 정부지원금×최종 확정된 연수 참여인원)의 70%를 선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의 30%는 지원유형에 따른 개별실적(수료율, 자격취득률 또는 훈련과정 이수율) 및 취업률에 따라 차등 지급함.

[K-Move스쿨 유형]

구분	개요	지원금액
트랙I	직무역량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300시간 이상 연수과정	1인당 최대 800만원
트랙II	고임금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8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수과정	1인당 최대 1,350만원
대학연합과정	기존 연수사업 참여대학과 신규 대학이 사업단을 구성하여 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며 운영하는 연수과정	1인당 최대 1,2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 K-Move스쿨 사업 출연금 세부 결산내역을 보면, 실행행률이 71.0%로 저조하였고, 집행잔액 중 80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K-Move스쿨의 트랙1 및 트랙2 과정은 개별실적 및 취업률에 따라 후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연수 종료일로부터 8개월까지 과정별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부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최초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집행률 (B/A)
				계	이월	불용	
○ K-Move스쿨	32,405	32,405	23,023	9,382	8,060	1,322	71.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 정부지원금의 30%는 개별실적 및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급됨에 따라 최장 10개월 과정⁶⁸⁾의 연수 종료 후 8개월까지⁶⁹⁾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단년도로 편성된 동 사업예산의 이월은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아도 매년 출연금 교부 후 일정비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던바,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단년도 예산 편성은 출연금의 연례적 이월을 발생시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보임.

68) 개시일로부터 10개월 내에 연수과정 종료

69) 과정종료일로부터 8개월 내 취업증빙서류 제출

[최근 5년간 K-Move스쿨 이월예산(출연금 교부 후 이월)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예산 집행액	이월예산 반납액
2020	23,648	17,118	6,390	140	2,806	3,584
2021	25,290	17,686	7,165	439	3,060	4,105
2022	27,830	19,070	8,737	23	4,582	4,155
2023	20,075	14,538	5,405	132	3,182	2,223
2024	32,405	23,023	8,060	1,322	819 (집행 중)	집행 중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매년 출연금 이월예산에서 상당 비율의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출연금 교부 후 예산 이월 및 이월액 반납은 실제 사업 집행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K-Move스쿨 출연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액 교부함으로써 매년 높은 집행률을 보여왔으나, 매년 발생한 공단의 출연금 이월예산 반납액을 반영하면 실효집행률은 80% 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에는 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출연금 교부 후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⁷⁰⁾

70)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부터 출연금 중 후지원금(30%)은 익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4)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일반회계, 1331-30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1995년~, 직접)은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운영, 고용평등상담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17억 3,300만원이 집행(96.8%)되었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고용평등환경 개선지원	1,790	1,790	-	-	-	1,733	-	57	1,876
▪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운영	100	100	-	-	-	100	-	-	100
▪ 고용평등상담지원	551	551	-	-	-	495	-	56	762
▪ 고용평등업무지원	12	12	-	-	-	11	-	1	12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1,127	1,127	-	-	-	1,127	-	-	1,002

* 자료: 고용노동부

변경하였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 미이행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등 >

내역사업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2006년~)은 기업의 여성고용 수준에 대한 평가, 개선지도 및 고용평등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여성고용의 양적, 질적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2,7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A)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지원	1,127	1,127	-	-	1,127	1,127	-

* 자료: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⁷¹⁾에 근거한 것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되었으며, 동종산업 유사규모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하였거나 여성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조직 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발굴·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지도하는 제도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여성고용률 제고와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 촉진(2006년부터 시행)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법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9까지)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운영 절차	- 적용대상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산업별 여성근로자(관리자)의 업종 평균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는 차년도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차차년도에 그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으며, 3년 연속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미이행 사업주)에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

* 자료: 고용노동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4년의 경우, 적용대상 사업장은 총 2,652개사로 전년 대비 54개사 (2.08%)가 증가하였으며, 여성고용률은 38.5%, 여성관리자율은 22.5%로서 각각 전년 대비 0.2%p, 0.4%p 증가하였음.

[연도별 적용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개사)

구분	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민간 기업
2024	2,652	331	160	2,161
2023	2,598	351	158	2,089
2022	2,547	353	156	2,038
2021	2,553	352	154	2,047
2020	2,486	340	151	1,995

* 자료: 고용노동부

[연도별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근로자	여성근로자 (평균 비율)	전체 관리자	여성관리자 (평균 비율)
2024	4,206,044	1,608,145(38.5)	346,529	79,988(22.5)
2023	4,097,891	1,546,245(38.3)	346,032	77,332(22.1)
2022	3,954,949	1,489,403(38.1)	339,591	75,119(21.8)
2021	3,860,781	1,439,906(37.8)	330,788	70,736(21.3)
2020	3,822,240	1,419,514(37.7)	324,895	67,673(20.9)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제도가 첫 시행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율 추이]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제도는 3회 연속하여 여성근로자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촉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⁷²⁾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우선, 현재 제도 지표는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 등 2개의 정량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⁷³⁾에 따라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는 “각급

72) 명단공표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명단은 관보(계속)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6개월간)에 게시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하 생략)

부서 단위 책임자로서 조직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대표하고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원을 감독·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⁷⁴⁾으로서,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평가체계 운영지침’을 통해 관리자 개념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하고, 관리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데이터 클리닝 및 부문별 심사 과정에서 보완을 거쳐 수정되며, 관련 사항을 기업 등에 공지하고 관련 교육, 컨설팅도 수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리자”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인사 체계 및 정책이 다르고, 각 사업주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어 각 사업장마다 관리자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4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달한 사업장 중 근로자수 대비 관리자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수를 0으로 제출한 사업장이 3개사, 관리자 비율이 1% 미만인 사업장이 5개사⁷⁵⁾로 관리자수가 지나치게 적게 제출되거나, 유사한 규모의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관리자수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사례 등이 발생⁷⁶⁾하고 있음.

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75) 2024년 동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적인 관리자 비율은 8.2%임.

76) 가령, A사와 B사는 같은 업종[중공업1(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으로 전체 근로자수도 700명 내외로 유사하나, A사의 전체 관리자수는 1명, B사의 전체 관리자수는 82명으로 제시되어 있음.

[2024년 미이행 사업장의 근로자수 대비 관리자수 비율]

계	0%	1% 미만	1%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32개사	3개사	5개사	6개사	11개사	7개사

* 주: 상기 비율은 전체 관리자수를 전체 근로자수로 나눈 값이며, 0%는 전체 관리자수를 0명으로 제출한 사업장임

*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연도별 미이행 사업장의 지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미이행 사업장은 2024년 32개사 중 29개사, 2023년 43개사 중 41개사, 2022년 33개사 중 30개사로, 대부분의 미이행 사업장은 여성관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미이행 사업장 지표 내역]

구분	미이행 사업장 수	비율 미달		
		여성근로자 비율	여성관리자 비율	모두 미달
2024	32개사	23개사	29개사	20개사
2023	43개사	30개사	41개사	28개사
2022	33개사	21개사	30개사	18개사

* 자료: 고용노동부

즉, 관리자수는 현재 제도 운영상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제출함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미이행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대부분 여성관리자수 미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는 “관리자” 개념에 대한 교육·안내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2개사 중 15개사는 최근 5년 내에 명단 공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명단 공표는 3년 연속으로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계속하여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⁷⁷⁾에서 연례적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현황]

구분	계	최근 5년 기준 선정 이력 없는 경우	최근 5년 기준 선정 이력 있는 경우	
			3회 이상 선정	2회 선정
2024	32개사	17개사	7개사	8개사

* 주: 최근 5년은 2020년부터 2024년을 말함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미이행 사업장 또는 이행노력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초컨설팅,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등 사업장별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4년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상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컨설팅에 대상 사업장이 불참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⁷⁸⁾.

77) 3년간 계속하여 제도 지표에 미달한 사업장 중에서도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채용 또는 여성 관리자의 임용 등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에서 제외될 수 있음.

78) 고용노동부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기초컨설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불참한 경우 차년도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시 감점을 적용하거나, 명단공표를 확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지원 사업]

구분	지원 사항	사업 대상	수행실적
기초 컨설팅	여성고용기준 미달 유형에 따른 문제점 진단 및 CEO 인터뷰 의무 실시	(자율)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7개사
		(의무)이행보완계획서 평가결과 ‘이행 노력미흡’ 등급 사업장	56개사 (30개사 불참)
		(의무)명단공표 후보 사업장 중 신규 사업장	1개사 (2개사 불참)
통합지원 서비스	내부 현황을 바탕으로 맞 춤형 여성고용환경 개선 과제 선정 및 도입을 지원	(자율)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사업장	26개사
		(의무)2년 연속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선정 사업장	5개사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고용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표가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후 점검, 맞춤형 컨설팅,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관리 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일반회계, 1339-3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2019년~, 직접)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의 모성보호 및 생계보전을 위하여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⁷⁹⁾를 근거로 함.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176억 4,700만원이 집행(99.8%)되었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결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7,676	17,676	-	-	17,676	17,647	-	29	21,789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비롯하여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근로하거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여성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며,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7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적용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적용제외	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비임금근로자		②초단시간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출산급여 대상] : 출산급여 대상

- (지원수준)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 (신청시기)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지급 기준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사업자 확인서 ·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자 확인서	· 동거친족 여부 확인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 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 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적기 지급 노력 필요〉

2024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산 176억 7,600만원은 총 11,784명에 대한 출산급여(150만원) 지급을 위한 것으로, 그 인원에 대한 추계의 근거로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4년간 평균 지원인원의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연도별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는 추계수치보다 실제 신청수요가 초과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바, 차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에 신청된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해왔음.

[연도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예결산내역]

회계연도	추계인원(A) (예산액)	지원인원(B) (결산액)	당해연도 미지급 추산인원(미지급금액)	(추계인원 산출방식) 예산안 근거
2019	25,000명 (375억원)	4,353명 (65억 2,400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5만명으로 보되, 하반기 시행을 고려하여 6개월분 산정
2020	31,405명 (472억 800만원)	12,342명 (188억 5,100만원)	-	·2018년도 기초연구(「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산정
2021	16,566명 (248억 4,900만원)	11,565명 (177억 6,800만원)	-	·소득유형별 대상인원 추계
2022	8,484명 (127억 2,600만원)	8,508명 (127억 2,500만원)	1,943명 (29억 5,200만원)	·소득유형별 대상인원 추계
2023	10,368명 (155억 5,200만원)	10,492명 (155억 4,000만원)	2,100명 (31억 5,000만원)	·최근 3년간 월평균 지원인원이 약 55명씩 감소하는 추이 반영 ·출산율 저하 및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로 이관 등
2024	11,784명 (176억 7,600만원)	12,622명 (176억 4,700만원)	4,235명 (62억원)	·최근 4년간 평균 지원인원의 추이를 반영 (4년간 연 평균 11,640명 지원)
2025	본예산: 11,784명 (217억 8,900만원) 추경예산: 20,299명 (345억 6,100만원)	9,012명 (179억 8,100만원) (5월 기준)		·최근 4년간 평균 지원인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2024년 예산부족분(41억원) 포함

* 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지급 결정 시스템과 급여 지급 시스템이 달라 차년도 지급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우며, 집행액 등 고려하여 추산한 값임

*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2024년의 경우, 당해연도 출산급여 미지급 추산인원은 4,235명으로 전년(2,100명) 대비 약 2배 수준임.

이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지원되는 출산급여가 지원자의 유일한 소득 대체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보임.

한편, 동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계인원 산출 방식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그 수치가 일관적으로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2019~2022년에는 경제활동인구, 인구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등 관련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대략적으로 추계하거나 관련 연구를 참고하는 방식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지원인원보다 과다계상됨에 따라 예산이 크게 불용된 바(2019~2021년) 있고,

2023년부터는 과거 사업의 지원추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신청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이후 매년 당해연도 미지급 추산인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대상자 규모를 보다 면밀히 추산하고 그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액을 편성하는 한편, 사업예산 부족 시 당해연도 이·

전용 등 재원 충당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출산급여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총괄)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

2024년도 결산 기준 기금운영규모는 2조 3,043억 7,800만원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부담금 수납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1조 137억원, 여유자금회수가 6,707억원, 정부내부수입이 6,199억원이고, 사업비가 8,517억원, 여유자금운용이 7,686억원으로 나타남.

[2024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자체수입	1,013,735	사업비	851,734
부담금	895,365		
용자원금회수	6,203	정부내부지출	600,000
재산수입	92,032		
기타	20,135	기금운영비	84,063
여유자금회수	670,718	여유자금운용	768,581
정부내부수입	619,925		
계	2,304,378	계	2,304,378

* 자료: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기금사업 발굴 노력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의 주요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⁸⁰⁾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관리지원,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금의 2024년 주요 사업비 8,517억 3,400만원은 전체 기금 규모(2조 3,043억 7,800만원) 대비 37.0%로, 유사한 규모로 운용되는 사업성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등과 비교할 때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근로복지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성 기금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낮음.

[2024년도 유사 규모의 사업성 기금별 주요사업비 비중(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 규모(A)	주요 사업비(B)	주요사업비 비중(B/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304,378	851,734	37.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99,892	2,093,687	95.2%
농지관리기금		2,868,163	1,973,230	68.8%
국민체육진흥기금		3,220,756	1,511,593	46.9%
기후대응기금		2,305,830	2,160,062	93.7%
대외경제협력기금		2,019,275	1,886,484	93.4%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금	460,381	198,183	43.0%
	임금채권보장기금	1,006,157	818,023	81.3%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로써,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부과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 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 재원은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예탁 등)이나 여유자금 운용 등에 활용됨에 따라 기금 규모 대비 주요사업비의 비중은 약 36~3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	자체수입	807,319	827,571	879,339	1,013,735
	정부내부수입	361,351	561,731	619,402	619,925
	여유자금 회수	549,173	536,394	597,244	670,718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지출	주요사업비	610,819(35.6%)	693,356(36.0%)	784,648(37.4%)	851,734(37.0%)
	정부내부지출	350,000(20.4%)	600,315(31.2%)	600,000(28.6%)	600,000(26.0%)
	여유자금운용 등	757,024(44.1%)	632,024(32.8%)	711,337(33.9%)	852,644(37.0%)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 주: 괄호 내 비율은 구성비임

*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의 경우 부담금 수납액 및 재산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기금의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344억원(15.3%) 증가한 1조 137억원이었으나, 주요사업비는 671억원(8.5%) 증가한 8,517억원으로 기금규모 대비 주요사업비 비중은 전년 대비 0.4%p 낮아졌음.

반면, 2024년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940억원(8.3%) 증가한 1조 2,29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증가한 여유자금 규모는 총 3,19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임.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유자금 규모 (연말 기준)	910,105	967,341	1,099,564	1,105,144	1,135,584	1,229,552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여유자금 규모 증가와 관련하여, 동 기금에서 장래 지출 수요나 특이사항으로 인해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할 명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⁸¹⁾.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사업 중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확대 원인은 부과대상자 확대, 의무고용률 상향 등 제도적 요인⁸²⁾으로서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그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출 부문에서도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 사업 등 제도적 지원에 따른 지출을 수입과 균형있게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81) 2024년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도 동 기금의 중기가능자산 규모가 적정 최대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상태로 진단하고 있음.

82) 장애인 고용의무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최초 시행된 1991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0%였으나, 2025년 현재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임.

(7) 장애인고용관리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2-30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1997년~, 출연)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한 작업지도원 배치, 근로지원인 서비스, 편의시설 설치 지원, 고충상담 제공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지원 사업으로,

2024회계년도 예산현액 2,480억 6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년도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 획 현액	집 행 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248,006	248,006	-	-	248,006	248,006 [247,646]	-	-	252,114
▪ 고용관리비용	425	425	-	-	425	425 [424]	-	-	-
▪ 근로 지원 인 지원	242,458	242,458	-	-	242,458	242,458 [242,105]	-	-	246,991
▪ 장애인 고용 시 설 장비 지원	3,450	3,450	-	-	3,450	3,450 [3,450]	-	-	3,450
▪ 장애인 근로 자 지원 센터	1,673	1,673	-	-	1,673	1,673 [1,667]	-	-	1,673

* 자료: 고용노동부

< 근로지원인 양성 및 서비스 질 제고 노력 필요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424억 5,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 획 현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근로 지원 인 지 원	242,458	242,458	-	-	242,458	242,458 [242,105]	-	-	246,991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사업의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로서, 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지원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⁸³⁾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함.

83) 근로지원인이 장애인 근로자 다수를 동시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180원(2인), 130원(3인) 등으로 인하됨.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 원 대 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 원 유 형	<table><tr><th>지원유형</th><th>지원기능</th><th>주요 장애 유형</th></tr><tr><td>[제1유형] 업무보조형</td><td>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td><td>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뇌병변등)</td></tr><tr><td>[제2유형] 의사소통형</td><td>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td><td>청각장애(청각, 언어 등)</td></tr><tr><td>[제3유형] 적응지도형</td><td>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td><td>발달,정신장애(지적, 자폐성, 정신)</td></tr></table>			지원유형	지원기능	주요 장애 유형	[제1유형] 업무보조형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뇌병변등)	[제2유형] 의사소통형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청각, 언어 등)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발달,정신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지원유형	지원기능	주요 장애 유형												
	[제1유형] 업무보조형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	신체적 장애(지체, 시각, 뇌병변등)												
	[제2유형] 의사소통형	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청각장애(청각, 언어 등)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발달,정신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지 원 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지 원 기간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본인 부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인하 (2명-180원, 3명-130원, 4명-100원, 5명-80원)														
사 업 절 차	④ 근로지원인 파견 ⑤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사업수행기관 ③ 서비스대상자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방문 평가후 결정 장애인근로자 ① 서비스 신청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로 두고 있으며,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도입된 이후 국가정책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연도별 근로지원인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계획액		55,477	94,809	155,185	204,713	227,025	242,458	246,991
실집행액		50,498	90,598	148,996	204,040	224,348	242,105	106,357
근로지원인	목표인원(A)	3,000	5,000	8,000	10,000	10,500	11,000	11,000
장애인	신청인원(B)	5,015	8,525	13,159	16,225	17,590	19,176	20,258
근로자	지원인원	4,405	7,794	12,407	15,015	16,400	18,195	17,379
근로지원인 목표인원(A) 대비 신청인원(B)		167.2%	170.5%	164.5%	162.3%	167.5%	174.3%	184.2%

*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인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의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인원은 19,176명으로 근로지원인 목표인원 11,000명 대비 174.3% 수준이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신청인원은 20,258명으로 이미 2024년의 신청건수를 초과하였음.

이와 같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인원의 증가에 따라 1명의 근로지원인이 다수의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동시지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도별 동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동시지원 비율은 20%였으나, 2024년의 경우 동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장애인근로자는 48.4%, 2025년 6월 기준 52%로 매년 동시지원 형태의 근로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3 동시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⁸⁴⁾.

84) 동시지원은 2019년 2명, 2021년 3명, 2025년 5명 등으로 확대되어 왔음.

[연도별 근로지원인 동시지원 현황]

구분	동시지원 이용 장애인			
	1:1	1:2	1:3	합계
2021년	9,870(79.55)	2,537(20.45)		12,407(100.00)
2022년	11,735(78.16)	2,976(19.82)	304(2.02)	15,015(100.00)
2023년	10,897(66.45)	4,646(28.33)	857(5.23)	16,400(100.00)
2024년	9,386(51.59)	6,705(36.85)	2,104(11.56)	18,195(100.00)
2025.6월	8,361(48.11)	6,178(35.55)	2,840(16.34)	17,379(100.00)

* 주: 2021년은 시스템 상 단독 또는 동시지원으로만 구분 가능

* 자료: 고용노동부

동시지원은 동일한 작업장 내에 여러 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인력·비용으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규 장애인 근로자의 서비스 접근이 제고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겠으나,

개별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업무의 성격, 사업체의 근무 환경 등에 따른 다양한 현장 상황이 존재하여 동시지원의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우며, 근로지원인 입장에서든 여러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해야 하는 과정에서의 부담감 및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⁸⁵⁾.

따라서 동시지원 근로지원에 대해서는 그 확대에 앞서, 업무의 성격, 사업체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로지원인 선정 기준을

85)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시지원에 따른 업무의 가중이 개별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동시지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며, 동시지원에 대한 거부로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신규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근로지원인 동시지원의 운영상 어려움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근로지원인 및 유사인적지원제도 근로조건 실태 연구」 59~60p., 심진예·이원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4. 12.)

마련하고, 동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예산 사정을 이유로 불가피한 동시지원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근로지원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1유형(업무보조형) 및 3유형(적응지도형)에는 최저임금을, 2유형(의사소통형)에는 최저임금의 120%를 지원하고 있음⁸⁶⁾.

[지원 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및 지원 수준]

구 분	자격기준	지원수준
1유형 [업무보조형]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최저임금
2유형 [의사소통형]	1)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2) 점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3)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	최저임금 ×120%
3유형 [적응지도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최저임금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서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가산 등의 처우개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

86) 이는 2유형은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등 일정 분야의 자격증과 업무경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음⁸⁷⁾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근로지원인의 이직률이 높고 숙련된 인력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4년 근로지원인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11시간, 평균 급여는 월 159만원 수준이며,

[2024년 근로지원인 근무시간 및 급여]

(단위 : 명, 시간, 원)

구 분	인원	월 근로시간*	월 평균 급여**
1유형	8,220	112.27	1,574,681
2유형	433	132.07	2,192,170
3유형	4,920	108.17	1,569,389
계	13,573	111.34	1,593,556

* 주: 월 근로시간은 주휴, 휴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 시간이며, 월 평균급여는 급여, 주휴 등을 포함한 실제 지급 급여임

*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현재 활동 중인 근로지원인 11,737명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지원인의 비중이 크고 3년 이상 활동한 인력은 약 4,000명으로서 전체 근로지원인의 34.3%에 그쳐 장기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근로지원인 근속기간 현황(2025년 6월 기준)]

(단위: 명, %)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합 계
근로 지원인	3,059 (26.1)	2,713 (23.1)	1,936 (16.5)	1,914 (16.3)	1,170 (9.9)	945 (8.1)	11,737명

* 자료: 고용노동부

87) 근로지원인의 업무시간은 근로지원 대상인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연계됨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이 제약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결근, 휴업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양성을 위해 매년 4,000~7,000여 명의 근로지원인 교육수료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수료 누적 인원은 38,000여 명이나, 2024년 실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한 인력은 약 12,000명 수준임.

[연도별 근로지원인 양성 및 등록 현황]

(단위: 명)

연 도	양성교육 목표인원	양성교육 수료인원		근로지원인 활동 인원
		일반교육	발달교육	
2021년	4,000	5,424	1,393	6,899
2022년	4,000	7,379	5,476	10,635
2023년	4,400	7,745	3,184	11,650
2024년	3,600	4,586	3,450	11,978

* 주: 발달교육은 제3유형(적응지도형)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일반교육 수료를 전제로 함에 따라 중복되는 수치임.

* 자료: 고용노동부

결론적으로,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유지 및 경제적 자립, 장애인 고용정책 등을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장애인 근로자 인력지원 제도로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가 제도 운영의 핵심사항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는 동시지원 적용 관련 지원기준 마련,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인력 관리,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장애인고용연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459-32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장애인고용연구’ 사업(1991년~, 출연)은 정책연구, 통계조사, 실용연구, 교육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8억 4,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장애인고용연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장애인고용 연구	3,844	3,844	-	-	3,844	3,844 [3,799]	-	-	3,518

*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관리 강화 필요〉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장애인 고용 현장에 필요한 장애인 고용 전문가 양성,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 장애인 고용 사업주 교육 등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교육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총사업비는 291억원임.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장애인인식개선강사, 근로지원인, 직업능력평가사 등) 양성 및 장애인·장애인단체 종사자·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 교육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일원, 옛 자립원 부지
총사업비	285억원
사업 규모	연수인원: 연간 13,810명 부지면적: 22,309㎡(연면적 6,967㎡)
주요 기능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대상 교육 및 고용 지원, 조사·연구·홍보 활동 등
사업 기간	2021년~2027년

*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 연수원 건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 전문성을 제도화하고, 사업주와 기관 대상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고용정책의 교육·연구·훈련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사업부지 분할 및 전주시청 도시계획 변경 단계 지연⁸⁸⁾으로 인한 설계공모 절차 순연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88) 해당 부지 내 특수학교 신설, 교통시설(도로) 신설 및 확대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면적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었음.

있어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업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타당성 연구 및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2022년 4월 입지 선정, 2022년 8월 전라북도 및 전주시 등 관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 용역 수행 및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게 되면서 2024년 1월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고시되었고, 이후 사업부지 면적 조정이 5차례나 수행되면서 2025년 7월에야 설계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사업 완료 시점이 2년 이상 순연되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임.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

2021.12. 타당성 연구 및 부지 선정 용역 추진
2022.04. 부지 공모 및 입지 선정(전북 전주시, 舊자립원부지)
2022.08. 업무협약 체결(전라북도 ↔ 공단 ↔ 전주시)
2023.01~06. : 용역(도시계획시설 시설 변경 결정) 입찰 준비 및 사전 절차
* '22년도 하반기 용역을 추진 계획했으나 추경이 실행되지 않아 '23년도 추진
2023.09~12.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전주시, 관련기관 등)
2024.01.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사회복지시설폐지,용도변경)
2024.01. 공공건축기획 심의(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사업규모 등 기본계획 심의)
2024.07. 사업부지 면적 조정(5차례 변경, 현재 22,090㎡)
2025.02. 舊자립원 부지 공식 청산 절차 완료(전라북도)
2025.03. 총사업비 1차 조정
* (사업기간) '21~'25→'21~'27 (부지면적)16,530㎡→22,309㎡
(연면적) 11,750㎡→6,967㎡, (총사업비)291억원→282억원
2025.06. 총사업비 2차 조정 [총사업비282억원→285억원(설계비 증 3억원)]
2025.07. 설계 용역 발주(조달청 의뢰, 설계비 및 보상비 1,268백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도 부진한 상황인데, 2021년 연수원 설립 타당성 연구 및 실시설계비 10억 2,300만원, 2023년 실시설계 및 시설부대비 4억 6,600만원 등 총 14억 8,900만원의 출연금이 편성·교부되었으나, 관련 연구용역비만 일부 집행됨에 따라 2025년 현재 총 12억 8,700만원이 이월된 상황임.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 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1,023	1,023	-	1,023	87	1,023	87	936	-	8.5
2022	-	-	936	936	88	-	-	848	-	9.4
2023	466	466	848	1,314	-	466	-	1,314	-	-
2024	-	-	1,314	1,314	27	-	-	1,287	-	2.1
2025	-	-	1,287	1,287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상기와 같은 사업 지연에 따라 동 사업의 완공시기는 당초 2025년에서 현재 2년 지연된 2027년으로 변경되었는데, 2025년 7월 설계 공모가 조달청에 의뢰된바,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을 위한 소요기간(1~2달)과 설계 수행기간(1년) 등을 고려할 때 2026년 말에야 설계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2027년 완공 역시 일정상 매우 촉박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동 사업이 추가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라. 직업능력정책국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1998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12억 7,000만원으로, 이 중 5,778억 3,800만원(97.7%)이 집행되었고, 134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 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 배움 카 드(일반)	584,906	584,906	6,364	-	-	591,270	577,838	-	13,432	580,161
▪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3,188	-	2,500	-	475,688	475,499	-	189	478,116
▪ 돌봄서비스 훈련	35,000	35,000	-	△8,000	-	27,000	15,707	-	11,293	33,100
▪ 일반고특화 훈련	49,230	49,230	-	-	-	49,230	48,818	-	412	45,557
▪ 평생크레딧	25,000	25,000	1,617	5,500	-	32,117	31,576	-	541	-

▪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	-	4,447	-	-	4,447	3,959	-	488	-
▪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1,000	1,000	300	-	-	1,300	1,300	-	-	900
▪ 운영비 등	1,488	1,488	-	-	-	1,488	979	-	509	2,488

* 자료: 고용노동부

〈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취업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4,756억 8,800만원 중 4,754억 9,900만원(99.9%)이 집행되었고, 1억 8,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4,906	6,364	-	-	591,270	577,838	-	13,432	580,161
▪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473,188	473,188	-	2,500	-	475,688	475,499	-	189	478,116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1년 신설된 이후 꾸준히 목표인원을 상향하고 있는데, 2024년 목표인원은 44,000명으로 2021년 24,015명 대비 19,985명 (83.2%) 증가하였음. 지원인원의 목표달성률과 예산의 집행률도 사업 초기 50% 미만 수준이었으나, 점차 개선되어 2024년에는 지원인원의 목표달성률이 85.5%, 예산 집행률이 10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지원인원			예산		
	목표	실제	목표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	24,015	11,727	48.8	222,462	81,454	36.6
2022	28,521	22,394	78.5	306,822	233,951	76.3
2023	36,580	31,922	87.3	414,260	369,114	89.1
2024	44,000	37,628	85.5	473,188	475,498	100.5

*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동 사업 수료생의 취업률이 감소 추세인 문제가 있음. 취업률과 관련하여 2021~2023년의 훈련 분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⁸⁹⁾, 2021년 상반기부터 훈련이 진행되었던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로봇 분야 모두 2023년 취업률이 2021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하반기에 추가되어 2022년부터 취업률이 집계된 훈련 분야의 경우 3D프린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3년의 취업률이 2022년보다 감소하였음.

89) 취업률은 훈련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훈련생이 3개월간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집계하므로, 2024년 취업률은 2025년 9월 이후에 확정되므로,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음.

[2021~2023년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훈련 분야별 취업률]

(단위: %)

연번	구분	훈련 분야명	2021년	2022년	2023년
1	-	인공지능	60.6	61.3	51.9
2		클라우드	80.4	67.0	55.5
3		사물인터넷	75.8	72.3	67.4
4		메타버스	64.7	63.9	56.7
5		블록체인	73.2	65.2	58.8
6		빅데이터	68.2	64.4	55.6
7		로봇	68.6	76.4	66.6
8	'21.하반기 추가	일반S/W	-	61.5	56.2
9		사이버보안	-	93.8	85.7
10		3D프린팅	-	75.0	87.1
11		반도체	-	54.9	49.2
12	'23.상반기 추가	에코업	-	-	66.7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①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단순 소프트웨어 개발을 비롯한 IT 분야의 인력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인력 수요가 일부 감소하는 추세이고, ② 집계 기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만 취업률 지표에 반영되어 증가한 취업 기간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① 먼저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동 사업 참여자가 주로 취업하게 되는 정보통신업의 취업자 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회복기인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정보통신업에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IT 분야 인력 수요가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음.

[2020~2024년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산업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농업, 임업 및 어업	1,445	1,458	1,526	1,513	1,485
광업	13	12	9	8	8
제조업	4,376	4,368	4,503	4,461	4,45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4	71	80	89	9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53	169	154	147	142
건설업	2,016	2,090	2,123	2,114	2,065
도매 및 소매업	3,503	3,353	3,313	3,276	3,215
운수 및 창고업	1,482	1,586	1,655	1,644	1,701
숙박 및 음식점업	2,144	2,098	2,182	2,296	2,322
정보통신업	847	901	981	1,037	1,109
금융 및 보험업	778	800	774	782	796
부동산업	517	531	552	534	5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4	1,219	1,288	1,357	1,42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47	1,397	1,423	1,431	1,3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12	1,143	1,213	1,238	1,279
교육 서비스업	1,798	1,840	1,902	1,896	1,9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36	2,534	2,714	2,858	2,94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6	467	482	512	5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89	1,135	1,119	1,130	1,13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8	87	80	77	79
국제 및 외국기관	17	15	16	17	15

*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또한 동 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인 20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9%로, 전년 동기(60.7%) 대비 △1.8%p 감소하는 것에 그침. 즉, 취업 소요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구조적으로 길어진 것은 아닌데도 동 사업 취업률은 3D프린팅 분야를 제외한 전 훈련 분야에서 2022년 대비 감소한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취업 소요기간 증가로 인한 취업률 지표에의 미반영으로 전년 대비 동 사업 취업률이 감소하였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단위: 천명, %, %p)

	취업 경험자	임금 근로자 ¹⁾	첫 취업 소요기간별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3개월 미만	3~6개 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2023. 5	3,947	3,865 <97.9>	1,890 (48.9)	457 (11.8)	420 (10.9)	507 (13.1)	267 (6.9)	324 (8.4)	10.4개월
2024. 5	3,765	3,671 <97.5>	1,750 (47.7)	412 (11.2)	406 (11.1)	491 (13.4)	255 (6.9)	357 (9.7)	11.5개월
증감	-182	-195 <-0.4>	-140 (-1.2)	-45 (-0.6)	-14 (0.2)	-16 (0.3)	-13 (0.0)	33 (1.3)	1.1개월

* 주 1) < >는 취업 경험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 ()는 임금근로자 내 첫 취업 소요기간별 구성비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24. 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취업률 하락의 원인을 산업 수요 감소나 취업기간 장기화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취

업률 감소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되는 취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수준의 목표 설정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은 노인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본예산으로 3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80억원이 내역변경으로 전용되어⁹⁰⁾ 270억원의 예산현액 중 157억 7백만원(58.2%)이 집행되었고, 112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 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배움카드(일반)	584,906	584,906	6,364	-	-	591,270	577,838	-	13,432	580,161
▪ 돌봄서비스 훈련	35,000	35,000	-	△8,000	-	27,000	15,707	-	11,293	33,100

90) 동 사업인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 내 평생크레딧 사업으로 55억원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으로 25억원이 내역변경되었음.

동 사업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려는 것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비의 90%를 선 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동일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또한,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이 지급됨.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인력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의 양성훈련 실시
훈련과정	요양보호사(의료기술지원),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지원내용	(훈련비) 훈련비의 90%*를 선 부담하고 훈련 수료 후 동일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선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10%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고용노동부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 요양보호사 94,000명,⁹¹⁾ 아이돌보미 6,500명,⁹²⁾ 총 100,5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훈련 실시 인원은 69,493명에 그쳤음.

91) 고용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훈련 수요조사(2023)」에서 요양보호사 훈련실시인원 추정값 99,647명을 추계한 것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연장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5,000명을 제하여 요양보호사 94,000명을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함.

92)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추계치가 6,513명으로 도출되어 6,500명을 목표로 하였다고 설명함.

훈련생 모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선 부담 후 환급제 도입에 따른 자부담액이 증가하였고, ② 고용노동부에서 훈련기관 선정 및 훈련비 지급 등 훈련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자격관리 등을 담당하는데⁹³⁾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연장하는 등 훈련 요건이 강화되어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실제 훈련 실시 인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집행부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항들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바, 고용노동부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먼저 자부담액 증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훈련 수요조사(2023)」 연구를 바탕으로 훈련 목표 인원을 설정하였는데,⁹⁴⁾ 해당 연구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질수록 요양보호사 훈련과정의 모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⁹⁵⁾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초 목표 인원 설정 시부터 자부담액 확대에 따른 목표 인원 감소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훈련 목표 인원을 설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한 목표 인원을 설정한 것임.⁹⁶⁾

93)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94) 고용노동부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요양보호사 및 아이돌보미 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목표 훈련 인원을 설정하였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훈련 수요조사”(2023) 60-66쪽 참고

95) 위의 책 80쪽 이하.

또한,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교육 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는 2023년 7월 17일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제6호 신설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시간 확대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구용역에서 추계한 훈련수요인 99,000명에서 보건복지부 정책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5,000명을 제외하여 94,000명을 최종적으로 목표 훈련 인원으로 추계하였다는 입장이나, 요양보호사 훈련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⁹⁷⁾ 80시간의 교육 시간 연장(33%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면밀하게 재산정하는 과정이

〈표 3-33〉 자부담률에 따른 한계효과(요양보호사)

자부담률	한계효과	모집률 변화 (자부담률 10%p 증가 시)	자부담률	한계효과	수요율 변화 (자부담률 10%p 증가 시)
17.0%	0.0416	+ 0.4%	5.0%	0.6007	+ 6.0%
18.5%	-0.0533	- 0.5%	10.0%	0.7608	+ 7.6%
20.0%	-0.1497	- 1.5%	20.0%	1.0811	+ 10.8%
30.0%	-0.7874	- 7.9%	30.0%	1.4014	+ 14.0%
40.0%	-1.4252	- 14.3%	40.0%	1.7217	+ 17.2%
50.0%	-2.0630	- 20.6%	50.0%	2.0420	+ 20.4%
60.0%	-2.7007	- 27.0%	60.0%	2.3623	+ 23.6%
70.0%	-3.3385	- 33.4%	70.0%	2.6826	+ 27.8%
80.0%	-3.9762	- 39.8%	80.0%	3.0029	+ 30.0%
90.0%	-4.6140	- 46.1%	90.0%	3.3232	+ 33.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HRD-Net」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임.

96) 한편 고용노동부는 선 부담 후 환급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요양보호사 및 아이돌보미 등 돌봄인력은 과수요 상태이지만, 양성된 인력이 취업으로 곧바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동일 직종으로의 취업률도 매우 낮아 노동시장 참여 의사가 있는 자만이 훈련에 참여하여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사업 구조상 훈련 품질 향상 및 훈련생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선 부담 후 환급제·자부담액의 강화는 의의가 있을 것이나, 고용노동부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로 인한 수요 감소를 충분히 예측하여 합리적인 훈련 목표 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97)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훈련 수요조사(2023)」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산업은 주로 여성 및 중년층이 종사하는 일자리 비중이 높고, 임시·일용직 비중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볼 때 돌봄서비스 훈련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업 계획 미흡에서 비롯된 목표 훈련 인원 과다추계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향후 고용노동부는 훈련 수요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 인원 에 따른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음.

〈 포상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동 사업의 운영비 등의 예산에는 포상금이 2024년에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350만원(7.0%)이 집행되고, 4,55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운영비 중 포상금(310-01) 비목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내일 배움카드(일반)	584,906	584,906	6,364	-	-	591,270	577,838	-	13,432	580,161
▪ 운영비 등	1,488	1,488	-	-	-	1,488	979	-	509	2,488
-포상금	50	50	-	-	-	50	3.5	-	45.5	50

* 자료: 고용노동부

포상금은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함.

[포상금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2.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부 정 행 위	포상금액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용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제2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제3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제4호])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과정마다 50만원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행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7. (생략)	(생략)
※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내일배움카드사업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2023년부터 신설되었는데 아래의 2023~2024년의 부정행위 적발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나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적발되었고, 포상금도 이 경우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부정행위 적발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원)

부정행위	2023년		2024년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액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법 제16조제2항제1호)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법 제16조제2항제2호)	5 (자체조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용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4조제2항제2호)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법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제3호)	-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	-	-	-	-

원 또는 용자받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법 제16조제2항제3호)	12 (자체조사)	-	45 (자체조사 42, 신고 3)	1,500,000 (3건)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	18 (자체조사 16, 신고 2)	1,500,000 (2건)	50 (자체조사 47, 신고 3)	2,000,000 (3건)

*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부정행위는 대부분 자체조사로 적발된 것인데, 2023년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적발된 12건은 모두 자체조사로 적발되었고, 2024년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적발된 50건은 자체조사로 적발된 사례가 47건이고,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였음.

포상금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적발된 부정행위는 대다수가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신고건수가 저조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홍보 등 제도개선을 통해 포상금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일반회계, 1134-307)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1982년~, 출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자격검정사업, 외국인고용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838억 1,400만원으로, 이 중 1,755억 8,200만원(95.5%)이 집행되었고, 8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 집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산업인력 공단운영지원	184,482	184,482	-	△668	-	183,814	175,582	-	8,232	182,333
▪ 국제교류	504	504	-	-	-	504	504 [504]	-	-	504
▪ 자격검정사업	132,989	132,989	-	△668	-	132,321	124,089 [133,190]	-	8,232	137,506
▪ 외국인고용관리	25,641	25,641	-	-	-	25,641	25,641 [33,733]	-	-	32,492
▪ HRD확산	1,843	1,843	-	-	-	1,843	1,843 [1,830]	-	-	1,843
▪ 경상운영비	136,945	136,945	-	-	-	136,945	136,945 [136,215]	-	-	139,971
▪ 자체수입	△13,440	△13,440	-	-	-	△13,440	△13,440 [△2,980]	-	-	△12,983

* 자료: 고용노동부

〈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오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자격검정사업’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323억 2,100만원으로, 이 중 1,240억 8,900만원(93.8%)이 집행되었고 8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자격검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한국산업인력 공단운영지원	184,482	184,482	-	△668	-	183,814	175,582	-	8,232	182,333
▪ 자격검정사업	132,989	132,989	-	△668	-	132,321	124,089 [133,190]	-	8,232	137,506

* 자료: 고용노동부

자격검정사업은 크게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이고, 대표적인 예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등이 있음.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 개별 부처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며 면허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으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과정평가형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함.

자격시험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필기와 실기로 구분되는데, 필기 시험의 출제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문제출제 위원에 출제를 의뢰하여 문제를 확보하고, 검수·검토위원의 합숙 검수·검토를 거쳐 문제를 확정함. 공인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의 경우 모의시험위원을 추가로 두기도 함.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과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건수를 살펴보면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은 격년에 한 번 정도로,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은 매년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37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건수]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술 자 격	계	-	-	1	1	1	2	-	2	-	-
	기술사	-	-	-	-	-	-	-	-	-	-
	기능장	-	-	-	-	-	-	-	-	-	-
	기사	-	-	1	1	1	1	-	2	-	-
	산업기사	-	-	-	-	-	1	-	-	-	-
	기능사	-	-	-	-	-	-	-	-	-	-
전문 자 격	계	10	8	11	11	31	29	37	29	26	23
	가맹거래사	-	-	-	-	-	-	-	-	-	1
	감정평가사	-	-	-	1	1	2	1	2	2	2
	검수사	-	-	-	1	-	1	-	1	-	-
	검량사	-	-	-	-	-	1	-	-	-	-
	감정사	-	-	-	-	-	-	-	-	-	-

경매사	-	-	-	-	1	1	1	-	-	-
경비지도사	2	-	3	-	1	1	3	3	-	-
경영지도사	-	-	-	-	-	-	2	-	-	-
기술지도사	-	-	-	-	-	-	-	-	-	-
공인노무사	-	-	-	-	-	-	2	2	-	1
공인중개사	-	2	1	2	2	3	4	3	4	1
관광통역 안내사	1	-	1	-	2	3	-	1	1	3
관세사	1	-	-	-	5	-	-	-	-	1
국내여행안내사	-	-	-	-	-	1	1	-	-	-
호텔경영사	-	-	-	-	-	-	-	-	-	-
호텔관리사	-	-	-	-	-	-	-	-	-	-
호텔서비스사	-	-	-	-	-	-	-	-	-	-
농산물품질관리사	-	-	-	-	1	-	-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	-	-	-	-	-	-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	-	-	-	3	2	3	1	-	1
물류관리사	1	-	-	-	1	1	-	1	3	1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	-	-	-	2	1	-	-	-
변리사	1	-	1	-	2	1	6	1	2	1
사회복지사1급	-	-	-	1	2	-	4	-	-	1
산업안전지도사	-	-	1	1	-	2	-	1	3	2
산업보건지도사	-	-	-	-	-	3	-	-	-	-
세무사	-	-	-	-	-	2	2	1	1	2
소방시설관리사	-	1	2	-	1	-	-	-	-	-
소방안전교육사	-	-	-	1	2	-	-	1	-	-
손해평가사	-	-	-	1	1	1	2	3	4	2
수산물품질관리사	-	-	-	-	2	-	-	-	1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	-	-	-	1	1	5	-	-
주택관리사보	1	2	-	-	-	-	2	-	-	-
청소년상담사	2	1	1	2	2	-	-	1	3	1
청소년지도사	-	-	-	1	-	-	-	-	2	1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2	1	-	2	-	2	1	-	-
행정사	-	-	-	-	-	1	-	1	-	2

*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의 출제 오류가 매년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험위원 및 검수·검토위원의 수당이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저조해짐에 따라 출제 품질이 저하되는 점을 들고 있음.

국가자격검정시험에서의 출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자격 시험 제도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응시자의 권익이 침해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문가의 시험출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험위원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국가자격검정시험의 출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의 확대 추진 지양 필요 >

내역사업인 ‘외국인고용관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따른 17개국 송출국가에서⁹⁸⁾ EPS 센터를 운영하고,⁹⁹⁾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과 기능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¹⁰⁰⁾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 재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수지차보전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한 자체 수입에 고용노동부가 출연한 256억 4,100만원을 재원으로 120,054명의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확보하고, 16개국 771,32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였으며, 138,624명을 대상으로 기능수준을 평가하였고, 78,025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지원하였음.

해당 내역사업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사업에서 매년 송출국가의 주한 대사와 노무관, 노무사무소 대표 등을 초청하여 고용허가제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문화 및 산업 시찰을 제공하는 EPS 컨퍼런스 행사를 실시

98)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99) 다만 타지키스탄은 2023년 12월 29일에 개최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되었고, 준비절차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2024년 예산에는 16개국의 EPS 센터 예산만 편성되었음

100)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하여 송출국가와의 견고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5년간 EPS 컨퍼런스 개최 현황]

연도	기간	개최도시	주요행사	소요예산(원)	비 고
2020	6. 17 - 18 (1박2일)	통영 (스탠포드 호텔)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시찰 ◦ 통영 유적 및 자연 환경 탐방	21,327,500	
2021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개최)				
2022	8. 29 - 30 (1박2일)	창원 (그랜드머큐어호텔)	◦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관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시찰	38,140,260	
2023	8. 9 - 11 (2박3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 2030부산EXPO 설명회 및 예정지(북항) 시찰 ◦ 뮤지엄원 및 부산시티투어	186,965,380	고 용 노 동부 공 동개최
2024	8. 10 - 13 (3박4일)	서울 (킨텍스, 잠실 롯데호텔)	◦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 ◦ EPS센터 주재원 간담회 ◦ 한국문화체험	755,507,570	

EPS 컨퍼런스는 2022년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서 송출국가의 주한 대사관 관계자나 노무관 위주로 고용허가제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외 산업과 지역문화 시찰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국가와의 교류 행사로 비교적 소박하게 진행되었음.

그러나 2023년부터 전년 대비 약 5배로 예산 규모가 커지고 행사 기간도 늘어났으며 고용노동부와 공동개최로 진행되고 장관 주재의

행사가 다수 포함되면서¹⁰¹⁾ 정부나 공공기관의 참석자도 크게 늘는 등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음. 특히 2024년에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EPS 컨퍼런스 전날 약 1,00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 외국인근로자한마당을 대규모로 실시하였고,¹⁰²⁾ 당일에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와¹⁰³⁾ EPS센터 주재원 간담회가¹⁰⁴⁾ 포함되는 등 컨퍼런스를 확대 실시하였음.

단순히 송출국가와의 교류 차원에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 송출국가 대사관 관계자와 노무관들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을 시찰한 2022년까지의 EPS 컨퍼런스의 경우 예산안에 별도 편성 없이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나 예산편성의 내용 측면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①“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한다는 목적과 일정으로¹⁰⁵⁾ 전년도 대비 5배의 예산을 투입하여 엑스포 개최 예정도시인 부산에서 실시한 2023년 EPS 컨퍼런스는 “외국인력을 투명

101) 개최식,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시상, 대사 등 VIP 오찬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재함

102) 참고1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참조

103) 참고2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 참조

104) 참고3 EPS센터 주재원 간담회 참조

105) 부산엑스포 홍보 동영상 상영, 북항 재개발 홍보관 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산 엑스포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식량문제 등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16개 송출국의 부산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으며, 공단과 부산광역시도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와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외국인고용관리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맞지 않고, ②고용허가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7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1,0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한마당 등 대규모 행사를 새로 추진하면서 3박 4일에 걸쳐 기존의 컨퍼런스를 확대하여 실시한 2024년 EPS 컨퍼런스의 경우 외국인출입국지원과 독립된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며, ③외국인고용관리사업이 자체 수입이 발생하기는 하나 결국 국가 예산으로 세부사업의 수지차를 보전하기 위한 출연금이 편성·집행된다는 점에서,¹⁰⁶⁾

EPS 컨퍼런스가 다른 목적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추진되거나 예년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확대될 경우에는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행사 추진의 필요성이나 적정한 행사규모, 구체적인 계획 등에 관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원칙으로 정부의 예산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바,¹⁰⁷⁾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

106) 2024년도에는 2890억 2,200만원을 세부사업비로 집행하였고, 1223억 4,000만원의 자체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족분 1,666억 8,2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충당한 것임.

107)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은 향후 EPS 컨퍼런스를 예년에 비하여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거나 사업 본래의 목적·내용과 다르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 등을 산출하여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사업과 별도로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등 예산의 내용과 과정이 공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1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 킨텍스 제2전시장(6홀)

행사	시 간	세 부 일 정	비 고
부대 행사	11:00~17:15	■ 식전행사(버스킹) ■ 체험부스 - 카페테리아(음료, 커피, 간식 등) - 한국 전통의상 포토존, 인생4컷 등 운영 ■ 상담코너 - 체류·귀국지원, 전용보험, 재무 등 상담 진행 - 대사관 상담 부스 ■ 안전코너 - 의료지원팀 부스, 안전교육 부스(소방서) - 안전 VR체험부스(안전보건공단) ■ 고용허가제 사진 전시전	○ 이사장님,대사(2명) VIP라운지 ↳ 부스투어 (12:30~12:50) * 근로자는 식사 후 자리착석(~12:50) - 킨텍스 내 푸드코트 에서 근로자 점심식사 (쿠폰제공)
화합 한마 당	13:00-13:25(25')	■ 행사참여자 착석 및 국가별 기수 입장 - 주요내빈 착석 및 송출국가 대표단(기수) 입장(25')	○ 사회자: 김현욱
	13:25-13:35(10')	■ 개회선언 - 행사시작 및 진행순서 알림(3') - 주요 내.외빈 참석자 소개(7')	○참석자: 1,000여명 -,이사장님,대사 -EPS센터,송출국관계자 -공단 지부지사 포함
	13:35-13:55(20')	■ 개회사 및 축사 - 개회사(5') - 화합 한마당 퍼포먼스(10') - 기념촬영(5')	○개회사: 이사장님 ○ 퍼포먼스(안): 이사장님, 대사 참석
	13:55-14:35(40')	■ 귀국근로자 초청행사 - 희철리듬이 찾아간 귀국 그후의 삶(영상상영) (5') - 귀국근로자 15명 자기소개(20') - 귀국근로자-현직근로자 Q&A(15') 4명	○네팔귀국근로자 영상 ○캄보디아,네팔,베트남, 몽골 귀국근로자(4명)
	14:35-14:55(20')	■ 휴식 및 무대준비	
	14:55-16:10(75')	■ 축제 한마당 - MC오프닝(5') - 송출국가 가수 공연(15') - 외국인근로자 경연대회(40') - 축하 가수공연(15')	-사회자: 섭이 -송출국가수: 방대한, 완이화 -경연대회 6팀 참가 -초대가수: 박현빈
	16:10-16:50(40')	■ 화합 한마당 - 팀빌딩 레크레이션(40') 고용허가제 & 한국문화 알기 퀴즈대회 및 레크레이션	-의자정리 -퀴즈대회를 통한 즉석 경품 지급(포토제닉)
시상 폐회	16:50-17:15(25')	■ 행운권 추첨(10') ■ 경연대회 시상(10') ■ 폐회(5')	-귀가 시 기념품 지급 (가방, 생활용품)

〈 운영주체의 폐쇄적이고 부실한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 개선 필요 〉

내역사업인 ‘국제교류’사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자격검정, 기능경기 등 한국의 선진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HRD 관련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에¹⁰⁸⁾ 참석하여 HRD 관련 된 세계 각국의 정책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HRD+3 포럼을 개최 하여 지역협의체인 아세안 회원국들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파독근로자기념관을 운영하는 사업임.

이 중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사업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¹⁰⁹⁾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파독근로자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¹¹⁰⁾ 고용노동부가 한국

108) APEC HRD Working Group 회의

109)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이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와¹¹¹⁾ 수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 파독기념물 전시홍보 등의 업무를 재위탁하며, 기념관의 시설, 비품 및 기타 자산의 관리와 사업수행 전담인력 운영 및 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기념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화재보험, 인건비 등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데,¹¹²⁾ 2024년도에는 인건비, 보수공사비, 공공요금(수도·전기·가스·전화 등), 자산취득 등에 소요된 예산 1억 2,400만원을 전액 집행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소장품을 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전시를 해설하는 학예사와 기념관의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보조원의 인건비로서,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와 인력공급 회사가¹¹³⁾ 다음과 같은 근로내용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파견계약에 따라 직접 약 7,000만원

< (사)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개요 >

- **설립:** '08.9.12.(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 **이사장:** 김춘동(이사장, '22.4월~현재)
- **설립목적:**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복지증진
- 111) • **회원 수:** 파독 광부·간호사 796명('22.12.29. 재적회원 기준)
- **주요활동:** 파독근로자기념관 운영(한국산업인력공단 수탁, '13.4.1.~)

112) 파독근로자기념관 수탁운영 약정서 제2조

113)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을 집행하였음.

[근로자파견계약 세부 내용¹¹⁴⁾]

	학예사	행정보조원
파견직종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전문가의 업무(181)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
	전시소장품 관리 및 연구, 기획전시 업무 보조	기념관의 시설, 비품 및 기타 자산관리 업무 지원, 기념관 시설 환경미화
계약금액	33,207,977(월 3,018,907원)	36,352,800(월 3,029,400원)
파견기간	2024. 2. 1 - 12. 31	2024. 1. 1 - 12. 31
업무시간	시업시간 10시 종업시간 17시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	시업시간 9시 종업시간 18시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
업무일수	주4일(월 - 목)	주5일(월 - 금)

해당 계약에 의하면 행정보조원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념관에 상주하여 시설관리 등을 하여야 하고, 학예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기념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 내용을 해설하거나, 전시소장품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주체인 연합회가 위의 업무시간 동안 기념관 문을 잠근 채 개방하지 않고,¹¹⁵⁾ 용역(파견)계약의 당사자이자 관리책

114) 사단법인 한국과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주)유원케어센터 간 용역계약서 내용 정리한 것임

115)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이 2024년 3월, 2025년 5월과 7월에 파독근로자기념관을 직접 방문한 결과 아무런 안내사항 없이 오전 10시가 지났음에도 기념관 문은 잠겨 있었고 기념관 대표전화는 기념관이 아닌 행정보조원 휴대폰 또는 3층 사무실로 연결되었음

임자로서 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지휘·명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¹¹⁶⁾ 오히려 행정보조원을 전시관이 아닌 3층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¹¹⁷⁾ 연합회의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였음.¹¹⁸⁾

이에 따라 소장품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독 광부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 등 기획에 맞게 전시되거나 수장(收藏)되어야 할 소장품이 기념관 바닥에 방치되어 있었고, 청소 등 전시관 내부의 기본적인 환경 미화도 되지 않아¹¹⁹⁾ 전시관은 관람하기에 열악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합회는 관람객이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의 기념관 내부 화장실 이용이 잦아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하였음. 그러나 관람객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며 기념관을 개방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파독근로자들의 역사와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¹²⁰⁾ 국가 예산 25억원을 들여 기념관을 건립한 취지에 맞지 않고 매년 국가가 1억 3,000만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보임.

운영주체의 폐쇄적인 운영과 부실한 관리는 전시관 관람객 수 감소로

116)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주)유원커리어센터 간 근로자파견계약서 제9조

117) 학예사도 3층 사무실에 상주하고 3층 사무실은 연합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음

118)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정보조요원인 자가 연합회의 행정실장으로 소개되고 있고(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홈페이지>협회소개>조직도), 실제로도 연합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소대행 업체에 환경미화 용역비로 4,514,400원(월 376,200원)을 집행하였음

120) 파독근로자기념관 개관행사 중 고용노동부 장관 기념사 발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기념관 방문객은 다음과 같이 총 179명이었고, 방문객이 1명이라도 있었던 날이 월 2일에서 10일에 불과하였음.

[2024년 일자별 기념관 방문객수¹²³⁾]

1월	3일	5일	8일	15일	16일	19일	24일	25일	26일	29일	10일/월
방문객수	2	1	1	2	2	2	2	1	1	2	총 16명
2월	1일	2일	3일	13일	15일	23일	27일				7일/월
방문객수	1	1	1	4	2	9	2				총 20명
3월	7일	18일	22일	27일	29일						3일/월
방문객수	3	1	1	4	2						총 11명
4월	3일	4일	12일	19일	22일						5일/월
방문객수	2	1	1	3	2						총 9명
5월	13일	23일	24일	27일	28일						5일/월
방문객수	2	2	3	1	5						총 13명
6월	3일	17일	18일	24일	25일						5일/월
방문객수	4	2	2	1	2						총 11명
7월	4일	17일	29일								3일/월
방문객수	1	1	1								총 3명
8월	5일	7일	13일	22일	26일						5일/월
방문객수	4	2	32 121)	1	1						40명
9월	11일	25일									2일/월
방문객수	1	8									총 9명
10월	7일	10일	16일	23일	24일						5일/월
방문객수	9	1	2 ¹²²⁾	2	4						총 18명
11월	12일	15일	22일	27일							4일/월
방문객수	10	1	2	1							총 14명
12월	1일	4일	12일	22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9일/월
방문객수	1	1	1	2	1	2	3	2	2		총 15명

이러한 연합회의 부실한 관리 행태는 기념사업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연합회에 재위탁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질적인 업무 관리감독이 부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운영주체는 부실하게 기념관을 관리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념관은 건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념관 운영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념관이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념관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121) 재외동포협력센터 모국 초청연수생 30명 단체 방문

122) 10월 16일 방명록을 작성한 2인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1인과 주무관 1인으로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방문함

123) 2024년도 분기별 파독근로자기념관 사업실적보고서 참조

참고

파독근로자기념관 개요

□ 설립 경과

- '11.12월 국회에서 파독근로자기념관 건립 예산(25억원) 확정
 - '12.11.21 파독근로자기념관 건물 매입(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소유)
 - '13.5.21. 파독근로자기념관 개관

□ 파독근로자기념관 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42-5	
규 모	총 5층(지하 1층·지상 4층) 대지 166.1m ² (50.2평) 건평(연면적) 402.12m ² (121.6평)	
전시물	152종 390점	

□ 기념관 건물 용도

구 분	위 치	비 고
전시관	지층, 지상 1층	
세미나실	지상 2층	수용규모: 30명
사무실	지상 3층	
쉼터	지상 4층	

(3)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보험기금, 1151-352)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1997년~, 직접)은 급격한 기술발전 적응과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7,213억 7,400만원으로, 이 중 5,710억 2,200만원(79.2%)이 집행되었고, 1,503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고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내일배움카드 (고보)	734,204	721,342	32	-	721,374	571,022	-	150,352	603,198
▪ 일반직종 훈련	331,239	331,239	-	-	331,239	296,553 [296,553]	-	34,686	332,890
▪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25,960	313,098	-	-	313,098	198,572 [198,572]	-	114,526	205,160
▪ 산업구조변화대 응등 특화훈련	75,960	75,960	-	-	75,960	74,904 [74,904]	-	1,056	64,103
▪ 운영비 등	1,045	1,045	32	-	1,077	992 [992]	-	85	1,045

* 자료: 고용노동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중복 해소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금속, 동력, 전기, 전자 등 우리나라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3,130억 9,800만원 중 1,985억 7,200만원(63.4%)이 실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내일배움카드 (고보)	734,204	721,342	32	-	721,374	571,022	-	150,352	603,198
▪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25,960	313,098	-	-	313,098	198,572 [198,572]	-	114,526	205,160

* 자료: 고용노동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직종을 크게 ①기간산업직종(건축목공, 정보통신설비 등 28개), ②전략산업직종(빅데이터 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등 24개)과 ③서비스산업직종(게임콘텐츠제작, 클라우드 운영관리 등 34개)으로 구분하고 있음.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목록]

대분류	기간산업직종(28개)	전략산업직종(24개)	서비스산업직종(34개)
경영·회계·사무 (3)			물류관리, 핀테크, 기술 문서작성자 (3)
교육·자연· 사회과학(1)		빅데이터 전문가 (1)	
문화·예술· 디자인·방송(5)			디지털디자인, 공공디자 인, 게임콘텐츠제작, 제 품디자인, 멀티미디어 (5)
이용·숙박·여행· 오락·스포츠(1)			국제관광마케팅 (1)
건설 (11)	건축목공, 실내건축, 측 량, 토목시공, 가스설비 시공, 건축설비 설계·시 공, 철도안전 (7)	친환경건축시공, 플랜트 건설, 플랜트설비 (3)	BIM (1)
기계 (18)	기계설계제작, 생산기계, 자동차도장, 레이저가공, 밀링(머시닝센터), 금형, 선반(CNC선반), 열냉동 기계, 기계조립 및 시스 템제어, 측정 (10)	자동차정비(새시·엔진·장 치), 자동차튜닝, 영상촬영드 론조종 (3)	산업응용로봇제어, 항공 기정비, 자동차차체정 비, 드론제어, 스마트팩 토리 설계·운영 (5)
재료 (3)	특수용접 (1)	품질관리기술자, 신소재 개발 및 제조 (2)	
화학· 바이오(2)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 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2)	
섬유·의복 (2)	염색가공 (1)		스마트의류 (1)
전기·전자 (12)	외선공사, 내선공사, 전기 기기제작, 전자응용기기 (개발·생산), 전자시스템제 어, 전기시스템제어 (6)	LED응용, 반도체장비설 비, 로봇시스템 인터그 레이터, 3D프린터 운용,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 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6)	
정보통신 (13)	정보통신설비 (1)	사물인터넷(홈·산업IoT), 증강현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3)	정보시스템구축(개발·운 영), 디지털컨버전스, 제 품SW구축, 스마트웹&콘 텐츠개발, 네트워크운영 관리, 클라우드운영관리,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 문가,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 츠 개발 (9)
인쇄·목재· 가구·공예 (4)	특수인쇄 (1)	가구설계제작 (1)	출판, 보석디자인 (2)
환경·에너지· 안전(9)	광산자원개발생산 (1)	태양에너지 (1)	생태복원·관리, 기후변화대응관리, 녹색순환자원관리, 스마트물관리, 토양·지하수관 리, 소음진동관리, 환경보건관리 (7)
농림·수산 (2)		종자생산·유통, 스마트 팜구축 (2)	

* 출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4. 7. 31. 기준)

그런데 2024년 동 사업의 실제 훈련 인원은 37,397명으로 목표 훈련 인원인 50,000명의 74.8%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집행 부진은 2023년에도 나타났는데, 2023년의 실제 훈련 인원은 38,184명으로 목표 훈련 인원인 70,650명의 54.0% 수준이었음.

[2023 · 2024년 국가기간 · 전략직종훈련 사업의 훈련 현황]

(단위: 명, %)

연도	목표 훈련 인원(A)	실제 훈련 인원(B)	목표 달성률 (B/A×100)
2024	50,000	37,397	74.8
2023	70,650	38,184	54.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훈련생이 선호하는 디지털 분야 등 전략산업직종과 서비스산업직종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일반)¹²⁴⁾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K-DT) 사업’(이하 ‘K-DT사업’)과 중복되는 직종이 있고, K-DT 사업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사업보다 참여자 훈련수당 지원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K-DT 사업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124)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일반)(1131-300)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DT 사업내용 비교]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T
지원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지원 근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동일 지원 분야	산업 응용 로봇 제어,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운영),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디지털 컨버전스, 핀테크, 빅데이터 전문가, 스마트팜 구축, 클라우드 운영 관리, AI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VR/AR 콘텐츠 개발, 3D프린터 운용,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사물인터넷(홈·산업IoT)	
훈련 방식	평균 6개월, 주5일, 하루 8시간 훈련	평균 6개월, 주5일, 하루 8시간 훈련 기업 참여를 통해 전체 훈련과정의 30%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
훈련 비	전액 지원	전액 지원
훈련 장려 금	월 최대 20만원	월 최대 31.6만원 (훈련장려금 11.6만원 + 특별훈련수당* 20만원)

주) K-DT 사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의2에 따라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이 지급됨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로, 2024년 동 사업과 K-DT 사업이 중복되는 직종의 훈련인원을 비교하면, 중복되는 14개 직종 중 12개 직종에서 K-DT 사업의 참여자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의 경우 동 사업 훈련인원은 89명에 불과하나 K-DT 사업의 훈련인원은 5,139명으로,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024년 K-DT 사업과 중복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별 훈련인원]

(단위: 명)

직종	훈련인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T
산업 응용 로봇 제어	36	75
정보 시스템 구축(개발,운영)	283	3,968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890	5,748
디지털 컨버전스	2,633	7,728
핀테크	12	530
빅데이터 전문가	91	4,581
스마트팜 구축	40	23
클라우드 운영 관리	88	2,380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89	5,139
VR/AR 콘텐츠 개발	25	1,741
3D프린터 운용	404	70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39	1,343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65	464
사물인터넷(홈·산업 IoT)	51	404

*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두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훈련인원 감소추세는 2024년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두 사업의 주요 유사 직종 훈련인원을 비교하면, 대부분 직종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인원은 꾸준히 감소 추세이나, K-DT 사업의 훈련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직종의 경우, 2024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인원은 전년 대비 1,048명이 감소(△54.1%)하였으나, K-DT 사업의 훈련인원은 1,721명(42.7%)이 증가하였음.

**[2021~202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K-DT 주요 유사
직종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훈련대상 직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T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593	501	212	89	3,953	4,446	4,838	5,139
디지털 컨버전스	12,081	7,879	4,677	2,633	140	2,284	6,136	7,728
빅데이터분석 및 UI 전문가	992	599	207	39	1404	2,596	2,488	1,343
빅데이터 전문가	1,460	663	233	91	2,072	3,705	4,206	4,581
스마트웹&콘텐츠 개발	4,291	2,829	1,938	890	553	2,431	4,027	5,748
정보시스템구축 (개발, 운영)	1,514	707	404	283	462	1,432	3,092	3,968
클라우드 운영 관리	593	372	200	88	911	2,560	2,664	2,380

* 자료: 고용노동부

K-DT 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¹²⁵⁾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의 유사 직종 참여가 더욱 저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며,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및 훈련방식 다각화 등 참여 확대 방안과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을 의결하였음. 이

125) (2022년) 3,248억 2,200만원→(2023년)4,162억 6,000만원→(2024년)4,731억 8,800만원→(2025년 본예산) 4,781억 1,600만원

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과 중복직종의 ’25년 공급규모는 ’24년 대비 40% 축소 조정완료(’24.12월)’라고 보고하였으나, 중복 사업의 40% 축소는 근본적인 유사·중복성의 해소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K-DT 사업의 중복 직종 훈련 폐지 등 사업간 중복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4)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보험기금, 1154-356)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2014년~, 직접/보조/출연)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채용 후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3,116억 3,200만원으로, 이 중 3,015억 4,700만원(96.8%)이 집행되었고, 100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산업 현장 일 학 습 병 행 지 원	311,632	311,632	-		311,632	301,547	-	10,085	276,632
▪ 일 학 습 병 행 운 영·지 원	80,684	80,684	-		80,684	80,684 [80,645]	-	-	70,159
▪ 일 학 습 병 행 공 동 훈 련 센 터	76,955	76,955	-		76,955	76,955 [73,532]	-	-	73,346
▪ 일 학 습 병 행 훈 련 비	141,593	141,593	-		141,593	137,008 [137,008]	-	4,585	133,127
▪ 외 국 인 유 학 생 일 학 습 병 행	12,400	12,400	-		12,400	6,900 [285]	-	5,500	순 감 (내 역 통 합)

* 자료: 고용노동부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불용액 과다 부적정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소멸지역의 제조업 및 뿌리산업에 숙련인력으로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 124억원¹²⁶⁾ 중 69억원(55.6%)을 집행하고 55억원을 불용하였으나, 계획현액 대비 실집행액은 2억 8,500만원(2.3%)임.

[2024회계연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산업현장일학 습병행지원	311,632	311,632	-		311,632	301,547	-	10,085	276,632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12,400	12,400	-		12,400	6,900 [285]	-	5,500	순감 (내역통합)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 유학생 중 졸업한 후에도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이론교육(Off-JT)과 현장훈련(OJT)을 실시하는 사업임.¹²⁷⁾ 고용노동부는 D-2

126) 외국인 유학생 특화 공동훈련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69억원(20개소×3억 4,500만원, 민간경상 보조), 외국인 유학생 훈련비 55억원(1,000명×550만원)

127)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고용노동부는 인구소멸 위기 광역자치단체 소재 전문대·4년제 대학교 유학생 중 졸업 후에도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구소멸 위기 자치단체가 선정한 제조업·뿌리산업 중심의 적합 직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훈련대상 및 훈련직종이 [외국인 유학생 일

(유학) 혹은 D-10(구직)¹²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일학습병행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 향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였음.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개요]

훈련대상	D-2 및 D-10의 체류자격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유학생 및 졸업생
훈련직종	E-1~E-7체류자격으로 연계 가능한 훈련 직종
일학습병행기간	최대1년 (Off-JT 6개월/ OJT 6개월)
지원수준	OJT, OFF-JT훈련에 따른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원

그러나 2024년 집행실적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민간경상보조금 69억원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억 8,500만원에 불과하고, 유학생 훈련비 55억원은 전액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¹²⁹⁾

그 이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당시

학습병행 사업의 개요] 표와 같이 변경되었음.

128) D-2(유학) 비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며, D-10(구직) 비자는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등으로서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정식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임.

129) 고용노동부는 22명의 참여인원이 있으나, 훈련비 지급은 OJT 시작 후 4개월 경과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24년 훈련비는 전액 불용되었고, 해당 인원 에 대한 훈련비는 2025년 계획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함.

사업 참여 유학생이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세무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행정부 내부 사정으로 최종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연내 마무리하여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면, 동 사업 민간경상보조(320-01목)를 보조사업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액 교부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⁰⁾ 이는 보조

13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이때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 세부사업의 2개 내역사업(일학습 병행공동훈련센터,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의 보조사업자인바 세부 사업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기준으로 2차례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 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 미완료 등 사업 집행의 전제가 되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을 따르지 않은 것임.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 준비 과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 불용이 발생한바,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마. 노동정책실

(1)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일반회계, 1342-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2024년~, 직접수행(위탁), 보조, 출연)은 중소·영세 사업장 등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439억 8,400만원 중 438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	43,984	43,984	-	-	43,984	43,847	-	137	-
▪ 일터혁신 지원	29,824	29,824	-	-	29,824	29,687	-	137	-
▪ 직무기반 인사체계 구축 특화지원	14,160	14,160	-	-	14,160	14,160	-	-	-

* 자료: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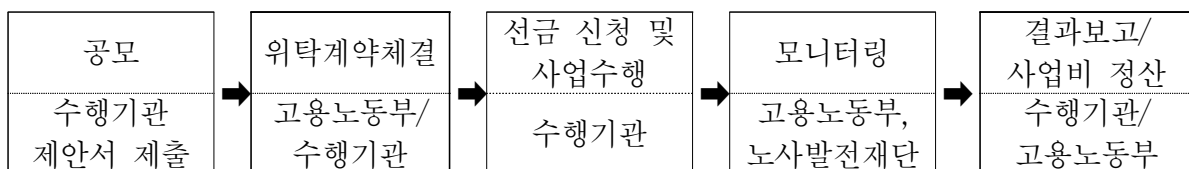
동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추진 중이던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2024년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이외에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공정채용컨설팅’ 등 여러 세부사업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컨설팅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일반회계, 2039-300)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07억 5,600만원의 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시장 법제도 안착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일터혁신 지원’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사합의와 참여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2024년 기준)으로 ①장시간근로개선, ②고용문화개선, ③임금체계개선, ④평가체계개선, ⑤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⑥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⑦평생학습체계구축, ⑧장년고용안정 등 8개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컨설팅기관이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컨설팅기관이 컨설팅 대상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수행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됨.

[일터혁신 지원 사업(컨설팅)의 추진 절차]



주) 컨설팅 진행절차 : 사업장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컨설팅 → 종료 및 보고 → 사후관리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는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총 1,793개 사업장에 3,627건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일터혁신 지원 사업 실적 추이]

(단위 : 건, 개소)

구분	임금	평가	장시간	노사 파트너십	평생 학습	작업 조직	고용 문화	장년 고용	안전 일터	진단 및 이행	합계 <사업장수>
2021년	342	354	506	162	238	335	177	161	209	-	2,484 <1,158>
2022년	570	681	246	220	257	368	240	119	408	-	3,109 <1,464>
2023년	623	723	212	281	254	316	312	95	387	-	3,203 <1,565>
2024년	656	801	234	254	264	637	383	191	-	207	3,627 <1,793>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 및 결과의 환류 방안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매년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하고, 사업의 보완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동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음.

성과평가는 두 가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는바, 일터혁신 컨설팅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임. 컨설팅 평가는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진행 과정,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결과인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는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

을 구성하여 평가표를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관리주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을 선정하여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2024년에 4억 4,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그런데,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지원사업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년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일터혁신 지원사업 수행에 활용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예산을 통해 수행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노사발전재단에 의한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총괄관리상의 평가는 컨설턴트가 수행한 사업장 프로젝트(보고서)에 대한 평가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행기관 조직구조의 적절성, 컨설턴트 역량 강화 활동,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시스템 하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을 관리할 때에는 노사발전재단의 총괄관리상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 및 물량 배정을 할 때에는 연구용역상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바 두 평가의 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경

우 비일관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실제로, 같은 연도에 동일한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사례들이 발견됨. 일례로, 2022년의 경우 연구용역에서의 평가 결과 14개 기관 중 12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기관이 총괄관리 사업에 따른 평가 결과 1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았고, 2024년에는 연구용역에서의 평가 결과 14개 기관 중 10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기관이 총괄관리 사업에 따른 평가 결과 1위에 해당하는 평가 결과를 받은 사례 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 평가별 컨설팅 수행기관 평가결과 순위]

< 2022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O
연구용역	2	8	6	5	3	10	11	9	14	13	4	7	1	12
총괄관리	1	1	6	8	8	8	8	1	14	8	1	8	6	1
< 2023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연구용역	4	12	8	3	5	1	7	11	9	2	10	6		
총괄관리	9	11	3	2	10	1	8	4	7	5	12	6		
< 2024년 >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O
연구용역	-	8	3	5	2	6	12	13	1	7	9	4	11	10
총괄관리	6	12	4	13	7	2	11	14	3	8	9	10	5	1

주 1) 수행기관명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으며, 단순 순서에 따른 것으로 같은 알파벳명이 같은 수행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 2) 음영은 두 평가결과의 순위가 5순위 이상 차이나는 경우임.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중첩적인 성과평가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될 뿐더러 여러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수행기관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또한 두 종류의 성과평가 결과가 모두 수행기관에게 통보되는 상황에서 상반된 성과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좋지 않은 평가 결과를 반영한 페널티 부과 등에 대한 수행기관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요소로 작용하여 평가 결과의 환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물량 배정 과정에서 과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 한 수행기관의 경우, 낮은 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오히려 늘어난 사업 물량을 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정 수행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및 연도별 예산 배정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배정액		1,492	1,243	1,580	2,099
성과평가 결과 (순위/평가대상 기관수)	연구용역	13/14	9/12	12/13	-
	총괄관리	8/14	7/12	11/14	-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컨설팅 사업은 컨설턴트가 배정된 사업장에 대한 평가 및 솔루션 제공 등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바, 컨설턴트 및 해당 컨설

턴트를 관리하는 컨설팅 기관의 능력이 사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사업 물량 배정 및 기타 사업관리에 있어 해당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현행 제도 하에서 비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일터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2) 상생협력 확산지원(일반회계, 2031-3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상생협력 확산지원’(2024년~, 직접 및 위탁·보조)은 노사 및 노노 간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년도 예산현액 210억 1,000만원 중 204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5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세부사업 중 ‘상생연대 형성지원’과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내역사업은 2025년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인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에 이관 편성되었음.

[2024회계연도 상생협력 확산지원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 상생협력 확산지원	21,010	21,010	-	-	21,010	20,415	-	595	8,543
▪ 상생임금 확산지원	9,725	9,725	-	-	9,725	9,712	-	13	5,918
▪ 상생연대 형성지원	5,000	5,000	-	-	5,000	5,000	-	-	-
▪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2,873	2,873	-	-	2,873	2,742	-	131	2,624
▪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지원	3,412	3,412	-	-	3,412	2,961	-	451	-

* 자료: 고용노동부

〈 지자체 보조 사업의 집행부진 및 효과적인 집행방안 마련 필요 〉

상생협력 확산지원 사업 중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은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상담서비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34억 1,200만원 중 29억 6,100만원이 집행되었음.

동 예산 중 14억 6,000만원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편성된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미조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노무제 공자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¹³¹⁾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서 편성된 사업임.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예산 14억 6,000만원 중 10억 900만원만을 28개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며, 지자체들은 이 중 8억 9,200만원만을 집행한바, 예산 편성액 대비 실집행률은 61.1%에 불과함.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실집행액]

(단위 : 백만원, %)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1,460	1,009	1,009	-	1,460	892	-	568	61.1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131)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분은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임.

또한 동 사업의 지자체별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정량적 사업실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개별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 또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지자체별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지자체명	사업실적			예산 실적행		
	교육	상담	법률구조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률
경기도	61	87	7	36	29	79.7
경상북도	1,535	217	40	84	65	77.2
대구광역시	-	-	91	79	77	98.2
전라남도	1,889	248	10	66	55	84.0
전북특별자치도	559	373	-	78	76	98.3
충청남도	503	176	22	44	44	100.0
강원 삼척시	334	81	-	12	12	100.0
경기 구리시	-	-	27	32	17	53.4
경기 용인시	397	135	-	63	61	97.4
경남 거제시	-	54	9	5	4	84.5
경북 안동시	171	173	-	45	38	83.4
경북 포항시	590	260	-	40	28	71.5
대전 대덕구	634	558	72	98	84	85.8
서울 관악구	943	-	8	13	10	77.3
서울 금천구	76	264	-	8	7	91.2
서울 노원구	-	672	11	24	24	100.0
서울 도봉구	548	380	10	40	38	93.1
서울 성북구	264	249	22	27	25	90.4
서울 영등포구	166	136	6	11	10	85.6
서울 중구	306	19	14	14	12	91.5
서울 중랑구	-	147	7	16	16	99.3
울산 북구	90	45	-	8	8	99.8
전남 나주시	22	12	10	10	3	26.4
전남 해남군	59	5	-	14	11	79.3
전북 전주시	512	84	3	44	40	90.7
전북 정읍시	140	81	-	15	15	100.0
충북 음성군	-	149	31	23	23	99.1
충북 진천군	359	97	-	57	57	99.8

주 : 지자체별 실적행률은 원단위 예산액 및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백만원 단위로 표기된 표 상의 액수로 계산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동 사업이 시행 첫해로서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4년 동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의 공모를 진행하여 9월에야 지자체 선정이 완료되는 등 사업수요가 저조하였음.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내역]

(단위 : 개)

차수(공모시기)	신청		선정	
	지자체	사업수	지자체	사업수
1차 (3.28.~4.12.)	20	47	16	32
2차 (5.13.~5.23.)	9	17	9	17
3차 (7.12.~7.29.)	4	7	4	7
4차 (9.3.~9.23.)	1	4	1	3
합 계	34	75	30	59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현상은 사업 첫 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2025년의 경우 1월에 실시된 1차 공모에서 39개 지자체가 113개 사업을 신청하여 이 중 34개 지자체의 102개 사업이 선정되어 공모가 완료된바, 2025년 사업비는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의 사업 추진 내역 및 실적 등을 볼 때 동 사업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어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

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운영' 사업을 8억 8,200만원의 예산을 통해 노사발전재단 위탁 사업으로 추진한바, 노사발전재단은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소의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설하여 노무제공자 등에게 약 5,000건 이상의 공인노무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중 2,236건을 고용센터 등의 고용노동서비스와 연계한 바 있음.

[2024년 근로자 이음센터 상담 실적]

(단위 : 건)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일자)	상담(대면·전화)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네이버)
서울(4.29)	585	51	1,445
평택(5.7)	887	20	
청주(5.7)	312	85	
대구(4.29)	540	106	
부산(4.29)	394	56	
광주(5.10)	662	64	
총 계	3,380	382	1,445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신규 세부사업인 '노동약자지원(일반회계, 2031-303)'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 교육·상담프로그램' 사업을 12억원의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바, '전국 단위의 표준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간 유관단체'라는 사업 추진주체만 다를 뿐 노동약자에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사업 내용에는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

[노동약자 교육·상담 관련 2개 사업 비교]

구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노동약자 유관단체 협업 교육·상담프로그램
사업 개요	▶(목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약자 보호 사업을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사업 실시('24년~) ▶(내용) 지자체의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 지원	▶(목적) 노동약자 보호 지자체 공모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유관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실시('25년~) ▶(내용) 노동약자 지원 단체 등의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 대상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비정규직·영세사업장 근로자,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 공모·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지방비 매칭)	▶노사발전재단 위탁 → 사업 수행 민간단체 공모·선정 * 사업 수행 단체 요건: 지역별 거점을 두고 전국 단위의 표준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및 경험을 보유한 단체
서비스 제공 방식	▶지자체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민간단체의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간접보조사업자(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상담소 등)	▶공모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
지원 내용	▶(교육·상담) 노동약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관계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법률구조) 노동권익 침해 및 불이익 구제 절차 및 신고·진정 등 지원 ▶(인식개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토론회 및 캠페인 개최	▶(교육·상담) 노동약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관계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제공 ▶(법률구조) 노동권익 침해 및 불이익 구제 절차 및 신고·진정 등 지원
2025년 예산	15억원	12억원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이와 같은 사업의 중첩적 추진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전문성이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약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내용의 정비를 통해 관련 사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고용상 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2005년 ~, 직접/보조)은 비정규직 근로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하여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정책연구·실태조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33억 7,000만원 중 32억 4,300만원(96.2%)이 집행되었고, 1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민간부문 고용 구조개선지원	1,403	1,403	12	-	1,415	1,391 [1,391]	-	24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1,805	1,805	-	-	1,805	1,707 [1,579]	-	98	2,063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150	150	-	-	150	145 [145]	-	5	
합 계	3,358	3,358	12	-	3,370	3,243 [3,115]	-	127	

*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세부사업 ‘노동약자지원 (2031-303)의 내역사업인 ‘노동약자 일터개선지원’으로 이관됨

**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에는 ① 정규직 채용·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장 컨설팅 및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파견법 준수 등 지도·점검, 정책연구 등의 실시를 위한 민간부문 고용구조개선 지원 사

업, ②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을 위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고용형태 자문기구 운영, 실태조사·연구 등을 실시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 ③ 재난 시에도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등을 실시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내내역사업인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안전교육 등 일터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선정 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성과평가를 거쳐 민간은 최대 3년, 자치단체는 최대 2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사업기간 (재원)	2022 ~ 계속 (일반회계) (2025년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으로 수행)
개요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컨소시엄도 가능), 자치단체, 협회·유관단체 등에서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최대 50%(3억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기업, 유관 협회·단체, 자치단체 (※ 컨소시엄 가능)
수혜대상	플랫폼종사자
지원기간	기본 1년*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 기관은 최대 2년, 자치단체는 1년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사업 기간은 사업선정일로부터 당해 말일(12월 31일)까지 ** 민간 기관은 기본 2년 지원 원칙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결정)
사업 유형	- 쉼터: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가 이동 간 또는 대기시간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복지지원: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 (안전보호 장구 지급, 오토바이 점검센터 등) - 기타: 법률·노무·산재·세무·심리 등 상담 서비스 지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카페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플랫폼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
지원내용	신규 일터개선 사업 소요 경비의 최대 50%(최대 3억원)
추진현황	'24년 자치단체 29개소, 플랫폼 기업 8개소 지원(연장지원 포함) * '22년 민간 플랫폼 8개소 지원, '23년 자치단체 15개소, 민간플랫폼 9개소 지원 ** '22~'23년 사업자 중 자치단체 11개소, 민간 플랫폼 기업 6개소 연장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 차질없는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으로 구분됨. 2024년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29개소, 플랫폼 기업 8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먼저 자치단체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10억 3,900만원을 총 29개소의 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부현액 10억 5,800만원 중 9억 7,600만원(92.3%)을 실행하고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불용액	이월액	비고
서울 금천구	5.6	5.6	5.1	91.1	0.5	-	
경기 광명시	6.6	6.6	6.6	100.0	-	-	
경기 김포시	8.3	8.3	7.6	91.6	0.7	-	
울산광역시	90	90	89	98.9	1	-	
울산 동구	30.7	30.7	30	97.7	0.8	-	
경북 구미시	23.9	23.9	22.5	94.1	1.4	-	
광주 광산구	30	30	28.8	96.0	1.2	-	
전남 나주시	26.7	45	40.2	89.3	6.8	-	
전남 여수시	12.5	12.5	9.6	76.8	2.9	-	
전북 전주시	22	22	21.2	96.4	0.8	-	
충청남도	220	220	211.9	96.3	8.1	-	
서울특별시	111.7	111.7	103.4	92.6	8.2	-	
서울 강남구	34	34	30.7	90.3	3.3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액 미집행
서울 관악구	38.2	38.2	31.7	83.0	6.6	-	
서울 도봉구	14.1	14.1	13.3	94.3	0.8	-	
서울 강서구	53.3	53.3	44.7	83.9	8.6	-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전액 미집행
서울 강북구	6	6	5	83.3	1	-	
인천광역시	41.4	41.4	37.9	91.5	3.5	-	인건비 3개월분 미집행
인천 남동구	7.5	7.5	7.5	100.0	-	-	
인천 계양구	7.5	7.5	5.8	77.3	1.7	-	
경기 용인시	54.9	54.9	51.8	94.4	3.1	-	
경기 의정부시	8	8	6.6	82.5	1.4	-	
부산광역시	33.5	33.5	27.4	81.8	6.1	-	
경남 창원시	9	9	8.5	94.4	0.5	-	
경남 거제시	13.5	13.5	11.8	87.4	1.7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불용액	이월액	비고
광주광역시	8.1	8.1	8.1	100.0	-	-	
전북 익산시	54.5	54.5	54.6	100.2	-	-	
전북 김제시	7.7	7.7	5.8	75.3	1.9	-	
충남 홍성군	60	60	49	81.7	11	-	인건비 전액 미집행
계	1039.2	1057.5	976.1	92.3	83.6	-	

자료: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민간보조사업의 실집행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총 8개의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총 5억 4,800만원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는 교부현액 5억 4,800만원 중 4억 8,500만원(88.6%)을 실집행하고,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민간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불용액	이월액	비고
생활연구소	72.6	72.6	61.7	85.0	10.9	-	
카카오 모빌리티	26	26	25	96.2	1	-	
한국대리운전 협동조합	175	175	169.6	96.9	5.4	-	자부담 미확보로 2차 미교부
더블유 컴퍼니	41.7	41.7	38.8	93.0	2.9	-	
쿠팡이츠 서비스	30	30	27.9	93.0	2.1	-	
우아한 청년들	111.4	111.4	100.8	90.5	10.5	-	
플라이앤 컴퍼니	39.5	39.5	26.1	66.1	13.4	-	
로지올	51.5	51.5	35.2	68.3	16.3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교부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불용액	이월액	비고
계	547.7	547.7	485.1	88.6	62.5		

자료: 고용노동부

이때, 일부 보조사업자의 경우, ① 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인건비 미집행, ②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등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차질없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① 쉼터 설치 지연으로 인하여 운영비·인건비 등 불용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홍성군이 있음.

구체적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의 경우, 당초 2024년 6월부터 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7개월분의 임차료·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음. 그러나 쉼터 입지선정 및 계약이 지연되며 2024년 10월에야 24시간 무인형 쉼터를 개소함에 따라, 인건비는 전액 불용되었고, 임차료 등 기타 운영비도 3개월분이 불용되었음.¹³²⁾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¹³³⁾ 경

132) 쉼터 개소는 2024.10월이나 개소 이전 인테리어 공사 등이 추진되어, 2024.9월부터 임차료가 지출됨.

133) 본 사업 공사의 건설비는 7,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서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쟁입찰 계약으로 계약방식 추진을 변경하여, 2024년 11월에야 컴퓨터가 개소되었고, 이에 따라 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불용되었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당초 컴퓨터 설치를 계획했던 권역에는 기조성·운영중인 컴퓨터가 있음에 따라 컴퓨터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2024년 12월에야 컴퓨터가 준공되었고, 편성되어 있던 5개월분의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가 불용되었음.

② 한편 민간보조사업자 중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의 경우 자부담금 미확보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적은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야간 이동 플랫폼노동자의 이동형 컴퓨터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5억원의 사업을 계획하여 2억 5,000만원은 민간보조금으로 교부받고, 2억 5,000만원은 자부담할 예정이었고, 고용노동부는 2024.1.19. 보조금의 70%인 1억 7,500만원을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에게 교부하였음.

그러나 1차 보조금 교부 이후 보조사업자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경기 악화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당초 예정했던 자부담 금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잔여 보조금 7,500만원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미교부 및 불용되었음.

이상의 불용액의 발생 원인인 사업 지연 및 자부담금 미확보 등은 고용노동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함.

려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파악하였어야 할 대상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① 컴퓨터 건설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지 변경 및 컴퓨터 설치 공사 등 소요되는 기간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건비·운영비 등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② 또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¹³⁴⁾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¹³⁵⁾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보조사

1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1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사업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업자의 재무안정성·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면,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차질없는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⁶⁾

〈 현물성 지원 외 다양한 일터지원 방안 강구 필요 〉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쉼터 설치, 방한·안전장구 지급 외에 법률·노무·산재·세무·심리 등 상담 서비스 지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편의점·카페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플랫폼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사업 추진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2024년 사업 유형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의 추진 내역을 보면, 2024년 총 37개소(자치단체 29개소, 민간 8개소) 일터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쉼터 설치 21개소,¹³⁷⁾ 방한·안전장구 지급 13개소, 상담 등 복지서비스 제공은 3개소에 불과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주

136)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 쉼터 운영에 관리비·인건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사업 선정 이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쉼터의 개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부터는 지자체의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예정보다 추경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보조금 불용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②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는 사업 신청시 ‘불용 방지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운영 중 수시 점검을 통해 집행률 방안을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137) 거제시, 관악구 등 일부 지자체는 쉼터 설치와 방한·안전장구 지급을 병행하기도 하였음.

로 쉼터 설치 및 방한·안전장구 지급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새로 확대된 사업 추진 유형인 상담 등과 관련하여, 당초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획하였던 지자체인 김제시의 경우, 실제 법률상담 집행건수는 0건이며, 민간보조사업자인 플라이앤컴퍼니의 경우에도 라이딩 안전교육·라이더 마음챙김서비스(상담)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확대된 분야에서의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쉼터 설치	방한·안전장구 지급	상담 등	합계
지자체	17	11	1	29
민간	4	2	2	8
계	21	13	3	37

*자료: 고용노동부

현물성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안전장구 지급과 같은 현물성 지원은 일률적으로 물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목적이 ‘지역·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약노동자의 근로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가 동 사업의 지원 분야를 2024년부터 복지서비스

분야까지 구체화하였고, 2025년부터는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의 주된 목적인 ‘지역·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취약노동자 일터환경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현물성 지원 외 내실있는 일터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³⁸⁾¹³⁹⁾¹⁴⁰⁾

138)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는 쉼터 설치·운영 지원 등 지역별로 구축·운영이 필요하거나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수행하게 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9) 고용노동부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원적 수단은 법률 상담, 교육·훈련 등이나, 현장의 참여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는만큼 현물성 지원을 마중물로 하여 본질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임.

140) 참고로,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결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역별 차별화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할 것(주의)’의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

(4) 대지급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대지급금 지급’(1998년~, 직접, 출연)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7,272억 300만원으로, 이 중 7,271억 9,800만원(99.99%)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대지급금 지급	472,733	727,203	-	-	727,203	727,198 [727,151]	-	5	529,346
▪ 대지급금 지급	472,550	724,207	-	-	724,207	724,207 [724,207]	-	-	526,403
▪ 채권관리비용	2,183	2,996	-	-	2,996	2,991 [2,944]	-	5	2,943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①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

지급금과 ②기업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됨.

[대지급금 제도 개요]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재직자
지급 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 인정		▶ 법원의 확정판결 ▶ 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지급 요건	대상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확정판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사업 주 기 준	① 산재보험 적용 사업 ②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③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③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② 소송 또는 진정 제기 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지급 범 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 한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700만원
청 구 기 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확정판결일부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 6개월 이내	

횟수 제한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 는 동안 1회만 지급
----------	---	-------------------------------

* 자료: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건전성 고려 필요 〉

2019년부터 2024년의 임금채불액 규모와 대지급금 지급 추이를 살펴보면, 임금채불액은 2019년 1조 7,217억원에서 2024년 2조 448억원으로 3,231억원(18.8%) 증가하였고,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9억원에서 2024년 7,242억원으로 2,643억원(57.5%) 증가하였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임금채불액이 급증하며 대지급금 지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9년~2024년 체불규모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임금채불액	1,721,703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도산대지급금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54,828
간이대지급금	291,090	469,715	467,210	500,288	647,271	669,379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이후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한 대지급금 지급액을 조달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1회의 자체변경(증)을 통해 1,27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의 경우 2회의 자체변경(증)을 통해 총 2,516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3~2024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23.10.26.)	대지급금 지급	310	04	127,773	금리인상의 영향과 소비심리 위축, 건설경기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사정 악화로 채불신고액 증가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증가로 소요재원 마련
자체변경 (‘24.6.19.)	대지급금 지급	310	04	221,635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자체변경 (‘24.11.15.)	대지급금 지급	310	04	30,022	임금채불 증가 등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수요 증가

대지급금은 법정 의무지출으로, 지급 수요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증액 등 사업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대지급금 지급 규모의 확대에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이크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9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3,473억원으로 감소(△63.8%)하였는데 이는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에 기인함. 이러한 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입금 570억원이 수입액으로 편성되어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사업비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수지차 (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주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주2)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대지급금 환수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총수입의 주요한 수입원에 해당하는데, 대지급금 환수 추이를 보면, 최근 누적 대지급금 환수율은 30% 내외로 지속적으로 하락 중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지급금 지급액의 증가에도 환수율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지급금 환수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연도 대지급금지급분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당해연도 대지급금환수분	114,216	122,483	148,248	153,240	148,132	158,228
누적 대지급금지급분(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90
누적 대지급금환수분(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3
누적 환수율(B/A)	34.3	32.8	32.2	31.9	30.9	30.0

*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제금 미납사업주 재산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2012년~, 융자) 사업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채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임금채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772억원으로, 이 중 769억 1,800만원(99.6%)이 집행되었고,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체 불 청 산 지 원 융 자 (융 자)	40,190	77,200	-	-	77,200	76,918 [76,918]	-	282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이하 ‘사업주융자’)와 ‘체불근로자 융자’(이하 ‘근로자융자’)로 구분됨. 먼저 사업주융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체불액만큼¹⁴¹⁾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불 상태 해소를 도모하는 것임.

141) 사업장 1개소당 1억 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근로자용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채불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¹⁴²⁾을 지원하고 있음.

[채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개요]

구분	채불사업주 용자('12.8월~)	채불근로자 용자('21.6.9. 시행)
지원형태	용자	용자
지원대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채불하였으나 채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 (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채불사업자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중인 근로자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가동	①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이상 임금채불 ② 채불확인서 필요
이자율	(담보) 2.2%, (신용) 3.7%	1.5%
용자금액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불액만큼 용자 (사업장 1개소당 1억5천만원, 근로자당 1천5백만원 한도)	총 채불금액에서 대지급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채불금액 (1천만원 한도)
용자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동 사업은 2021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채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하면서 소득요건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및 용자요건 완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용자 인원 및 금액이

¹⁴²⁾ 1천만원 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종전에는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용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매출액 15% 감소, 재고량 50% 증가 등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했으나, 2024년 2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개정으로 동요건을 삭제하여 2024년 8월 7일부터 체불사업주가 용자를 쉽게 신청하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다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연혁]

시행시기	세부내용
2021.2.10.	- 사업주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당 6백만원 → 1천만원
2021.6.9.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 이관 및 대상 확대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이관 - 소득요건 제한(배우자 포함 연간 소득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을 삭제함으로써 용자대상 확대
2023.7.1.	-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용자금액 상향 : 사업주당 1억원 → 1.5억원, 근로자당 1천만원 → 1.5천만원 - 용자요건 완화 : 1년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상시근로자수 무관 -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1.1.	- 근로자 용자기간 확대 - 1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2024.8.7.	- 용자사유 완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용자사유 폐지

자료: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주 용자 활성화 필요 및 용자금 회수 노력 강화 필요 〉

최근 5년(2020~2024)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을 보면, 2020년 총 192억 4,000만원의 용자가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여 2024년 769억 1,800만원의 용자가 집행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2024년 체불청산지원 용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계		사업주 용자			근로자 용자	
	근로자	용자금액	사업장 (개)	근로자	용자금액	근로자	용자금액
2020	5,344	19,240	585	5,344	19,240	-	-
2021	7,020	40,979	555	4,178	21,255	2,842	19,724
2022	5,758	33,177	342	2,678	14,259	3,080	18,918
2023	10,120	72,786	482	4,210	25,579	5,910	47,207
2024	10,640	76,918	668	5,695	39,806	4,945	37,112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2024년의 체불청산지원 용자사업 계획 대비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 대비 결산액의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사업주용자가 각각 당초 계획 대비 △28.3%, △14.6% 적게 집행되었고, 근로자용자는 당초 계획 대비 74.9%, 157.0% 더 많이 집행되었음.¹⁴³⁾

143)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의 두 유형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 심의 시 사업주용자와 근로자용자의 당초 계획액(안)을 구분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받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액과 실제 결산시 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입장임.

[사업주·근로자용자별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액 증감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증감률 [(B-A)/A]	근로자 증감률 [(D-C)/C]
	당초 (A)	집행 (B)	(B-A)	당초 (C)	집행 (D)	(D-C)		
2021	18,046	21,255	3,209	5,964	19,724	13,760	17.8	230.7
2022	19,895	14,259	△5,636	10,815	18,918	8,103	△28.3	74.9
2023	29,964	25,579	△4,385	18,369	47,207	28,838	△14.6	157.0
2024	23,535	39,806	16,271	16,655	37,112	20,457	69.1	122.8

이때 정부가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보다 사업주가 사업주용자를 활용하는 것이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근로자용자를 받았다고 하여 체불임금이 청산되는 것이 아니므로,¹⁴⁴⁾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중 ‘사업주용자’의 집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용자와 달리 사업주용자는 ‘사업주의 자체적인 체불 청산’ 의미가 있어 지속적인 제도 완화를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용자가 사업주의 선택사항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주용자의 활

144) 근로자용자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용자(생계안정목적의 대여)를 실시하는 것인바, 용자 이후에도 근로자는 여전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임.

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업주용자의 회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사업주용자의 누적 미상환액은 2020년 185억 8,200만원에서 2024년 483억 2,300만원으로 297억 4,100만원(160.1%) 증가하였음.

[사업주용자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용자액	누적 용자액	상환 예정액	누적 상환 예정액(A)	실제 상환액	누적 상환액(B)	누적 미상환액 (A-B)	누적 회수율 (B/A)
2020	19,240	72,856	14,001	39,132	6,285	20,550	18,582	52.5
2021	21,255	94,111	17,058	56,190	9,254	29,804	26,386	53.0
2022	14,259	108,370	19,418	75,608	13,247	43,051	32,557	56.9
2023	25,579	133,949	18,522	94,130	10,974	54,025	40,105	57.4
2024	39,806	173,755	15,698	109,828	7,480	61,505	48,323	56.0

자료: 고용노동부

비록 2024년 사업주용자의 누적 회수율(56.0%)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30.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용자 규모 증가 추세를 고려할 경우 향후 누적 미상환액의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한 용자 회수를 추진하는 등 미상환 용자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복지진흥기금, 3062-306)

<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

‘생활안정자금(융자)’(1996년~,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필수자금 융자를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융자사업임.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1,18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1,182억 3,400만원(99.8%)이 집행되었고,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생활안정 자금 (융자)	88,462	118,462	-	-	118,462	118,234 [118,234]	-	228	91,462
▪ 생활안정 자금 (융자)	88,462	118,462	-	-	118,462	118,234 [118,234]	-	228	88,462
▪ 생활안정 자금 (이차보전)	-	-	-	-	-	-	-	-	3,000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혼례비,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총 7종의 융자가 가능함. 각 융자의 금리는 연 1.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함.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구 분		대 상 및 조 건
용 자 대 상	①의료비 ②혼례비 ③장례비 ④부모부양비 ⑤자녀학자금 ⑥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24년 315만원) 이하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⑦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 휴업·휴직(개인사정, 경영상 이유),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의 2/3('24년 315만원) 이하 * 비정규직은 소득요건 비적용
용 자 한 도	①의료비 ③장례비	• 1,000만원
	②혼례비	• 1,250만원
	④부모부양비	• 1천만원 한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⑤자녀학자금	• 1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⑥자녀양육비	• 1천만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만 7세미만 자녀)
	⑦소액생계비	• 200만원
	※ 2종목 이상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 대위변제 규모를 고려한 내실있는 용자 집행 필요 〉

연도별·종목별 용자 집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을 통해 평균 29,826명의 근로자가 1,714억 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2024년의 경우, 총 20,306명의 근로자가 1,182억 3,400만원의 용자 지원을 받았음. 용자 유형별 집행 현황을 보면, 2024년의 경우 혼례비(498억 7,200만원), 자녀양육비(280억 9,400만원), 자녀학자금(158억 7,000만원) 순서로 집행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20~2024년 용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31,743	206,647	24,801	143,946	41,639	223,170	30,639	165,030	20,306	118,234
의료비	5,702	23,862	4,571	18,469	4,529	17,987	5,966	21,291	3,688	13,495
혼례비	5,387	65,285	3,578	43,236	3,493	42,342	4,327	52,772	4,077	49,872
장례비	442	4,161	279	2,570	292	2,621	355	3,220	196	1,751
부모 요양비	2,637	12,410	1,892	8,843	1,894	8,684	2,393	10,593	1,451	6,274
자녀 학자금	6,244	30,633	4,100	19,883	3,915	18,790	4,985	23,655	3,359	15,870
자녀 양육비	-	-	6,022	29,806	7,233	35,331	9,864	46,677	6,129	28,094
임금감소 생계비	3,212	28,343	1,011	8,715	329	1,457	439	2,355	67	294
소액생계 비	4,259	18,265	2,306	5,242	1,924	3,792	2,310	4,467	1,339	2,584
임금체불 생계비	3,860	23,688	1,042	7,182	-	-	-	-	-	-
생계 지원비	-	-	-	-	18,030	92,166	-	-	-	-

* 고용 취약계층 한시생계비 용자 사업 운영비 2,794백만 원 제외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은 최근 4개년(2021~2024년) 동안 매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져, 4년 평균 375억원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2021~2024년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1.1.12.)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0,000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확대로 생계보호 강화
국회의결 (‘21.3.25.)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50,000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794	용자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증액을 위한 용자금 감액
자체변경 (‘22.8.9.)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5,000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2.12.8.)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7,799	시중 금리인상 등 지속적 경제악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자체변경 (‘23.9.27.)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20,000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4.7.17.)	용자금	기타민간 용자금	30,000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에 따른 경기회복세 둔화로 저소득 근로자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높은 수요를 보이는바 용자의 집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의 확대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용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생활안정자금(용자) 사업에 대한 대위변제 현황을 보면, 실제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19년 생활안정자금(용자)의 대위변제가 3,234건으로 131억 1,9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이후의 용자 사업 확대 영향으로 2023년 대위변제 건수는 4,143건으로 183억 4,600만원의 대위변제금이 지출되었고, 2024년의 경우 3,876건의 대위변제에 대한 163억 100만원의 대위변제금 지출이 이루어졌음.

[2019~2024년 생활안정자금(용자)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	건수	3,234	2,483	2,488	3,696	4,143	3,876
	금액	13,119	10,221	13,176	17,432	18,346	16,301

* 자료: 고용노동부

용자 부실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정건전성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내실있는 용자 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 사업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역 >

‘신용보증대위변제’(2002년~, 직접)는 보증·담보 여력이 낮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¹⁴⁵⁾ 및 제26조¹⁴⁶⁾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2002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획현액은 301억 9,5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계 획 현 액	집 행 액 [실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 신용보증대위 변제	30,195	30,195	-	-	30,195	30,195 [30,195]	-	-	31,659

145)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용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용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46)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용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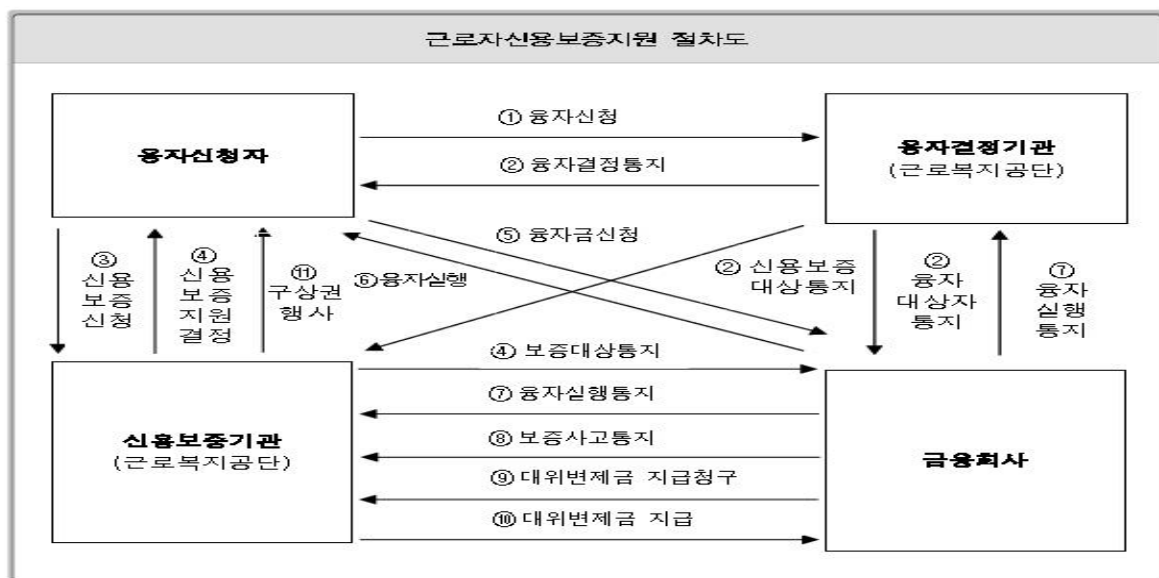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동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에서 고용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회사를 통한 용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을 통한 용자 실행 후, 용자를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용자금 회수가 곤란하여 원리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됨.

[신용보증지원 절차도]



*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i)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ii)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용자, iii)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¹⁴⁷⁾

147)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보증대상 용자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대상 용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24,057명에서 2024년 36,608명으로 52.2% 증가하였음. 신용보증지원액은 2019년 1,503억원 상당이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융자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3년까지 3,000억원 내외로 나타났고, 2024년은 1,929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이루어졌음.

[연도별 신용보증지원 실적 및 대위변제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용보증지원 인원	24,057	50,322	49,614	54,704	51,289	36,608
신용보증지원액	150,258	322,090	352,157	309,078	306,807	192,945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¹⁴⁸⁾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

1.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사업
 3.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학자금 융자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5. 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사업
 7.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8.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9.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148)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

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대위변제건수는 2019년 5,080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4년 6,138건으로 증가(20.8%)하였고,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하여 2019년 191억 4,600만원에서 2024년 295억 5,500만원으로 증가(54.4%)하였음.

[연도별 대위변제액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위변제액 (당해연도)	19,146	15,451	18,418	27,711	33,035	29,555
대위변제건수 (당해연도)	5,080	3,827	3,983	5,415	6,795	6,138
누적 대위변제액	199,698	215,149	233,567	261,278	294,313	323,869

*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2020년 이후 증가되었던 용자 규모와 최근의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증가로 인하여 대위변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 확대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이후 용자 신청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2019~2024년간 대위변제

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누적 회수율이 2019년 38.3%에서 2024년 35.2%로 감소(△3.1%p)하고 있고, 용자규모가 증가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회수금액 (당해연도)	6,818	6,908	7,147	7,756	7,320	8,173
누적 회수액	76,521	83,429	90,576	98,332	105,652	113,825
누적 회수율	38.3	38.8	38.8	37.6	35.9	35.2

* 자료: 고용노동부

통상 용자 실행 이후 대위변제의 발생까지는 시차가 존재함을 고려한다면, 2020년 이후 이루어진 용자 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확대 및 안정적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해 구상채권 회수율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추진하는 동시에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⁹⁾

149)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구상채권 집중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면서 고액채권 회수·기관별 회수율 실적 평가·집행권원 확보 및 특수채권 실효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으로, 채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자발적 변제율 제고, 외부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 개인회생)에 대한 적극적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회보재산 보전조치 후 근로여부 등 조사를 강화하는 보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누적 회수율이 저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산업안전보건본부

(1) 진폐근로자지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131-30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진폐근로자지원’(1985년~, 직접) 사업은 분진작업¹⁵⁰⁾에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진단수당, 이송료, 진폐근로자자녀장학금, 진폐예방기본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이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억 1,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진폐근로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진 폐 근 로 자 지 원	1,228	1,228	-	△214	-	1,014	1,014 [1,014]	-	-	1,119
▪ 정기건강진단	72	72	-	△29	-	43	43 [43]	-	-	59

15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진단수당	388	388	-	△173	-	215	215 [215]	-	-	276
▪ 이송료	55	55	-	△10	-	45	45 [45]	-	-	52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2	2	-	△2	-	-	-	-	-	2
▪ 진폐예방 기본경비	711	711	-	-	-	711	711 [711]	-	-	730

주요 내역사업인 ‘진단수당’은 2차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진단수당을 지급하여 진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에 종사 중인 근로자에게는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에 따라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차 건강진단은 3일 동안 실시하며 1일당 5만원(고용노동부 고시액)의 진단수당을 지급함. 동 사업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2억 1,5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연례적인 내역변경 해결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진폐근로자지원 사업의 2021년 이후 결산내역을 보면, 2021년에는 2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22년 이후부터는 연례적으로 내역변경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약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1~2024년 진폐근로자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A)								
2021	1,234	1,234	-	-	1,234	1,019	82.6	82.6	-	215
2022	1,260	1,260	-	△320	940	931	73.9	99.0	-	9
2023	1,207	1,207	-	△122	1,085	1,083	89.7	99.8	-	2
2024	1,228	1,228	-	△214	1,014	1,014	82.5	100.0	-	-

자료: 고용노동부

구체적인 내역변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동 세부사업에서 진폐위로금으로 3억 2,000만원이 내역변경되었고, 2023년에는 진폐건강진단으로 1억 2,200만원이 내역변경되었으며, 2024년에는 진폐위로금과 진폐건강진단으로 총 2억 1,400만원이 내역변경되었음.

[2022~2024년 진폐근로자지원 사업 내역변경]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2.12.7.)	건강진단지원금 (4131-304)	320-02	320	진폐위로금지급 (4131-300)	320-02	집행예산 부족
내역변경 (23.12.12.)	진폐근로자지원 (4131-304)	320-02	122	진폐건강진단 (4131-301)	320-02	진폐건강진단 수요증가로 집행예산 부족
내역변경 (24.12.23.)	진폐근로자지원 (4131-304)	320-02	214	진폐위로금 (4131-300)	320-02	진폐위로금 수요증가로 집행예산 부족
				진폐건강진단 (4131-301)	320-02	진폐건강진단 수요증가로 집행예산 부족

주1) 내역변경이 없었던 2021년의 경우 예산현액 12억 3,400만원 중 10억 1,900만원 (82.6%)이 집행되고 2억 1,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주2) 2023년부터 기존 '건강진단지원금'에서 사업 개편되어 '진폐근로자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됨

예산 편성 시 집행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연례적으로 평균 2억 1,800만원 이상의 내역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특히 진폐근로자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단수당’의 경우, 5개 내역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내역변경의 규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 2억 7,400만원(본예산 대비 63.4%), 2023년 1억 200만원(본예산 대비 26.8%), 2024년 1억 7,300만원(본예산 대비 44.6%)이 내역변경되어 당초 국회가 심의한 예산의 규모와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A)								
2021	410	410	-	-	410	225	54.9	54.9	-	185
2022	432	432	-	△274	158	158	36.6	100.0	-	-
2023	380	380	-	△102	278	278	73.1	100.0	-	-
2024	388	388	-	△173	215	215	55.4	100.0	-	-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연도별 진단수당의 당초 계획 대비 지급건수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진단수당 계획 대비 지급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1년 2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근로자로 판정되지 않는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1차 건강진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결과 2차 건강진단 대상 비율이 감소하고, 2차 건강진단의 진단수당인 동

사업의 집행이 감소하는 추세에 이른 것임. 2024년의 경우 당초 고용노동부는 2,587건의 진단수당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454건 (56.2%)만 지급되었음.

[연도별 진단수당 계획 대비 지급건수 통계]

(단위: 건,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A)	3,415	3,119	3,023	2,400	2,334	2,733	2,880	2,534	2,587	1,841
지급 (B)	4,542	3,262	4,101	2,953	5,073	1,510	1,178	1,877	1,454	-
계획 대비 지급 (B/A)	133.0	104.6	135.7	123.0	217.4	55.3	40.9	74.1	56.2	-

주) 2025년의 경우 6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고용노동부

이상의 검토와 같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친 이후 내역변경을 통해 당초 진폐근로자지원 사업 및 진단수당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연례적인 내역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 추계를 거쳐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⁵¹⁾

151)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진폐근로자지원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수당 사업의 지급건수가 2021년 진단결과 모니터링 강화 이후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2001년 ~, 출연)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중소기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기계·공정·장비 등을 개선·교체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보급·확산되도록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계획현액 4,717억 9,200만원 중 4,716억 5,200만원(99.97%)이 집행되었고, 1억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471,792	471,792	-	-	471,792	471,652	-	140	481,792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95,707	-	-	95,707	95,707	-	-	-
▪ 안전동행지원 사업	322,000	322,000	-	-	322,000	321,997	-	3	322,000
▪ 스마트안전장비 보급·확산	35,000	35,000	-	-	35,000	35,000	-	-	-
▪ 건강일터 조성지원	15,825	15,825	-	-	15,825	15,824	-	1	35,825

▪ 클린사업장 사 후관리 및 사 업수행경비	3,260	3,260	-	-	3,260	3,124	-	136	3,260
-------------------------------	-------	-------	---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설비 선정 필요 〉

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¹⁵²⁾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노후화로 인한 고위험 기계·기구·설비나 방호·안전장치 등을 다음의 신규 지정품목으로 교체하고,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지정품목을¹⁵³⁾ 구매하거나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하는¹⁵⁴⁾ 사업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신청에 따라 투자계획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나 지원금을 결정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설개선 및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2024년 계획액 957억 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제조·서비스업 사업장 등과 건설현장에 최대 약 1억 7,000만원까지 총 21,579건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음.

1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153)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소작업대

154)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참조

[고위험 개선 지정품목]

연번	위험 기계·기구·설비	방호·안전장치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
2	금형교환장치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4	천장크레인	끼임방지시설
5	고소작업대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6	소음방지시설	크레인 안전장치
7	사회이슈품목	소형타워 크레인 안전장치
8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지게차 안전장치
9	식품가공용기계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10	전동지게차	산업용로봇 방호장치
11	컨베이어	추락방지시설
12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재해예방설비
13	산업용리프트	화재폭발 예방설비
14	K-사다리	질식재해 예방설비
15		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
16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17		화물자동차충돌예방장치

그런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가장 큰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아닌 일반산업단지이고, 해당 산업단지에 지원된 품목이 안전보건교육장, 체력증진시설, 샤워실로서 사업의 내용과 지원대상에 있어 이 내역사업의 다른 지원 내역과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과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155)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19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휴게·샤워시설 등 위생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최대 10억 원까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산업단지명	신청주체	지원설비	지원금액
2024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반월표면처리사업 협동조합	안전보건교육장, 체력증 진시설, 샤워실	169,839
2023	구미국가산업1단지	브라운 핸즈카페	안전보건교육장, 체력증 진시설	160,00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체력증진시설	14,290
	홍성일반산업단지	(사)홍성일반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의회	체력증진시설	31,214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안전보건교육장	25,204
	달천농공단지	달천농공단지입주 기업체협의회	안전보건교육장	4,626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체력증진시설	64,222
2022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보건교육장	2,625
	석문국가산업단지	사단법인충남산학 융합원	안전보건교육장, 체력증 진시설, 샤워실	109,000
	청주일반산업단지	엔컴	체력증진시설, 안전보건 교육장, 안전보건상담실	41,388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체력증진시설	48,570

155) 관계부처 합동 (‘20.10.06.)

이 내역사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의¹⁵⁶⁾ 세부사업에 속한 것으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로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나 방호·안전장치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차단·개선하는 것임.

반면, 체력증진시설이나 샤워실 등은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시설이긴 하나, ①이를 설치하는 것이 산업재해¹⁵⁷⁾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인을 차단하거나 제거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②안전보건교육은 다른 세부사업에 속하여¹⁵⁸⁾ 안전보건교육장 설치 역시 해당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체계에 맞을 것으로 보이며, ③이러한 위생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에 추가하여 지원한 계기인 코로나 19 비상상황이 2023년 5월 공식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④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서¹⁵⁹⁾ 이미 분양된 산업단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

156) 산업재해예방 프로그램(4100) 목표> 산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한다.

15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8) 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

15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산업기반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산업단지의 관리·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43.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금으로 최대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내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많은 소규모 사업장 등이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위험 요인을 차단·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취지와 내용에 맞는 지원대상과 내용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¹⁶⁰⁾

160)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다수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장이고, 노후된 사업장도 많다는 점을 들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유지를 요청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최근 폭염 상황이 악화되고, 고열작업이나 유해물질 취급작업, 분진작업 등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목욕·세탁시설 등 세척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참고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비율	지원금액
고위험 개선	소요비용의 70%* * 전동지게차는 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만원 범위 내 지원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소요비용의 50%	지원대상별 10억원
추락방지 안전시설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65%), 50억원 미만(50%)	건설현장 당 3,000만원 한도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3)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유해작업환경개선’(1988년~, 출연) 사업은 ①5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지원하면서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50인 미만 작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업무 종사 근로자·건설일용직 근로자·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며(취약계층 고위험환경 개선지원),¹⁶¹⁾ ②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안전성평가·교육·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영세 취약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종류 및 노출수준 확인을 지원하고,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자산업 사업장의 화학물질 노출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산업 사업장을 감시(surveillance)·적시대응 체계를 구축하며(유해작업환경모니터링시스

16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템 구축), ③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¹⁶²⁾ 및 건설현장¹⁶³⁾에 민간재해예방기관이 방문하여 보건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으로 2024년 계획현액 812억 7,600만원 중 807억 6,500만원(99.4%)이 집행되었고, 5억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유해작업환경 개선	81,276	81,276	-	-	-	81,276	80,765	-	511	75,526
▪ 취약계층 고 위험환경 개선지원	71,625	71,625	-	-	-	71,625	71,243	-	382	71,629
▪ 유 해 작 업 환 경 모 니 터 링 시스템구축	3,351	3,351	-	-	-	3,351	3,226	-	125	3,897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6,300	6,300	-	-	-	6,300	6,295	-	5	-

*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사업은 2024년 계획현액 450억 2,300만원 중 62억 9,500만원(99.6%)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162) 50인 미만 사업장

163)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 지역 균형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사업은 보건분야 기술사, 기사, 간호사 등의 지도요원이 질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 특수건강 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다수 보유 사업장, 업무상질병 발생사업장 등¹⁶⁴⁾에 방문하여 건강보호조치 지도, 교육지원 등 기술을 지도¹⁶⁵⁾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¹⁶⁶⁾ 작업환경측정기관,¹⁶⁷⁾ 특수건강진단기관¹⁶⁸⁾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164)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다수보유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가 미흡한 신규 사업장, 업무상질병 발생 고위험 업종 사업장 등

165) 별첨자료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지원내용(상세)」 참조

16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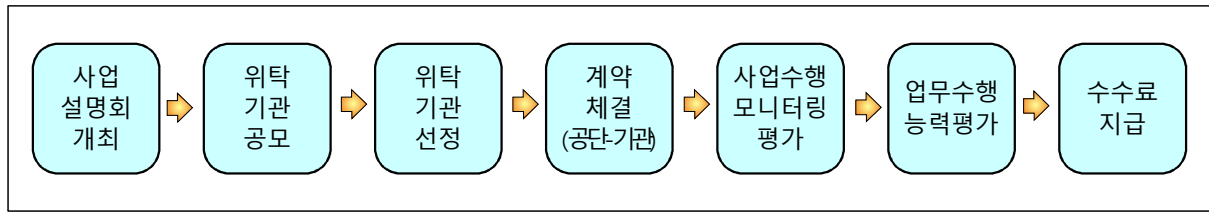
167)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수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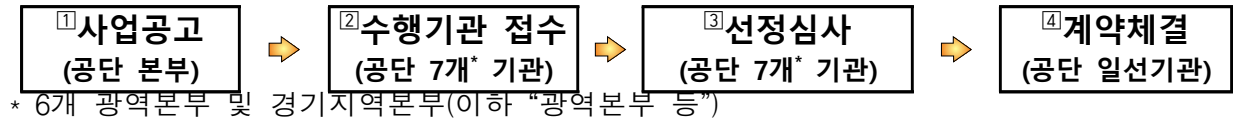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매년 1월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을 30개 신청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사업장수, 업무상질병자수, 위탁이 가능한 민간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사업물량(계약물량)을 배분하고, 이를 공고한 후 7개 광역본부 등에서 해당권역 전체 지역 신청서류를 접수하고¹⁶⁹⁾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수행기

-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 168)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169) 접수기관(광역본부 등)별 신청지역

관을 선정하고 사업물량을 배정함.

[위탁업체 선정 업무 흐름도]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기관 부재에 따른 수행기관 미선정, 신청물량 부족, 선정된 기관의 참여 포기 등으로 일선기관 목표물량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예산상 계상된 목표물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 순위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잔여물량을 배분하고(추가배정), ②추가배정 후에도 잔여물량 발생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동일 분야에 한하여 광역본부 등의 소속 일선기관 내에서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물량 배정하며(목표조정),¹⁷⁰⁾ ③잔여물량 수용 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해당 일선기관에서 관내 및 인근지역(선정심사 단위 권역 내) 해당

접수·선정광역	신청지역	접수·선정광역	신청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광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강원동부지사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본부, 경기북부지사, 고양파주지사, 경기중부지사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세종광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충북북부지사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전북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북서부지사, 전남동부지사	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경기서부지사, 경기동부지사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경북동부지사	※ 신청지역(사업수행지역)은 별첨 2참조	

170) [예시] 강원본부 보건분야 배정물량(100회) 미신청

- ☞ 서울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시 보건분야 신청기관의 우선선정 순위(점수)에 따라 강원본부 보건분야 참여 가능여부 확인 후 물량 배정
- ☞ 강원본부 관내 사업수행 불가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강원본부 사업물량을 서울권역 내 일선기관 직계순으로 조정 및 신청기관에 배정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추가공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하고 (추가공모), ④추가 공모 후에도 일선기관 물량 달성이 불가할 경우, 일선기관에서 본부와 협의 후 사업물량 조정을 요청하여 예산상의 목표 사업물량을 달성하고 있음.

2024년에도 공모 선정심사와 추가배정 및 목표조정, 추가공모와 최종 일선기관 사업물량 조정 등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강릉, 포항, 평택의 3개 지역은 최종 배정 물량이 없어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못하였고, 안산의 경우 당초 계획물량의 38%만 배정되어 시행된 반면, 창원, 광주, 대구는 계획물량의 약 150%가 초과 배정되어 시행되는 등 계획과 달리 배정 물량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2024년도 지역본부 별 물량 조정 내역]

연번	관할기관	지역	계획	조정내역	최종 배정
	합계		71,590	-	71,590
1	서울광역본부	서울	3,200	900	4,100
2	강원지역본부	춘천	300	-150	150
3	서울남부지사	서울	3,000	-	3,000
4	서울동부지사	서울	3,000	-	3,000
5	강원동부지사	강릉	150	-150	0
6	부산광역본부	부산	5,100	-	5,100
7	울산지역본부	울산	1,650	-	1,650
8	경남지역본부	창원	2,100	1,270	3,370
9	경남동부지사	양산	2,700	-	2,700
10	광주광역본부	광주	2,100	1,050	3,150

연번	관할기관	지역	계 획	조정내역	최종 배정
11	전북지역본부	전주	2,000	-	2,000
12	전남지역본부	목포	1,450	-	1,450
13	제주지역본부	제주	1,440	-	1,440
14	전북서부지사	군산	1,900	780	2,680
15	전남동부지사	여수	1,450	-	1,450
16	대구광역시본부	대구	2,800	250	3,050
17	경북지역본부	구미	600	-	600
18	대구서부지사	대구	2,400	1,000	3,400
19	경북동부지사	포항	950	-950	0
20	인천광역시본부	인천	5,000	1,600	6,600
21	경기북부지사	의정부	3,000	-700	2,300
22	고양파주지사	고양	1,800	-	1,800
23	경기중부지사	부천	2,600	-	2,600
24	대전세종광역시본부	대전	2,600	-	2,600
25	충북지역본부	청주	1,500	-	1,500
26	충남지역본부	천안	2,850	350	3,200
27	충북북부지사	충주	1,350	-350	1,000
28	경기지역본부	수원	3,750	-1,350	2,400
29	경기서부지사	안산	5,000	-3,100	1,900
30	경기동부지사	성남	2,600	800	3,400
31	경기남부지사	평택	1,250	-1250	0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국가 예산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사업 시행 단가가 낮다는 점과 함께¹⁷¹⁾ 공모 과정에서 지역과 배정 물량에 관계 없이 지원 단가가 같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그러나 건강보호조치 지도와 교육지원 등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사업장 분포나 접근성 등 사업 수행 여건이 다르고, 배정 물량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행 단가 또한 달라져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단가를 산정하였음. 특히 포항과 강릉의 경우 각각 2년과 4년 연속으로 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업 시행체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회당 단가가 낮다는 이유만 제시할 뿐 지역별 별도 공모를 통한 단가 차별화 등 개선책 강구 등의 노력 없이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수행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2025년부터 다른 세부사업인 업종별 재해예방(4152-350)의 내역사업으로¹⁷²⁾ 포함되어 시행단가는 현실화되었으나, 향후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참여 기관 저조로 지역별 계획된 물량이 조정되거나

171)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해예방(4152-350)의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은 단가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172) 재해예방(4152-350)의 내역사업인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에 포함됨

미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은 지역별, 배정물량별로 단가 산정을 세분화 하는 등 보다 면밀
한 예산 집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Ⅰ중점지원) ①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②안전보건교육, ③안전보건제도 안내, ④방역관리 지원, ⑤위험성평가 등, ⑥사업장 실태평가
 - ①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 지원
 - ②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기술지원과 병행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종업종 재해사례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지원사업장 수의 30%이상)
 - ③ (안전보건제도 안내)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제도 등 안내
 - ④ (방역관리지원) 감염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집단감염 사례 및 주요 취약원인, 평상시 조치사항, 감염병 재난 경보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안내
 - ⑤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사업주 자율 재해예방활동(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⑥ (사업장 실태평가)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작업별 핵심 위험요인 관리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연계지원
- (Ⅱ맞춤지원) ①작업환경관리 ②작업관리 ③직업건강관리
 - ① (작업환경관리)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1/2초과사업장, 유소견자, 요관찰자 발생사업장, 하절기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업 전개
 - ② (작업관리)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기술지원 실시
 - *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발생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전개
 - ③ (직업건강관리)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취약계층 다수 보유 사업장 등에 대해 기술지원 실시
 - * 뇌심혈관질환 관련 유소견자(D1, D2), 요관찰자(C1,C2) 발생사업장, 고령, 여성근로자 다수 보유사업장, 감정노동 취약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개
- (자료보급 등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사고 및 건강장해예방 등의 자료 제작·보급(수행기관 자체 제작보급 등)
- (재해원인 분석·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망·중상해 현황과악 및 동종재해예방대책 제시
- (창의적 자체 사업-자율과업) 지역 특성 등이 반영된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계획에 따른 사업

(4) 근로자건강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근로자건강보호’(1996년~, 직접 및 출연) 사업은 ①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및 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하는 근로자건강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②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통한 밀폐공간 작업절차 등 준수 여부 점검 실시와 산업보건 위험성평가(OHRA)를 통한 유해·위험요인별 산업보건 종합관리 서비스 지원 및 업무상 질병 발생 고위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기술 및 예방물품 지원을 하며, ③직업성질환 현장조사와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④특수·진폐 건강진단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석면조사기관 등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시료 분석 및 검진 능력을 평가하며, ⑤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 제공과 화학물질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⑥질병의 업무 기인성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시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직업병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2024년 계획현액 329억 2,500만원 중 323억 6,600만원(98.3%)이 집행되었고, 5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근로자건강보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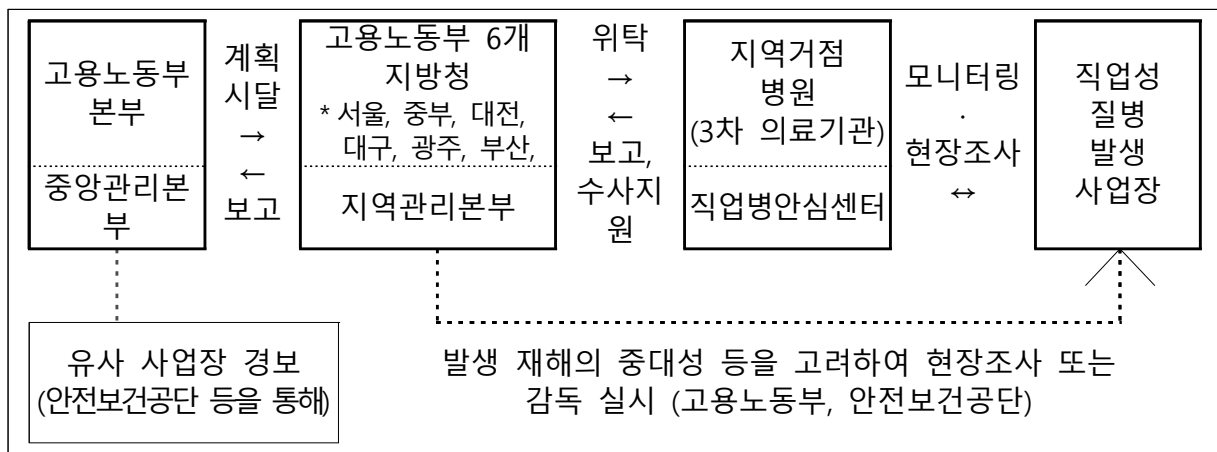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이월액	예비비	계 획 현액	집행액	다듬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근로자 건강보호	44,387	44,387	90			44,477	43,145 [43,055]		1,332	45,295
▪ 근로자건 강센터	22,060	22,060				22,060	21,758		302	22,963
▪ 산업보건 이슈 대응	3,373	3,373				3,373	3,243		130	3,374
▪ 직업병 역 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2,888	2,888				2,888	2,712		176	2,888
▪ 화학물질 유해위험 성 평가	3,498	3,498	-			3,498	3,347		151	3,502
▪ MSDS 제출 및 비공개정 보 심사	1,066	1,066				1,066	1,037		29	1,066
▪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3,840	3,840				3,840	3,584		256	3,840
▪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 사지원	7,662	7,662	90			7,752 [7,662]	7,464 [7,374]		288	7,662

<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물의 연말 집중 구매의 문제>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은 직업성 질병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발생 사업장에 즉시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이 해당 지역 거점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등과 직업병 발생 시 질병의 업무 기인성을

조사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원인조사¹⁷³⁾ 시 전문적으로 조언을 제시하는 내용의¹⁷⁴⁾ 직업병 안심센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6개 권역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를¹⁷⁵⁾ 위탁운영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직업병 안심센터 간 업무흐름도]



173)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74)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직업성 질병의 업무기인성 판단을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직업병 안심센터는 의학적 관련성에 한해, 진단명 확인 및 원인조사를 실시해 자문보고서를 작성함.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와 예방가능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작성된 자문보고서는 발생한 직업성 질병재해의 업무기인성 판단의 근거로 활용됨.

175)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중부권역 인천직업병안심센터(인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중부권역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아주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중부권역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중부권역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한양대구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대전충청권역 직업병 안심센터(충북대학교 병원), 대구경북권역 직업병 안심센터(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부산울산권역 직업병 안심센터(고신대학교 복음병원직업병 안심센터), 경남권역 직업병 안심센터(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광주권역 직업병 안심센터(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이 내역사업의 예산은 총 10개의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71억 1,000만원 등 76억 6,200만원으로,¹⁷⁶⁾ 해당 예산에는 외부위원 수당과¹⁷⁷⁾ 사무용품 구입, 직업병안심센터 홍보물 제작 등을 집행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4억 9,200만원도 포함되어 있음.

일반수용비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불용액 5,900만원을 제외하고 4억 3,300만의 집행액 중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매에 총 1억 6,315만 720원을 사용하였으며, 홍보물품 구매를 위한 월별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물 구매를 위한 일반수용비 월별 집행 내역]

월	집행금액(원)	월	집행금액(원)
1	0	7	21,985,300
2	0	8	9,996,300
3	11,393,500	9	1,212,200
4	0	10	3,415,500
5	1,775,000	11	28,613,500
6	8,891,520	12	75,867,900
		계	163,150,720

176) 그 외 일반수용비 4억 9,200만원, 임차료 1,000만원과 관리용역비 5,000만원이 있음

177) 작업중지명령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그런데 월별로 홍보물 구매 집행의 편차가 크고, 2024년 전체 집행액 중 64%가 11월과 12월에 집행되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12월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도 직업병 안심센터 홍보물 제작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3,476만원을 집행하였음.

이와 같이 1년 단위로 편성된 사업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획되지 않은 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직업병안심센터 예산 집행의 연말 집중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는 업무추진지침에 월별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관리하겠다고 개선책을 제시한바, 홍보물 구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균형있게 홍보물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산재예방시설건립(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산재예방시설 건립’(1991년~, 출연)은 노후된 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전국 각 지역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재건축(노후안전체험교육장시설개선) 비용 1억 9,400만원과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건축비·콘텐츠비·감리비 등 52억 5400만원,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억 등 총 55억 4,800만원이 계획되어 55억 4,400만원(99.9%)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산재예방시설건립	5,548	5,548	-	-	-	5,548	5,544	-	4	4,200
▪ 노후안전체험교육장시설개선	194	194	-	-	-	194	194	-	-	4,200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5,254	5,254	-	-	-	5,254	5,253	-	1	-
▪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100	100	-	-	-	100	97	-	3	-

* 자료: 고용노동부

〈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체험교육장 건축 필요 〉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총사업비 227억 7,00만원이 투입되어 신규 건립된 2층 건축물로, 2024년에 완공되어 현재 6개관에 50개의 체험콘텐츠를 갖추고 산업현장종사자 과정, 예비산업인력 과정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¹⁷⁸⁾

중부안전체험교육장은 1997년 5월 개관된 기존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건축물 부동침하 등으로 인하여 “D”등급¹⁷⁹⁾ 판정을 받아 2020년 사용이 중단되면서 철거됨에 따라 재건축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0억 4,400만원을 들여 3층 건축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준공과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음.¹⁸⁰⁾

중부안전체험교육장 외에도 경남안전체험교육장, 경북안전체험교육장, 충청안전체험교육장이 노후화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2024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상태인데, 사용이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들의 사용기간이 다음과 같이 14년 9개월에서 22년 8개월 정도임.

178) 참고2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현황 참조

179) D등급 : 주요부재 결함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180) 참고1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진행 현황 참조

[사용이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 개요]

연번	지역	규모 ¹⁸¹⁾	사업비	주구조	개관	사용중단일시	콘텐츠
1	충부(인천)	697m ²	7.3억	철골조 등	1997년 5월	2020년 1월	27종 (건설업)
2	경남(김해)	1,010m ²	29억	철골조	2002년 6월	2024년 1월	24종 (건설업)
2	경북(경산)	2,493m ²	35억	경량철골조	2008년 2월	2024년 1월	26종 (건설업)
3	충청(공주)	2,325m ²	43억	철골조	2009년 4월	2024년 1월	28종 (건설업)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와¹⁸²⁾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¹⁸³⁾ 법인이나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감가상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체험교육장과 같은 철골조의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181) 건축대장의 연면적 기준

182)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183)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연번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2	20년	벽돌구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흙구조, 흙벽구조, 목조, 나무 뼈대 회반죽 구조(목골 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3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4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용이 중단된 안전체험교육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하여 사용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체험교육장 관리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하면 주구조가 철골구조이긴 하나 샌드위치패널 등 내구성이 약한 자재가 사용되었고, 건립지 또한 풍수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한 열악한 지형이라 안전체험교육장의 수명이 짧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의 짧은 수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처음부터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고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적절하게 관리·보수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건축물의 철거와 재건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재건축 기간 동안 해당 지역 공공 안전체험교육 공백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건축물의 수명은 입지,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한 설계와 건축자재의 선택,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건축물의 경제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안전체험교육장의 내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축 과정과 완공 이후의 관리·보수 등 안전체험교육관의 건립 및 관리의 전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참고1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진행 현황

□ 건립 개요

구 분		중 부
총사업비		190.44억원
소재지		과거 공단 인천광역시본부 체험교육장 및 테니스장 부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3층
연 면 적		3,912.38m ² (1,185평) [부지면적 : 8,357m ²]
건립 경과	건축	(21.8~23.5) 설계 → (23.12) 착공 → (25.8) 준공 ※ '25년 7월 기준, 건축공정 97% 진행 중
	전시 체험	①공단 기본설계('25.1월~4월) ⇒ ②업체 실시설계(4월~5월) ⇒ ③공장제작(5월~8월) ⇒ ④현장설치(8월~11월) ⇒ ⑤시운전(12월~1월)
개관		'25년 12월
조감도		

□ 건축공사 현황

- 공사 내용 : 내부 바닥 타일 및 외부 출입문 설치 등 마감 공사 진행 중
- 공정율('25. 7월 기준) : 전체 97.12% [공사준공 : '25. 8. 29]

1 시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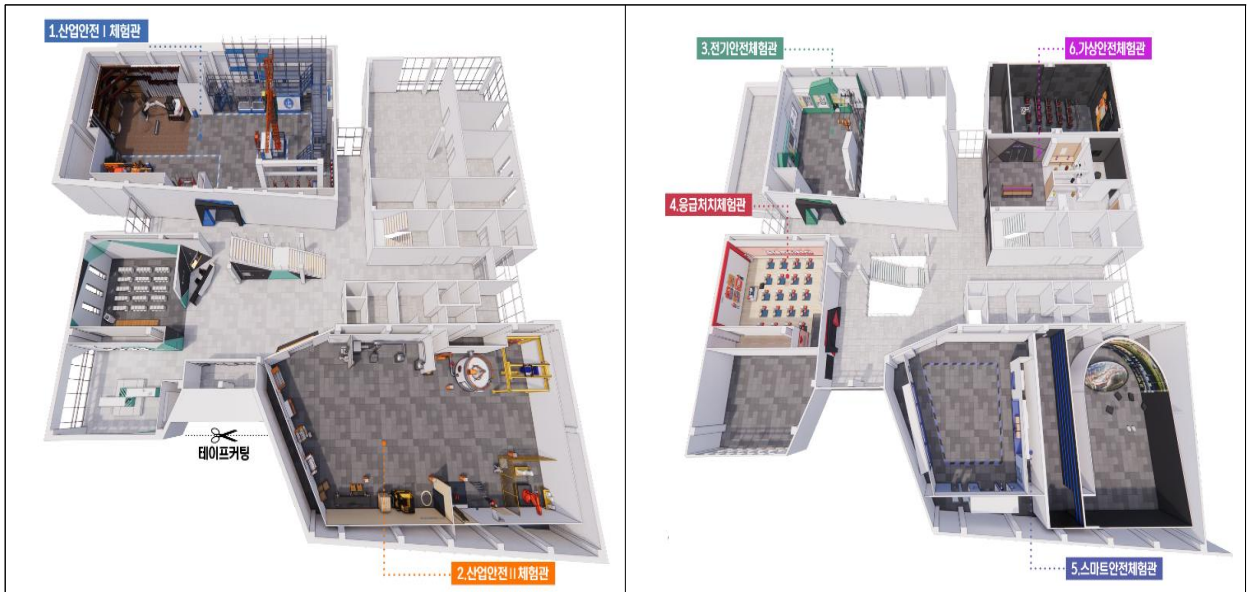
- 위 치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6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4,385㎡, 부지면적 9,905㎡)
- 사업기간 : 20년~'24년(부지매입→설계→건축공사→체험콘텐츠공사→준공)
- 총사업비 : 227억원(부지 9억, 설계 8억, 건축 127억, 콘텐츠 60억, 감리 등 18.7억)
- 운영인력 : 총 8명(전문강사 6명, 시설관리 1명, 미화 1명)
- 주요시설 : 총 6개 관, 50개 체험콘텐츠
- 교육 프로그램 : 산업현장종사자 과정, 예비산업인력 과정, 일반인 과정

2 건물 조감도



3 체험교육 코스

□ 체험안내 → 안전보건 역사 → 산업안전1·2 체험→ 전기안전 체험 → 응급처치 체험 → 스마트안전 체험 → 가상안전 체험



4 체험관 내부

